

# 한·일민법전 법령용어와 문장의 비교 및 순화정비에 관한 연구

Study on Comparis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and Japan of the Civil Code

연구자 : 강 현 철(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곽 관 훈(초청연구원)

Kwak, Kwan-Hoon

2004. 11.



## 국 문 요 약

이 보고서는 민법상의 이론적 논쟁이나 법리적 논쟁에 관한 분석과 해설이 아닌 순수한 용어와 문장에 대한 검토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민법전에 대한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여러 번에 걸친 민법의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반영된 바가 있지만, 여전히 그 반영의 정도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초법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은 일본민법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민법조문이 국어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 민법전과 일본민법전을 관련조문별로 비교해봄으로써 그 용어와 문장의 유사성을 검토·비교하고, 기존의 민법 조문에 대한 순화의견으로서 제시된 “민법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2003)과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김문오, 국립국어연구원, 2003) 등 두 개의 보고서를 상호 조문대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법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호 비교·검토를 기초로 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에서 그 동안 연구한 연구의견과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편람” 등을 참조하여 사업단의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조문에 따라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붙임으로써 순화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법의 전분야에 대한 의견제시와 순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되지만, 한·일 민법전의 비교에 있어서 가족법분야인 친족법과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그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민법총칙과 물권 및 채권

분야에 해당하는 민법 제766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만 순화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류창호 박사의 순화의견 중 2004년말 현재 진행중인 민법개정안의 순화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민법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순화의견에 대한 내용도 민법전의 순서에 따라 함께 포함하여 순화의견과 해설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민법, 일본민법, 법령용어, 법언어학, 한일민법비교, 입법학

## Abstract

This report is study on comparis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and Japa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this report don't standardize theory about law b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and Japan of the Civil Code. The Civil Code function in general law of private law which have an effect all of the people. But Korea Civil Code and terminology and sentenc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according as succession in Japan Law. For this reason,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Civil Code need to d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This report compare Korea Civil Code with Japan Code Civil and another report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Civil Code. This report furnish the opinion about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and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ith useful information. Specially, reports of Ryu, Chang-Ho and Kim, Mun-O are useful mutual dependence and examination.

This report describe to the limit art. 766 in Korea Civil Code exclude in family law. And include a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Code in 2004 in which compare opinion of Ryu, Chang-Ho.

※Keywords : Code Civil, Japan Code Civil, Terminology, Terminology in law, Comparison of Code Civil in Korea and Japan.

## 목 차

국 문 요 약 .....	3
Abstract .....	5
서 론 .....	11
민법조문대비 .....	15
제 1 편 총 칙 .....	15
제 1 장 통 칙 .....	15
제 2 장 인 .....	16
제 1 절 능 력 .....	16
제 2 절 주 소 .....	26
제 3 절 부재와 실종 .....	28
제 3 장 법 인 .....	37
제 1 절 총 칙 .....	37
제 2 절 설 립 .....	43
제 3 절 기 관 .....	59
제 4 절 해 산 .....	71
제 5 절 별 칙 .....	86
제 4 장 물 건 .....	88
제 5 장 법률행위 .....	91
제 1 절 총 칙 .....	91
제 2 절 의사표시 .....	93
제 3 절 대 리 .....	100

제 4 절 무효와 취소 .....	116
제 5 절 조건과 기한 .....	123
제 6 장 기 간 .....	130
제 7 장 소멸시효 .....	134
제 2 편 물 권 .....	151
제 1 장 총 칙 .....	151
제 2 장 점유권 .....	156
제 3 장 소유권 .....	172
제 1 절 소유권의 한계 .....	172
제 2 절 소유권의 취득 .....	200
제 3 절 공동소유 .....	212
제 4 장 지상권 .....	222
제 5 장 지역권 .....	234
제 6 장 전세권 .....	242
제 7 장 유치권 .....	257
제 8 장 질 권 .....	263
제 1 절 동산질권 .....	263
제 2 절 권리질권 .....	273
제 9 장 저당권 .....	280
제 3 편 채 권 .....	300
제 1 장 총 칙 .....	300
제 1 절 채권의 목적 .....	300
제 2 절 채권의 효력 .....	309
제 3 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326
제 4 절 채권의 양도 .....	361

제 5 절 채무의 인수 .....	365
제 6 절 채권의 소멸 .....	370
제 7 절 지시채권 .....	404
제 8 절 무기명채권 .....	413
제 2 장 계 약 .....	415
제 1 절 총 칙 .....	415
제 2 절 증 여 .....	436
제 3 절 매 매 .....	441
제 4 절 교 환 .....	469
제 5 절 소비대차 .....	470
제 6 절 사용대차 .....	477
제 7 절 임대차 .....	483
제 8 절 고 용 .....	510
제 9 절 도 급 .....	518
[개] 제10절 여행 .....	527
제10절 현상광고 .....	531
제11절 위 임 .....	536
[개] 제13절 중 개 .....	546
제12절 임 치 .....	548
제13절 조 합 .....	553
제14절 종신정기금 .....	566
제15절 화 해 .....	570
제 3 장 사무관리 .....	572
제 4 장 부당이득 .....	577
제 5 장 불법행위 .....	583

## 서론

이번 한일민법전 법령용어와 문장의 비교 및 순화정비에 관한 연구는 우리 법령에 있어서 일본법의 용어와 문장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잘못된 점과 사용상의 오류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민법전은 일본민법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것으로 여전히 그 체제와 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용어와 문장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민법상의 이론적 논쟁이나 법리적 논쟁에 관한 분석과 해설이 아닌 순수한 용어와 문장에 대한 검토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그 동안 민법전에 대한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여러 번에 걸친 민법의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반영된 바가 있지만, 여전히 그 반영의 정도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초법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은 일본민법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민법조문이 국어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 민법전과 일본민법전을 관련조문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그 용어와 문장의 유사성을 검토·비교하고, 기존의 민법 조문에 대한 순화의견으로서 제시된 “민법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2003)과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김문오, 국립국어연구원, 2003) 등 두 개의 보고서를 상호 조문대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법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호 비교·검토를 기초로 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정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에서 그 동안 연구한 연구의견과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편람” 등을 참조하여 사업단의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조문에 따라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붙임으로써 순화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법의 전분야에 대한 의견제시와 순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지만, 한·일 민법전의 비교에 있어서 가족법분야인 친족법과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그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민법총칙과 물권 및 채권분야에 해당하는 민법 제766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만 순화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류창호 박사의 순화의견 중 2004년말 현재 진행중인 민법개정안의 순화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민법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순화의견에 대한 내용도 민법전의 순서에 따라 함께 포함하여 순화의견과 해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법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 중에서 법률전문용어와 문장으로써 정착된 것에 대하여는 가능한 이를 지키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법문의 맥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순화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밝히며, 중복된 용어와 문장에 관한 해설은 민법전의 처음 조문에 나오는 것에만 해설하였음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또한 순화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용어와 문장이지만 법률전문용어와 일반화된 법률상의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순화정비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하고 법문의 내용에서는 기존의 용어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민법전문가의 충실한 검토를 통하여 일반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국어문법에도 맞는 올바른 민법전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의견은 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들의 개인의견을 나타내는 것임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편제는 다음과 같다.

[현행 우리 민법 조문]의 내용을 먼저 예시하고, [일]:[현행 일본 민법 조문]과 함께 관련 조문을 비교하였으며, 이어서 [류]:[류창호 박사 순화정비의견] 및 [김]:[김문오 박사 순화정비의견]을 함께 붙였다. 이러한

예시와 의견에 기초하여 [순]:[법령용어정비사업단 순화정비의견] 과 [해]:[해설]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조문비교와 순화의견을 조문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정안과 관련된 순화의견은 [개]:[개정안]을 예시하고, [류]:[류창호 박사 순화정비의견]을 함께 제시한 후 [순]:[법령용어정비사업단 순화정비의견] 과 [해]:[해설]을 제시하였으며, 법조문의 일부 개정사항이나 개별 항의 개정사항은 별도의 개정안 순화의견을 두지 않고 개정안을 [순화안]에 함께 서술하였다.

## 민법조문대비

### 제 1 편 총 칙(總則)

#### 제 1 장 통 칙(通則)

**제 1 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일] -없음

[류] 제 1 조 (法源)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김] 제 1 조 【법원(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순**】 제 1 조 [법원(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해**】 조문명의 서술에 대한 원칙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법률 한글화의 시행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괄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조문명에 있어서 한자어의 괄호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조문명에 있어서의 괄호는 원칙적으로 대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생각됨(이하 조문명은 대괄호([ ])사용을 원칙으로 함). 또한 ‘-에 의하고’는 우리 법령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 중의 하나로써 ‘-에 따르고’ 혹은 ‘-에 따라’ 등으로 문장의 서술에 맞게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개] **제 1 조의2** (인간의 존엄) ①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류] 제 1 조의2 (인간의 존엄) ①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순]** 제 1 조의2 [인간의 존엄(尊嚴)] ①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제 2 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일] 第 1 條 ②權利ノ行使及ヒ義務ノ履行ハ信義ニ從ヒ誠實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

第 1 條 ③權利ノ濫用ハ之ヲ許サス

[류] 제 2 조 (信義誠實)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김] 제 2 조 【신의 성실(信義誠實)】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또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순]** 제 2 조 [신의성실(信義成實)]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해]** ‘좇아’는 ‘따라’로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 제 2 장 인(人)

### 제 1 절 능력(能力)

**제 3 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일] 第 1 條ノ 3 私權ノ享有ハ出生ニ始マル

[류] 제 3 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김] 제 3 조 【권리 능력(權利能力)의 존속∨기간】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순】 제 3 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 ‘생존한’은 ‘살아 있는’으로 하는 것이 한글화의 취지에 적합함.

[개] 제 3 조의2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류] 제 3 조의2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순】 제 3 조의2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4 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일] 第 3 條 滿20年ヲ以テ成年トス

[류] 제 4 조 (성년기) 만19세로 성년이 된다

[김] 제 4 조 【성년기】 만 20세로써(또는 ‘에’) 성년이 된다.

【순】 제 4 조 [성년기] 만19세에 성년이 된다.

【해】 민법개정안이 성년의 시기를 만19세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며, ‘-로’보다는 ‘-에’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 5 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일] 第 4 條 ①未成年者カ法律行爲ヲ爲スニハ其法定代理人ノ同意ヲ得ルコトヲ要ス但單ニ權利ヲ得又ハ義務ヲ免ルヘキ行爲ハ此限ニ在ラス

②前項ノ規定ニ反スル行爲ハ之ヲ取消スコトヲ得

[류] 제 5 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김] 제 5 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 행위(法律行爲)를 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②앞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순】 제 5 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해】 ‘함에는’ 보다는 ‘하는 경우에는’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국어문법상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됨. 또한 ‘전항’이라는 표현은 ‘제1항’으로 보다 지시하는 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 6 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일] 第 5 條 法定代理人カ目的ヲ定メテ處分ヲ許シタル財産ハ其目的ノ範圍内ニ於テ未成年者隨意ニ之ヲ處分スルコトヲ得目的ヲ定メシテ處分ヲ許シタル財産ヲ處分スル亦同シ

[류] 제 6 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김] 제 6 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순】 제 6 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 7 조 (동 의 와 허 락 의 취 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 의 와 허 락 을 취소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 7 조 (동 의 와 허 락 의 취 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동 의 와 허 락 을 취소할 수 있다.

[김] 제 7 조 【동 의 와 허 락 의 취 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제5조, 제6조의 동 의 와 허 락 을 취소할 수 있다.

【**순**】 제 7 조 (동 의 와 허 락 의 취 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동 의 와 허 락 을 취소할 수 있다.

【**해**】 ‘전2조’는 앞의 조문을 분명하게 예시하는 것이 법문이 길어지더라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 8 조 (영 업 의 허 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 6 條 ①一種又ハ數種ノ營業ヲ許サレタル未成年者ハ其營業ニ關シテハ成年者ト同一ノ能力ヲ有ス

②前項ノ場合ニ於テ未成年者カ未タ其營業ニ堪ヘサル事跡アルトキハ其法定代理人ハ親族編ノ規定ニ從ヒ其許可ヲ取消シ又ハ之ヲ制限スルコトヲ得

[류] 제 8 조 (영 업 의 허 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 8 조 【영 업 의 허 락】 ①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에게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行爲能力)이 있다.

②법정 대리인은 앞항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 8 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게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 문장을 국어문법에 맞게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善意’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 9 조 (한정재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재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 9 조 (限定治産의 선고) 심신(心神)이 박약(薄弱)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재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김] 제 9 조 【한정재산(限定治産)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한정재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순]** 제 9 조 [한정재산(限定治産)의 선고] 정신이 박약(薄弱)하거나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재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 ‘心神’은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으로써 ‘정신’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한정재산’

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전문용어이지만 적절한 대체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정신박약과 재산낭비를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순화용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순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일본민법 제8조)를 도입하면서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심신’을 ‘정신’으로 보다 현대어에 적합하게 순화하였음.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된다.

[김] 제10조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의 능력】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 ‘내지’는 ‘~부터~까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김]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순**】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12조 (禁治産의 선고)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제9조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김] 제12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 심신 $\vee$ 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순**】 제12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 정신이상(精神異常)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 ‘심신상실’은 ‘정신이상’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금치산’에 대한 적절한 대체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김]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 $\vee$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순**】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된다.

[김] 제14조 【금치산 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받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일] 第19條 ①制限能力者（未成年者、成年被後見人、被保佐人及ビ第16條第1項ノ審判ヲ受ケタル被補助人ヲ謂フ以下同ジ）ノ相手方ハ其制限能力者カ能力者ト爲リタル後之ニ對シテ1箇月以上ノ期間内ニ其取消シ得ヘキ行爲ヲ追認スルヤ否ヤヲ確答スヘキ旨ヲ催告スルコトヲ得 若シ其制限能力者カ其期間内ニ確答ヲ發セサルトキハ其行爲ヲ追認シタルモノト看做ス
- ②制限能力者カ未タ能力者トナラサル時ニ於テ其法定代理人、保佐人又ハ補助人ニ對シ其權限内ノ行爲ニ付キ前項ノ催告ヲ爲スモ其期間内ニ確答ヲ發セサルトキ亦同シ
- ③特別ノ方式ヲ要スル行爲ニ付テハ右ノ期間内ニ其方式ヲ踐ミタル通知ヲ發セサルトキハ之ヲ取消シタルモノト看做ス

- [류]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催告權)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로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제1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김] 제15조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부여되는 최고권(催告權)】 ①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앞항의 재촉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순] 제15조 [무능력자 상대방의 통지권] ①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통지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대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해] ‘催告’는 법률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재촉)통지’ 혹은 ‘독촉 또는 재촉’으로 순화하는 것이 법문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됨. 또한, ‘내에’는 ‘안에’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追認’은 ‘나중 인정’ 혹은 ‘추후인정’ 및 ‘사후인정’ 등에 대한 적절한 순화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김] 제16조 **【무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와 와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意思表示)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상대편 계약 당사자가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무능력자의 단독 행위(單獨行爲)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③제1항, 제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순] 제16조 [무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撤回權)과 거절권(拒絕權)] ①무능력자가 행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에 상대방이 당사자가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히] 국어문법에 맞게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일] 第20條 制限能力者カ能力者タルコトヲ信セシムル爲メ詐術ヲ用ヒタルトキハ其行爲ヲ取消スコトヲ得ス

-제2항 없음

[류] 제17조 (무능력자의 詐術)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김] 제17조 【무능력자의 속임수】 ①무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력자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하였을 때에도 앞항과 같다.

【순】 제17조 [무능력자의 속임수] ①무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해】 ‘사술’은 ‘속임수’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제 2 절 주 소(住所)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일] 第21條 各人ノ生活ノ本據ヲ以テ其住所トス

-제2항 없음

[류]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김]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순】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 곳 ∨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 第22條 住所ノ知レサル場合ニ於テハ居所ヲ以テ住所ト看做ス

[류] 제19조 (居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김] 제19조 【거소(居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순】 제19조 [거소(居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해】 ‘거소’는 민법상의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순화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예: 거주지).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 第23條 日本ニ住所ヲ有セサル者ハ其日本人タルト外國人タルトヲ問ハス日本ニ於ケル居所ヲ以テ其住所ト看做ス 但法例其他準據法ヲ定ムル法律ニ從ヒ其住所ノ法律ニ依ルヘキ場合ハ此限ニ在ラス

[류]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김]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순】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일] 第24條 或行爲ニ付キ 住所ヲ選定シタルトキハ其行爲ニ關シテハ之ヲ住所ト看做ス

[류] 제21조 (임시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임시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김] 제21조 【임시 주소】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임시 주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임시 주소를 주소로 본다.

**[순]** 제21조 [임시주소]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임시주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임시주소를 주소로 본다.

**[해]** '가주소'는 '임시주소'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제 3 절 부재와 실종(不在와 失踪)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일] 第25條 ①從來ノ住所又ハ居所ヲ去リタル者カ其財産ノ管理人ヲ置カサリシトキハ家庭裁判所ハ利害關係人又ハ檢察官ノ請求ニ因リ其財産ノ管理ニ付キ必要ナル處分ヲ命スルコトヲ得 本人ノ不在中管理人ノ權限カ消滅シタルトキ亦同シ

②本人カ後日ニ至リ管理人ヲ置キタルトキハ家庭裁判所ハ其管理人、利害關係人又ハ檢察官ノ請求ニ因リ其命令ヲ取消スコトヲ要ス

[류]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김] 제22조 【부재자의 재산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 관리인(財産管理人)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법원은 이해 관계인(利害關係人)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 V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 관리인을 정하였을 때에 법원은 본인, 재산 관리인,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앞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순】 제22조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하였을 때에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일] 第26條 不在者カ管理人ヲ置キタル場合ニ於テ其不在者ノ生死分明ナラサルトキハ家庭裁判所ハ利害關係人又ハ檢察官ノ請求ニ因リ管理人ヲ改任スルコトヲ得

[류] 제23조 (관리인의 改任)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김] 제23조 【관리인의 개임(改任)】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법원은 재산 관리인,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 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할 수 있다.

**【순】 제23조 [관리인의 변경(變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해】** ‘개임’은 ‘바꾸어 임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으로 순화하여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일] 第27條 ①前2條ノ規定ニ依リ家庭裁判所ニ於テ選任シタル管理人ハ其管理スヘキ財産ノ目錄ヲ調製スルコトヲ要ス 但其費用ハ不在者ノ財産ヲ以テ之ヲ支弁ス

第27條 ③右ノ外總テ家庭裁判所カ不在者ノ財産ノ保存ニ必要ト認ムル處分ハ之ヲ管理人ニ命スルコトヲ得

第27條 ②不在者ノ生死分明ナラサル場合ニ於テ利害關係人又ハ檢察官ノ請求アルトキハ家庭裁判所ハ不在者カ置キタル管理人ニモ前項ノ手續ヲ命スルコトヲ得

第27條 ①前2條ノ規定ニ依リ家庭裁判所ニ於テ選任シタル管理人ハ其管理スヘキ財産ノ目錄ヲ調製スルコトヲ要ス 但其費用ハ不在者ノ財産ヲ以テ之ヲ支弁ス

[류]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한다.

[김]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에게 제1항, 제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순】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임명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해】 ‘선임’은 ‘임명’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일] 第28條 管理人カ第百三條ニ定メタル權限ヲ超ユル行爲ヲ必要トスルトキハ家庭裁判所ノ許可ヲ得テ之ヲ爲スコトヲ得 不在者ノ生死分明ナラサル場合ニ於テ其管理人カ不在者ノ定メ置キタル權限ヲ超ユル行爲ヲ必要トスルトキ亦同シ

[류]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김]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순】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일] 第29條 ①家庭裁判所ハ管理人ヲシテ財産ノ管理及ヒ返還ニ付キ相ノ保ヲ供セシムルコトヲ得

②家庭裁判所ハ管理人ト不在者トノ關係其他ノ事情ニ依リ不在者ノ財産中ヨリ相ノ報酬ヲ管理人ニフルコトヲ得

-제3항 없음

[류]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報酬) ①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된다.

[김] 제26조 【관리인의 담보 V 제공, 보수】 ①법원은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 관리인 자신 소유의 재산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報酬)]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을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 ‘상당한’은 ‘적당한’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일] 第30條 ①不在者ノ生死カ7年間分明ナラサルトキハ家庭裁判所ハ利害關係人ノ請求ニ因リ失踪ノ宣告ヲ爲スコトヲ得

②戰地ニ臨ミタル者、沈没シタル船舶中ニ在リタル者其他死亡ノ原因タルヘキ危難ニ遭遇シタル者ノ生死カ戰爭ノ止ミタル後、船舶ノ沈没シタル後又ハ其他ノ危難ノ去リタル後1年間分明ナラサルトキ亦同シ

[류]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침몰한 선박 안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 전쟁에 나간 사람 그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또는 항공기의 추락 후 6개월간, 종전(終戰) 후 또는 그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류] 제27조 【실종 ∨ 선고(失踪宣告)】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 안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危難)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선박이 침몰된 후, 항공기가 추락한 후, 그밖의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

[순] 제27조 [실종(失踪)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쟁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 안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재난(災難)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종전(終戰)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재난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안: ②침몰한 선박 안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 전쟁에 나간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또는 항공기의 추락 후 6개월간, 종전(終戰) 후 또는 그밖의 재난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해] ‘위난’은 ‘재난’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전쟁종지’는 ‘종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일] 第31條 前條第1項ノ規定ニ依リ失踪ノ宣告ヲ受ケタル者ハ前條第1項ノ期間滿了ノ時ニ死亡シタルモノト看做シ前條第2項ノ規定ニ依リ失踪ノ宣告ヲ受ケタル者ハ危難ノ去リタル時ニ死亡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김]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앞∨조의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순】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32條 ① 失踪者ノ生存スルコト又ハ前條ニ定メタル時ト異ナリタル時ニ死亡シタルコトノ明アルトキハ家庭裁判所ハ本人又ハ利害關係人ノ請求ニ因リ失踪ノ宣告ヲ取消スコトヲ要ス 但失踪ノ宣告後其取消前ニ善意ヲ以テ爲シタル行爲ハ其力ヲセス

② 失踪ノ宣告ニ因リテ財産ヲ得タル者ハ其取消ニ因リテ權利ヲ失フモ現ニ利益ヲ受クル限度ニ於テノミ其財産ヲ返還スル義務ヲ負フ

[류]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제28조의 규정과 서로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앞∨조의 규정과 상이한 시점에 사망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실종 선고를 취소하였을 때에 실종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28조의 규정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의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실종선고를 취소하였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 第32條ノ2 死亡シタル數人中其1人ガ他ノ者ノ死亡後尙ホ生存シタルコト分明ナラザルトキハ此等ノ者ハ同時ニ死亡シタルモノト推定ス

[류] 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 여러 사람의 사망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망 후에도 생존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30조 【동시∨사망】 두 명∨이상이 동일한 위난(危難)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30조 [동시사망] 2사람∨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안: 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 여러 사람의 사망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망 후에도 생존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 3 장 법 인(法人)

#### 제 1 절 총 칙(總則)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일] 第33條 法人ハ本法其他ノ法律ノ規定ニ依ルニ非サレハ成立スルコトヲ得ス

[류]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

[김] 제31조 【법인∨설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서만 설립할 수 있다(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설립하지 못한다’).

【순】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못한다.

【해】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 이중부정의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 第34條 祭祀、宗教、慈善、學術、技芸其他公益ニ關スル社団又ハ財団ニシテ營利ヲ目的トセサルモノハ主務官廳ノ許可ヲ得テ之ヲ法人ト爲スコトヲ得

[류]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技藝), 사교 그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김] 제32조 【비영리 V 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밖의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 V 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순**】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技藝), 사교(社交), 그 밖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認可)] 학술, 종교, 자선, 기예(技藝), 사교 그 V 밖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해당관청의 인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해**】 개정안은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하고 있음. ‘주무관청’은 ‘해당관청’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일] 第45條 ②法人ノ設立ハ其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登記ヲ爲スニ非サレハ之ヲ以テ他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김]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순】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일] 第43條 法人ハ法令ノ規定ニ從ヒ定款又ハ寄附行爲ニ因リテ定マリタル目的ノ範圍内ニ於テ權利ヲ有シ義務ヲ負

[류]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김] 제34조 【법인의 권리 능력(權利能力)】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규정을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순】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定款)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44條 ①法人ハ理事其他ノ代理人カ其職務ヲ行フニ付キ他人ニ加ヘタル損害ヲ賠償スル責ニ任ス

②法人ノ目的ノ範圍内ニ在ラサル行爲ニ因リテ他人ニ損害ヲ加ヘタルトキハ其事項ノ議決ヲ贊成シタル社員、理事及ヒ之ヲ履行シタル理事其他ノ代理人連帶シテ其賠償ノ責ニ任ス

[류]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①법인은 이사 그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그밖의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김]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의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인이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안: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①법인은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해】 개정안은 조문명 중 ‘불법행위능력’을 ‘불법행위책임’으로 개정함. ‘기타’는 ‘그 밖의’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일] 第50條 法人ノ住所ハ其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在ルモノトス

[류]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김]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순]**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일] 第67條 ①法人ノ業務ハ主務官廳ノ監督ニ屬ス

[류] 제37조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검] 제37조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 $\vee$ 관청이 검사하고 감독한다.

**[순]** 제37조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해당관청이 검사하고,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 第71條 法人カ其目的以外ノ事業ヲ爲シ又ハ設立ノ許可ヲ得タル條件若クハ主務官廳ノ監督上ノ命令ニ違反シ其他公益ヲ害スヘキ行爲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他ノ方法ニ依リ監督ノ目的ヲ達スルコト能ハザルトキハ主務官廳ハ其許可ヲ取消スコトヲ得 正 ノ事由ナクシテ引續キ3年以上事業ヲ爲サザルトキ亦同ジ

[류] 제38조 (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連帶)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이사에게 그의 업무를 사실상 지시한 사람 또는 이사 그밖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김]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순】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안: 제38조 (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①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그∨밖의 대표자가 연대(連帶)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이사에게 업무를 사실상 지시한 사람 또는 이사 그∨밖의 대표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35條 ①營利ヲ目的トスル社 ハ商事會社設立ノ條件ニ從ヒ之ヲ法人ト爲スコトヲ得

②前項ノ社 法人ニハ總テ商事會社ニ關スル規定ヲ準用ス

[류]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2 (법인인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 회사(商事會社)∨설립의 조건에 따라(또는 ‘조건을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앞항의 사단 법인(社團法人)에는 모두 상사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商事會社)의 설립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 절 설 립(設立)

**[개]** 제39조의2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류]** 제39조의2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39조의2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일]** 第37條 社團法人ノ設立者ハ定款ヲ作り之ニ左ノ事項ヲ記載スルコトヲ要ス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資産ニ關スル規定
5. 理事ノ任免ニ關スル規定
6. 社員タル資格ノ得喪ニ關スル規定

[류]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資産)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김] 제40조 【사단 법인의 정관】 사단 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V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기명 V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
6. 사원 V 자격을 얻고 잃음에 관한 규정
7. 존립 V 시기나 해산 V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또는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순】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V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資産)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 ‘기명날인’은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면’과 ‘득실’은 풀어쓰는 것이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일] 第54條 理事ノ代理權ニ加ヘタル制限ハ之ヲ以テ善意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다.

[김]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순】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다.

【해】 대표적인 이중부정의 일본어식 표현으로 긍정형으로 순화하여도 의미에 차이는 없으리 것으로 생각됨.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일] 第38條 ①社法人ノ定款ハ總社員ノ4分ノ3以上ノ同意アルトキニ限り之ヲ更スルコトヲ得但定款ニ別段ノ定ア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定款ノ變ハ主務官廳ノ認可ヲ受クルニ非サレハ其力ヲ生セス

[류]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김] 제42조 【사단 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 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 $\checkmark$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 $\checkmark$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순】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sup>v</sup>이상의 동의를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단, 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정관의 변경은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다.

**【해】** ‘정수’는 ‘정족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일] 第39條 財団法人ノ設立者ハ其設立ヲ目的トスル寄附行爲ヲ以テ第37條第号1乃至第5号ニ掲ケタル事項ヲ定ムルコトヲ要ス

[류]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記銘捺印)하여야 한다.

[김] 제43조 **【재단 법인(財團法人)의 정관】** 재단 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내놓고 제40조<sup>v</sup>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sup>v</sup>날인한다

**【순】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기부하고 제40조<sup>v</sup>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 ‘출연’은 ‘기부’로 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재’는 ‘적은’으로 한글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됨. 일본민법도 ‘출연’을 ‘기부’로 변경하였음.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일] 第40條 財団法人ノ設立者カ其名称, 事務所又ハ理事任免ノ方法ヲ定メシテ死亡シタルトキハ裁判所ハ利害關係人又ハ檢察官ノ請求ニ因リ之ヲ定ムルコトヲ要ス

[류]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任免)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김] 제44조 【재단 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 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정한다.

【**순**】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保全)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45조 【재단 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 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하였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앞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保全)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 ∨ 제2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 ‘한하여’는 ‘만’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그밖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고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그밖의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김] 제46조 **【재단 법인의 목적, 그 밖의 변경】** 재단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 ∨ 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목적, 그 밖의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순】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그 밖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목적, 그 밖의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 ‘참작’은 ‘고려’나 ‘생각’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41條 ①生前處分ヲ以テ寄附行爲ヲ爲ストキハ贈与ニ關スル規定ヲ準用ス

②遺言ヲ以テ寄附行爲ヲ爲ストキハ遺贈ニ關スル規定ヲ準用ス

[류] 제47조 (증여, 遺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또는 ‘설립할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써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또는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7조 [증여,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써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일] 第42條 ①生前處分ヲ以テ寄附行爲ヲ爲シタルトキハ寄附財産ハ法人設立ノ許可アリタル時ヨリ法人ノ財産ヲ組成ス

②遺言ヲ以テ寄附行爲ヲ爲シタルトキハ寄附財産ハ遺言カ効力ヲ生シタル時ヨリ法人ニ歸屬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에는 설립자의 출연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권리변동에 등기, 인도 등이 필요한 출연재산은 이를 갖추어야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김] 제48조 【출연(出捐)∨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또는 ‘설립할 때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시점(또는 ‘되었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써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또는 ‘설립할 때에’) 출연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또는 ‘-하였을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순】 제48조 [기부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은 법인이 성립되었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부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부터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에는 설립자의 기부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그 권리변동에 등기, 인도 등이 필요한 기부재산은 이를 갖추어야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일] 第45條 法人ハ其設立ノ日ヨリ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 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登記ヲ爲スコトヲ要ス

第46條 登記スヘキ事項左ノ如シ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許可ノ年月日
5. 存立時期ヲ定メタルトキハ其時期
6. 資産ノ總額
7. 出資ノ方法ヲ定メタルトキハ其方法
8. 理事ノ氏名, 住所

[류]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인가의 날짜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出資)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 제49조 【법인의 등기V사항】 ①법인V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일V이내에 주사무소V소재지에서 설립V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등기V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 ∨ 허가의 날짜
5. 존립 ∨ 시기나 해산 ∨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出資)의 방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순】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 ∨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개정안 : 10.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해】** ‘주간’은 ‘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일] 第45條 ①法人ハ其設立ノ日ヨリ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  
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登記ヲ爲スコトヲ要ス  
③法人設立ノ後新ニ事務所ヲ設ケタルトキハ其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  
週間内ニ登記ヲ爲スコトヲ要ス  
第46條 ②前項ニ掲ケタル事項中ニ変更ヲ生シタルトキハ主タル事務所  
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其登  
記ヲ爲スコトヲ要ス登記前ニ在リテハ其変更ヲ以テ他人ニ對抗スルコト  
ヲ得ス

- [류] 제50조 (分事務所設置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의 사항을 등  
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  
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  
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김] 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分  
事務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소재지에서는 분사  
무소를 설치한 것을 3주일∨이내에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  
서는 앞∨조∨제2항의 사항을 같은∨기간∨내에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  
소∨소재지에서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같은∨기간∨내에 등기  
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  
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앞항의 기  
간∨내에 등기하면 된다.

- [순] 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설치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  
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49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  
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V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V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일] 第48條 ①法人カ主タル事務所ヲ移轉シタルトキハ2週間内ニ旧所在地ニ於テハ移轉ノ登記ヲ爲シ新所在地ニ於テハ第46條第1項ニ定メタル登記ヲ爲シ其他ノ事務所ヲ移轉シタルトキハ旧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移轉ノ登記ヲ爲シ新所在地ニ於テハ4週間内ニ第46條第1項ニ定メタル登記ヲ爲スコトヲ要ス

②同一ノ登記所ノ管轄區域内ニ於テ事務所ヲ移轉シタルトキハ其移轉ノミノ登記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51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김] 제51조 **【사무소 V 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V 이내에 이전 V 등기를 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V 기간 V 내에 제49조 V 제2항에 기록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V 구역 V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순】** 제51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 V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V 내에 제49조 V 제2항에 적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V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해]** ‘계기’는 ‘기재’의 의미이므로 ‘적힌’을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 第46條 ②前項ニ掲ケタル事項中ニ変更ヲ生シタルトキハ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 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其登記ヲ爲スコトヲ要ス登記前ニ在リテハ其 更ヲ以テ他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김] 제52조 **【변경 V 등기】** 제49조 V 제2항의 사항 V 중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일 V 이내에 변경 V 등기를 하여야 한다.

**[순]**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 V 제2항의 사항 V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 V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일] 第47條 第45條第1項及ヒ前條ノ規定ニ依リ登記スヘキ事項ニシテ官廳ノ許可ヲ要スルモノハ其許可書ノ到達シタル時ヨリ登記ノ期間ヲ起算ス

[류] 제53조 (등기기간의 계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김] 제53조 **【등기 V 기간의 기산(起算)】**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순]**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써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해]** ‘요하는’은 ‘필요로 하는’으로, ‘기산’은 ‘계산’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일] 第46條 ②前項ニ掲ケタル事項中ニ変更ヲ生シタルトキハ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 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其登記ヲ爲スコトヲ要ス登記前ニ在リテハ其 更ヲ以テ他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제2항 없음

[류]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에 이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바로 공고하여야 한다.

[김]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이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순]**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이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바로(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해]** ‘지체없이’는 ‘바로’ 혹은 ‘즉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 第51條 ①法人ハ設立ノ時及ヒ每年初ノ3個月内ニ財産目錄ヲ作り常ニ之ヲ事務所ニ備へ置クコトヲ要ス但特ニ事業年度ヲ設クルモノハ設立ノ時及ヒ其年度ノ終ニ於テ之ヲ作ルコトヲ要ス

②社團法人ハ社員名簿ヲ備へ置キ社員ノ変更アル毎ニ之ヲ訂正スルコトヲ要ス

[류] 제55조 (재산목록과 社員名簿) ①법인은 성립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김]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사업∨연도를 정하지 않은 법인은 설립된 시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립된 이듬해부터는 매년 연초부터(또는 ‘최초의’) 3개월∨이내에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설립된 시점과 매 사업 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 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순】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된 때 및 매년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된 때 및 그 년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 ‘월’은 ‘개월’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일] -없음

[류] 제56조 (社員權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김]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 법인에서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순]** 제56조 [사원권(社員權)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개] 제56조의2 (외국법인)** ①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법인 또는 가장 유사한 법인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류] 제56조의2 (외국법인) ①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의 법인 또는 가장 유사한 법인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다만,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순]** 제56조의2 [외국법인(外國法人)] ①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의 법인 또는 가장 비슷한 법인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률과 조약에서 그 설립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에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절 기관(機關)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일] 第52條 ①法人ニハ1人又ハ數人ノ理事ヲ置クコトヲ要ス

[류]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순】 제57조 [이사(理事)]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일] 第53條 理事ハ總テ法人ノ事務ニ付キ法人ヲ代表ス但定款ノ規定又ハ寄附行爲ノ趣旨ニ違反スルコトヲ得ス 又社 法人ニ在リテハ總會ノ決議ニ從フコトヲ要ス

第52條 ②理事數人アル場合ニ於テ定款又ハ寄附行爲ニ別段ノ定ナキトキハ法人ノ事務ハ理事ノ過半數ヲ以テ之ヲ決ス

[류]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김] 제58조 【이사의 사무 ∨ 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 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순】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 ‘수인’은 ‘여러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53條 理事ハ總テ法人ノ事務ニ付キ法人ヲ代表ス但定款ノ規定又ハ寄附行爲ノ趣旨ニ違反スルコトヲ得ス又社團法人ニ在リテハ總會ノ決議ニ從フコトヲ要ス

[류]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를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4條 理事ノ代理權ニ加ヘタル制限ハ之ヲ以テ善意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위한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V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위한 대항요건(對抗要件)]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

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일] -없음

[류]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김] -없음

**[순]**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김]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순]**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일] 第55條 理事ハ定款、寄附行爲又ハ總會ノ決議ニ依リテ禁止セラレサルトキニ限り特定ノ行爲ノ代理ヲ他人ニ委任スルコトヲ得

[류]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김]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 선임】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순】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한글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일] 第56條 理事ノ欠ケタル場合ニ於テ遲滯ノ爲メ損害ヲ生スル虞アルトキハ裁判所ハ利害關係人又ハ檢察官ノ請求ニ因リ仮理事ヲ選任ス

[류]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缺員)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김] 제63조 【임시 ∨ 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 ∨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순】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缺員)이 있음으로 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일] 第57條 法人ト理事トノ利益相反スル事項ニ付テハ理事ハ代理權ヲ有セス此場合ニ於テハ前條ノ規定ニ依リテ特別代理人ヲ選任スルコトヲ要ス

[류]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김] 제64조 【특별 대리인(特別代理人)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앞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순】 제64조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의 선임] 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 ‘상반되는’은 ‘서로 반대되는’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서로 맞지 않은’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됨.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일] -없음

[류] 제65조 (이사의 임무태만) ①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이사에게 그의 업무를 사실상 지시하는 사람 또는 이사 그밖의 대표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김] 제65조 【이사의 임무V태만】 이사들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그 이사들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損害賠償)을 할 책임이 있다.

**[순]** 제65조 [이사의 임무대만]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개정안: ②이사에게 업무를 사실상 지시하는 사람 또는 이사 그V밖의 대표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해]** ‘해태’는 법령용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명사형으로 독립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만’으로, 형용사형이나 문장속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게을리 함’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일] 第58條 法人ニハ定款、寄附行爲又ハ總會ノ決議ヲ以テ1人又ハ數人ノ監事ヲ置クコトヲ得

[류] 제66조 (監事)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김]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순]**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일] 第59條 監事ノ職務左ノ如シ

1. 法人ノ財産ノ狀況ヲ監査スルコト
2. 理事ノ業務執行ノ狀況ヲ監査スルコト
3. 財産ノ狀況又ハ業務ノ執行ニ付キ不整ノ廉アルコトヲ發見シタルトキハ之ヲ總會又ハ主務官廳ニ報告スルコト
4. 前号ノ報告ヲ爲ス爲メ必要アルトキハ總會ヲ招集スルコト

[류]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監査)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不備)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김]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고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앞∨호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순】 제67조 [감사(監事)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태을 감사(監査)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상태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태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不備)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해당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해】 ‘監事’와 ‘監査’는 동음이의어로서 한자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황’은 ‘상태’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옳바를 것으로 생각됨.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일] 第63條 社團法人ノ事務ハ定款ヲ以テ理事其他ノ役員ニ委任シタルモノヲ除ク外總テ總會ノ決議ニ依リテ之ヲ行フ

[류]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그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김]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 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나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순】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일] 第60條 社団法人ノ理事ハ少クトモ毎年1回社員ノ通常總會ヲ開クコトヲ要ス

[류]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김] 제69조 **【통상 ∨ 총회】** 사단 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 이상 통상 ∨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순】 제69조 [정기총회(定期總會)]**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 ‘통상총회’는 ‘정기총회’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일] 第61條 ①社団法人ノ理事ハ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何時ニテモ臨時總會ヲ招集スルコトヲ得

②總社員ノ5分ノ1以上ヨリ會議ノ目的タル事項ヲ示シテ請求ヲ爲シタルトキハ理事ハ臨時總會ヲ招集スルコトヲ要ス 但此定數ハ定款ヲ以テ之ヲ増減スルコトヲ得

[류]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 후 2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김]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 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인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에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 총회의 정족수는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앞항의 청구를 한 후 2주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는 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순】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인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청구하였을 때에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족수(定足數)는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 후 2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 ‘정수’는 ‘정족수’로, ‘증감’은 ‘변경’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됨.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일] 第62條 總會ノ招集ハ少クトモ5日前ニ其會議ノ目的タル事項ヲ示シ定款ニ定メタル方法ニ從ヒテ之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그밖에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김]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소집인들에게 통지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순】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해】 ‘발하고’는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송하고’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일] 第64條 總會ニ於テハノ規定ニ依リテ予メ通知ヲ爲シタル事項ニ付テノミ決議ヲ爲スコトヲ得 但定款ニ別段ノ定ア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김]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앞 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순】 제72조 [총회의 의결사항(議決事項)] 총회는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해】 ‘결의’는 ‘의결’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65條 ① 各社員ノ表決權ハ平等ナルモノトス

② 總會ニ出席セサル社員ハ書面ヲ以テ表決ヲ爲シ又ハ代理人ヲ出タスコトヲ得

③ 前2項ノ規定ハ定款ニ別段ノ定アル場合ニハ之ヲ適用セス

[류]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73조 [사원의 의결권(議決權)] ① 각 사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일] 第66條 社團法人ト或社員トノ關係ニ付キ議決ヲ爲ス場合ニ於テハ其社員ハ表決權ヲ有セス

[류] 제74조 (사원의 결의권이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김] 제74조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는 경우】 총회에서 사단 법인과 어떤 사원의 관계 ∨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순]** 제74조 [사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떤 사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

**[해]** 이 조의 ‘의결권’은 ‘표결권’으로 바꾸는 것이 옳바를 것으로 보임.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일] -없음

**[류]**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②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김]**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순]** 제75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해]** ‘당해’는 ‘해당’으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김]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순] 제76조 [총회의 의사록(議事錄)]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진행의 과정,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4 절 해 산(解散)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일] 第68條 ①法人ハ左ノ事由ニ因リテ解散ス

1. 定款又ハ寄附行爲ヲ以テ定メタル解散事由ノ發生
2. 法人ノ目的タル事業ノ成功又ハ其成功ノ不能
3. 破産
4. 設立許可ノ取消

②社団法人ハ前項ニ掲ケタル場合ノ外左ノ事由ニ因リテ解散ス

1. 總會ノ決議
2. 社員ノ欠亡

[류]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그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된다.

[김]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 법인은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될 때에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순】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의 불가능,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경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 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 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일] 第69條 社団法人ハ總社員ノ4分ノ3以上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解散ノ 決議ヲ爲スコトヲ得ス但定款ニ別段ノ定ア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 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김] 제78조 【사단 법인의 해산∨결의】 사단 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 상의 동 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 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순】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의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 의가 없으면 해산을 의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 第70條 ①法人カ其債務ヲ完済スル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理事若クハ債權者ノ請求ニ因リ又ハ職權ヲ以テ破産ノ宣告ヲ爲ス  
②前項ノ場合ニ於テ理事ハ直チニ破産宣告ノ請求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바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김]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순】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전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사는 바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 ‘完済’는 ‘완전변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일] 第72條 ①解散シタル法人ノ財産ハ定款又ハ寄附行爲ヲ以テ指定シタル人ニ歸屬ス

②定款又ハ寄附行爲ヲ以テ歸屬權利者ヲ指定セス又ハ之ヲ指定スル方法ヲ定メサリシトキハ理事ハ主務官廳ノ許可ヲ得テ其法人ノ目的ニ類似セル目的ノ爲メニ其財産ヲ處分スルコトヲ得 但社団法人ニ在リテハ總會ノ決議ヲ經ルコトヲ要ス

③前2項ノ規定ニ依リテ處分セラレサル財産ハ國庫ニ歸屬ス

[류] 제80조 (남은 재산의 귀속) ①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된 사람에게 귀속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김]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귀속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이어나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 법인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순**】 제80조 [남은 재산의 귀속] ①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된 사람에게 귀속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이사 또는 청산인은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일] 第73條 解散シタル法人ハ清算ノ目的ノ範圍内ニ於テハ其清算ノ結スニ至ルマテ尙ホ存續スルモノト看做ス

[류] 제81조 (清算法人)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김]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또는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순】 제81조 [청산법인(清算法人)]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일] 第74條 法人カ解散シタルトキハ破産ノ場合ヲ除ク外理事其清算人ト爲ル但定款若クハ寄附行爲ニ別段ノ定アルトキ又ハ總會ニ於テ他人ヲ選任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김]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순】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일] 第75條 前條ノ規定ニ依リテ清算人タル者ナキトキ又ハ清算人ノ欠ケタル爲メ損害ヲ生スル虞アルトキハ裁判所ハ利害關係人若クハ檢察官ノ請求ニ因リ又ハ職權ヲ以テ清算人ヲ選任スルコトヲ得

[류]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김] 제83조 【법원이 행하는 청산인 선임】 앞 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순**】 제83조 [법원의 청산인 선임(選任)]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일] 第76條 重要ナル事由アルトキハ裁判所ハ利害關係人若クハ檢察官ノ請求ニ因リ又ハ職權ヲ以テ清算人ヲ解任スルコトヲ得

[류]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김] 제84조 【법원이 행하는 청산인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순**】 제84조 [법원의 청산인 해임(解任)]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 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일] 第77條 ①清算人ハ破産及ビ設立許可ノ取消ノ場合ヲ除ク外解散後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 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其氏名, 住所及ヒ解散ノ原因, 年月日ノ登記ヲ爲シ且ツ之ヲ主務官廳ニ 出ツルコトヲ要ス

-제2항 없음

[류]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된다.

[김]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후 3주일∨이내에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까지 기재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앞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순】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그 밖의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을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 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일] 第77條 ①清算人ハ破産及ビ設立許可ノ取消ノ場合ヲ除ク外解散後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 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其氏名, 住所及ヒ解散ノ原因, 年月日ノ登記ヲ爲シ且ツ之ヲ主務官廳ニ届出ツルコトヲ要ス

第77條 ②清算中ニ就職シタル清算人ハ就職後主タル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2週間, 其他ノ事務所ノ所在地ニ於テハ3週間内ニ某氏名, 住所ノ登記ヲ爲シ且ツ之ヲ主務官廳ニ届出ツルコトヲ要ス

[류]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 내에 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김]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 후 3주일 ∨ 이내에 앞 ∨ 조 ∨ 제1항의 사항을 주무 ∨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 ∨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순]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 후 3주 ∨ 내에 제85조 ∨ 제1항의 사항을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 ∨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일] 第78條 ①清算人ノ職務左ノ如シ

1. 現務ノ結了
2. 債權ノ取立及ヒ債務ノ弁濟
3. 残余財産ノ引渡

②清算人ハ前項ノ職務ヲ行フ爲メニ必要ナル一切ノ行爲ヲ爲スコトヲ得

[류]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現存事務)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남은 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검]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推尋)과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앞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순]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남아있는 사무의 종결
2. 채권 찾기 및 채무의 변제
3. 남은 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해] ‘변제’는 ‘갚음’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현존사무’는 ‘남아있는 사무’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심’에 대한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예: ‘추적’ 혹은 ‘찾기’).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일] 第79條 ①清算人ハ其就職ノ日ヨリ2个月内ニ少クトモ3回ノ公告ヲ以テ債權者ニ對シ一定ノ期間内ニ其請求ノ申出ヲ爲スヘキ旨ヲ催告スルコトヲ要ス但其期間ハ2个月ヲ下ルコトヲ得ス

②前項ノ公告ニハ債權者カ期間内ニ申出ヲ爲ササルトキハ其債權ハ清算ヨリ除斥セラルヘキ旨ヲ附記スルコトヲ要ス但清算人ハ知レタル債權者ヲ除斥スルコトヲ得ス

[류]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자에게 3회 이상의 공고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김]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 채권자에게 공고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재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신고 기간은 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앞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순】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일] 第79條 ②前項ノ公告ニハ債權者カ期間内ニ申出ヲ爲ササルトキハ其債權ハ清算ヨリ除斥セラルヘキ旨ヲ附記スルコトヲ要ス但清算人ハ知レタル債權者ヲ除斥スルコトヲ得ス

③清算人ハ知レタル債權者ニハ各別ニ其申出ヲ催告スルコトヲ要ス

[류] 제89조 (채권신고의催告)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김]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재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순】 제89조 [채권신고의 통지]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遲延損害)의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김]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 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순】**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遲延損害)의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값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김]**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적인(또는 ‘-이 확정되지 않은’, ‘-을 확정하지 않은’) 채권, 그 밖의 가액(價額)이 불확정적인(또는 ‘-이 확정되지 않은’, ‘-을 확정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순】**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特例)]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적인 채권, 그 밖의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해】** ‘가액’은 ‘금액’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일] 第80條 前條ノ期間後ニ申出テタル債權者ハ法人ノ債務完濟ノ後未タ歸屬權利者テ引渡ササル財産ニ對シテノミ請求ヲ爲スコトヲ得

[류] 제92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킨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제92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에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순】** 제92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 ‘완제’는 ‘완전히 변제’로 풀어쓰는 것이 용어의 명확화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됨.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일] 第81條 ①清算中ニ法人ノ財産カ其債務ヲ完濟スルニ不足ナルコト分明ナルニ至リタルトキハ清算人ハ直チニ破産宣告ノ請求ヲ爲シテ其旨ヲ公告スルコトヲ要ス

第81條 ②清算人ハ破産管財人ニ其事務ヲ引渡シタルトキハ其任ヲ終ハリタルモノトス

-제3항 없음

[류]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①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청산인은 바로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게 그 사무를 인계(引繼)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

③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된다.

[김]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에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 관재인(破産管財人)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순】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때에 청산인은 바로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재산관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引繼)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해】 ‘관재인’은 ‘재산관리인’으로 순화하는 것이 실종에 따른 재산관리인과의 용어통일에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 第83條 清算カ結了シタルトキハ清算人ハ之ヲ主務官廳ニ届出ツルコトヲ要ス

[류]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김]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 청산인은 3주일∨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순】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 청산인은 3주∨내에 이를 등기하고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일] 第82條 ①法人ノ解散及ヒ清算ハ裁判所ノ監督ニ屬ス  
②裁判所ハ何時ニテモ職權ヲ以テ前項ノ監督ニ必要ナル検査ヲ爲スコトヲ得

[류] 제95조 (해산 및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김]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한다.

【순】 제95조 [해산 및 청산의 검사·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 제2항, 제59조부터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게 준용된다.

[김]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과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4조, 제65조,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부터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5 절 벌 칙(罰則)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일] 第84條 法人ノ理事, 監事又ハ清算人ハ左ノ場合ニ於テハ50万円以下ノ過料ニ處セラル

1. 本章ニ定メタル登記ヲ爲スコトヲ怠リタルトキ
2. 第51條ノ規定ニ違反シ又ハ財産目錄若クハ社員名簿ニ不正ノ記載ヲ爲シタルトキ
3. 第67條又ハ第82條ノ場合ニ於テ主務官廳其權限ノ委任ヲ受ケタル國ニ所屬スル行政廳若クハ其權限ニ屬スル事務ヲ處理スル都道府縣ノ執行機關又ハ裁判所ノ檢査ヲ妨ケタルトキ
- 3ノ2. 主務官廳又ハ其權限ノ委任ヲ受ケタル國ニ所屬スル行政廳若クハ其權限ニ屬スル事務ヲ處理スル都道府縣ノ執行機關ノ監督上ノ命令ニ違反シタルトキ
4. 官廳, 主務官廳ノ權限ニ屬スル事務ヲ處理スル都道府縣ノ執行機關又ハ總會ニ對シ不實ノ申立ヲ爲シ又ハ事實ヲ隱蔽シタルトキ
5. 第70條又ハ第81條ノ規定ニ反シ破産宣告ノ請求ヲ爲スコトヲ怠リタルトキ
6. 第79條又ハ第81條ニ定メタル公告ヲ爲スコトヲ怠リ又ハ不正ノ公告ヲ爲シタルトキ

[류]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장에 규정한 등기를 게을리하였을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하였을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하였을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게을리하였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였을 때

[김]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5만 $\vee$ 환 $\vee$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환(圓): ‘환’을 ‘원’으로 환산할 때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근거하여, 환산하도록 하였다. ‘罰金 등 臨時措置法’의 제4조 제3항은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圓)을 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었으므로 위 조문의 ‘5만환’은 ‘5만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펴 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류창호, 2003: 148)에서는 해당 조문의 ‘5만환’을 ‘500만원’이라고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민법(재산편)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1. 이 장에 규정한 등기를 제때에(또는 ‘기일 내에’) 하지 않았을 때
2.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산 $\vee$ 목록이나 사원 $\vee$ 명부에 부정(不正)한  $\vee$ 기재를 하였을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하였을 때

4. 주무 $\vee$ 관청이나 총회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을 숨겼을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 $\vee$ 선고 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7. 제88조, 제93조에서 정한 공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였을 때

**[순]** 제97조 [벌칙(罰則)]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vee$ 호의 경우에는 5만원 $\vee$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장에 규정한 등기를 게을리하였을 때
2.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한 기재를 하였을 때
3. 제37조와 제95조에 규정한 검사·감독을 방해하였을 때
4. 해당관청 또는 총회에 사실이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겼을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9조와 제9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
7. 제88조와 제93조에서 정한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였을 때

**[해]** ‘본장’은 ‘이 장’으로, ‘해태’는 ‘게으름’으로, ‘은폐’는 ‘숨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순화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제 4 장 물 건(物件)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일] 第85條 本法ニ於テ物トハ有體物ヲ謂フ

[류] 제98조 (물건의 정의) 이 법에서 물건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그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김] 제98조 【물건의 정의】 이 법에서 물건이란 유체물과 전기,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순】 제98조 [물건의 정의(定義)] 이 법에서 물건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일] 第86條 ①土地及ヒ其定著物ハ之ヲ不動産トス  
②此他ノ物ハ總テ之ヲ動産トス

[류]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김]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순】 제99조 [부동산과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일] 第87條 ①物ノ所有者カ其物ノ常用ニ供スル爲メ自己ノ所有ニ屬スル他ノ物ヲ以テ之ニ附屬セシメタルトキハ其附屬セシメタル物ヲ從物トス  
②從物ハ、主物ノ處分ニ隨フ

[류] 제100조 (主物, 從物)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김] 제100조 【주물(主物), 종물(從物)】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상용(常用)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되게 하였을 때에 그 부속물은 종물(從物)이다.

②종물(從物)은 주물(主物)의 처분에 따른다.

[순] 제100조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에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해] ‘상용에 공하기’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일] 第88條 ①物ノ用方ニ從ヒ收取スル產出物ヲ天然果實トス

②物ノ使用ノ對価トシテ受クヘキ金錢其他ノ物ヲ法定果實トス

[류] 제101조 (天然果實, 法定果實) ①물건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수취(收取)한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그밖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김] 제101조 【천연∨이득, 법정∨이득】 ①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어 들이는 산출물은 천연∨이득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은 법정∨이득이다.

[순] 제101조 [천연이익(天然利益)과 법정이익(法定利益)] ①물건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산출물은 천연이익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은 법정이익이다.

[해] ‘果實’은 ‘과일 혹은 나무의 열매’라는 일반용어뿐만 아니라 ‘過失’이라는 법령용어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익’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또한 ‘용법’은 ‘정해진 방법’ 혹은 ‘사용방법’으로, ‘수취’는 ‘취득’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일] 第89條 ①天然果實ハ其元物ヨリ分離スル時ニ之ヲ收取スル權利ヲ有スル者ニ屬ス

②法定果實ハ之ヲ收取スル權利ノ存續期間日割ヲ以テ之ヲ取得ス

[류]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김] 제102조 【이득의 취득】 ①천연∨이득은 그 원물에서 분리될 때에 이를 거두어들일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이득은 거두어들일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순】 제102조 [이익의 취득] ①천연이익은 그 원물에서 분리될 때에 이를 취득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이익은 취득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비율로 취득한다.

## 제 5 장 법률행위(法律行爲)

### 제 1 절 총 칙(總則)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 第90條 公ノ秩序又ハ善良ノ風俗ニ反スル事項ヲ目トスル法律行爲ハ無效トス

[류] 제103조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김]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순】** 제103조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 -없음

[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窮迫), 판단력의 부족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순】** 제104조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곤궁(困窮), 경솔 (개정안: 판단력 부족)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매우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 ‘궁박’과 ‘곤궁’은 어려운 한자어로서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솔’을 ‘판단력 부족’으로 순화한 개정안은 적절한 순화로 생각됨.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일] 第91條 法律行爲ノ當事者カ法令中ノ公ノ秩序ニ關セサル規定ニ異ナリタル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其意思ニ從フ

[류]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김] 제105조 **【임의∨규정】** 법령∨중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런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순】** 제105조 [임의규정(任意規定)]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일] 第92條 法令中ノ公ノ秩序ニ關セサル規定ニ異ナリタル慣習アル場合ニ於テ法律行爲ノ當事者カ之ニ依ル意思ヲ有セルモノト認ムヘキトキハ其慣習ニ從フ

[류] 제106조 (법률행위의 해석) ①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거래관행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김]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 중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그런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관습에 의거하여 법률 ∨ 행위를 해석한다.

**【순】**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 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그 관습에 의한다.

(개정안 : 제106조 [법률행위의 해석] ①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거래관행 그 ∨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표시(意思表示)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93條 意思表示ハ表意者カ其眞意ニ非サルコトヲ知リテ之ヲ爲シタル爲メ其効力ヲ妨ケラルルコトナシ但相手方カ表意者ノ眞意ヲ知り又ハ之ヲ知ルコトヲ得ヘカリシトキハ其意思表示ハ無効トス

[류] 제107조 (眞意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107조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의사 표시자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가 의사 표시자의 진의가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앞항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107조 [참뜻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참뜻이 아닌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참뜻이 아닌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 ‘진의’는 ‘참뜻’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94條 ①相手方ト通シテ爲シタル虚偽ノ意思表示ハ無効トス

②前項ノ意思表示ノ無効ハ之ヲ以テ善意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08조 (通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108조 【서로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서로 짜고 (또는 ‘서로 합의한 뒤’)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앞항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108조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합의한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 ‘통정’은 ‘합의’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95條 意思表示ハ法律行爲ノ要素ニ錯誤アリタルトキハ無効トス但表意者ニ重大ナル過失アリタルトキハ表意者自ラ其無効ヲ主張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表意者)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당사자, 물건의 성질과 상태 그밖의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그 착오가 거래상 의사표시의 본질적인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109조 【착오로 말미암은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또는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것일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109조 [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안: ②당사자, 물건의 성질과 상태 그 밖의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그 착오가 거래상 의사표시의 본질적인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해]** 개정안은 제2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있음.

**[개]** 제109조의2 (취소자의 손해배상 의무) ①제109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그 착오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의사표시가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류]** 제109조의2 (취소자의 손해배상 의무) ①제109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람은 그 착오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의사표시의 유효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109조의2 [취소자의 손해배상 의무] ①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람이 그 착오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하다는 것을 믿었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금액은 의사표시가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금액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96條 ①詐欺又ハ強迫ニ因ル意思表示ハ之ヲ取消スコトヲ得

②或人ニ對スル意思表示ニ付キ第三者カ詐欺ヲ行ヒタル場合ニ於テハ相手方カ其事實ヲ知りタルトキニ限り其意思表示ヲ取消スコトヲ得

③詐欺ニ因ル意思表示ノ取消ハ之ヲ以テ善意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10조 (사기, 強迫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110조 【사기나 강박(強迫)으로 말미암은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으로 말미암은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 행위에서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110조 [사기나 협박(脅迫)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협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 ‘강박’은 ‘협박’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97條 ①隔地者ニ對スル意思表示ハ其通知ノ相手方ニ到達シタル時ヨリ其効力ヲ生ス

②表意者カ通知ヲ發シタル後ニ死亡シ又ハ能力ヲ失フモ意思表示ハ之カ爲メニ其効力ヲ妨ケラルルコトナシ

[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98條 意思表示ノ相手方カ之ヲ受ケタル時ニ未成年者又ハ成年被後見人ナリシトキハ其意思表示ヲ以テ之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但其法定代理人カ之ヲ知りタル後ハ此限ニ在ラス

[류] 제112조 (의사표시의 受領能力)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았을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긴]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이쪽에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이를 수령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능력자라도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순】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았을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일] 第97條ノ2 ①意思表示ハ表意者カ相手方ヲ知ルコト能ハス又ハ其所  
在ヲ知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公示ノ方法ニ依リテ之ヲ爲スコトヲ得

②前項ノ公示ハ公示送達ニ關スル民事訴訟法ノ規定ニ從ヒ裁判所ノ揭示場ニ揭示シ且其揭示アリタルコトヲ官報及ヒ新聞紙ニ少クモ1回掲載シテ之ヲ爲ス 但裁判所相当ト認ムルトキハ官報及ヒ新聞紙ノ掲載ニ代ヘ市役所, 町村役場又ハ之ニ準スヘキ施設ノ揭示場ニ揭示スヘキコトヲ命スルコトヲ得

[류] 제113조 (의사표시의 公示送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였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公示送達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김] 제113조 【의사∨표시의 公示∨송달】 의사 표시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公示∨송달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순**】 제113조 [의사표시의 公示送達(公示送達)] 의사표시자가 과실이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公示送達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 제 3 절 대 리(代理)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일] 第99條 ①代理人カ其權限内ニ於テ本人ノ爲メニスルコトヲ示シテ爲シタル意思表示ハ直接ニ本人ニ對シテ其力ヲ生ス

②前項ノ規定ハ第三者カ代理人ニ對シテ爲シタル意思表示ニ之ヲ準用ス

[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된다.

[김]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 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앞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또는 ‘앞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제삼자가 한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순**】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하】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제3자가 한 의사 $\vee$ 표시에 준용한다.”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100條 代理人カ本人ノ爲メニスルコトヲ示サスシテ爲シタル意思表示ハ自己ノ爲メニ之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但相手方カ其本人ノ爲メニスルコトヲ知り又ハ之ヲ知ルコトヲ得ヘカリシトキハ前條第1項ノ規定ヲ準用ス

[류]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의사 $\vee$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앞 $\vee$ 조 $\vee$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vee$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일] 第101條 ①意思表示ノ効力カ意思ノ欠缺, 詐欺, 強迫又ハ或事情ヲ知りタルコト若クハ之ヲ知ラサル過失アリタルコトニ因リテ影響ヲ受クヘキ場合ニ於テ其事實ノ有無ハ代理人ニ付キ之ヲ定ム

②特定ノ法律行爲ヲ爲スコトヲ委託セラレタル場合ニ於テ代理人カ本人ノ指図ニ從ヒ其行爲ヲ爲シタルトキハ本人ハ其自ラ知りタル事情ニ付キ代理人ノ不知ヲ主張スルコトヲ得ス其過失ニ因リテ知ラサリシ事情ニ付キ亦同シ

[류] 제116조 (대리행위의 瑕疵)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김]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欠缺), 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거나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런 영향을 받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하였다 때에(또는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순]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 사기, 협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하였다 때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순] ‘하자’와 ‘흠결’은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 第102條 代理人ハ能力者タルコトヲ要セス

[류]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 이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순**】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일] 第103條 權限ノ定ナキ代理人ハ左ノ行爲ノミヲ爲ス權限ヲ有ス

1. 保存行爲
2. 代理ノ目的タル物又ハ權利ノ性質ヲセサル範 内ニ於テ其利用又ハ改良ヲ目的トスル行爲

[류]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김]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sup>∨</sup>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또는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순]**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保存行爲)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없음

[류] 제119조 (各自代理)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授權行爲)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授權行爲)에 다르게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순]**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授權行爲)에 다르게 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일] 第104條 委任ニ因ル代理人ハ本人ノ許諾ヲ得タルトキ又ハ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ルトキニ非サレハ復代理人ヲ選任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復任權)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復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김]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따라 부여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순】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로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 ‘복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예 : ‘겹대리인’, ‘겹임권’)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일] 第105條 ①代理人カ前條ノ場合ニ於テ復代理人ヲ選任シタルトキハ選任及ヒ監督ニ付キ本人ニ對シテ其責ニ任ス

②代理人カ本人ノ指名ニ從ヒテ復代理人ヲ選任シタルトキハ其不適任又ハ不誠實ナルコトヲ知りテ之ヲ本人ニ通知シ又ハ之ヲ解任スルコトヲ怠リタルニ非サレハ其責ニ任セス

[류]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指名)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이 있다.

[김]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에 대한 책임】 ①앞 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이 적임자가 아니거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복대리인의 해임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다.

**【순】**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 선임의 책임] ①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指名)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일] 第106條 法定代理人ハ其責任ヲ以テ復代理人ヲ選任スルコトヲ得但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リタルトキハ前條第1項ニ定メタル責任ノミヲ負フ

[류]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제121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만이 있다.

[김] 제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復任權)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앞 ∨ 조 ∨ 제1항에서 정한 책임만 있다.

**【순】**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제121조 ∨ 제1항에서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일] 第107條 ①復代理人ハ其權限内ノ行爲ニ付キ本人ヲ代表ス

②復代理人ハ本人及ヒ第三者ニ對シテ代理人ト同一ノ權利義務ヲ有ス

[류]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김]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순】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일] 第108條 何人ト雖モ同一ノ法律行爲ニ付キ其相手方ノ代理人ト爲リ又ハ當事者双方ノ代理人ト爲ルコトヲ得ス但債務ノ履行ニ付テハ此限ニ在ラス

[류]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그러하지 않다.

[김] 제124조 【자기 계약(自己契約), 쌍방 대리(雙方代理)】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

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양쪽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순]** 제124조 [자기계약(自己契約)·쌍방대리(雙方代理)]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양쪽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109條 第三者ニ對シテ他人ニ代理權ヲ与ヘタル旨ヲ表示シタル者ハ其代理權ノ範圍内ニ於テ其他人ト第三者トノ間ニ爲シタル行爲ニ付キ其責ニ任ス

[류]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表見代理)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사람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다른 사람과 그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로써 하는 표현 대리(表見代理)】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표시한 사람은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제삼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表現代理)]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표시한 사람은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다른 사람과 그 제3자∨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 ‘표현대리’는 용어순화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미 법률전문용어로 정착된 용어이며, 적절한 대체어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일] 第110條 代理人カ其權限外ノ行爲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第三者カ其權限アリト信スヘキ正ノ理由ヲ有セシトキハ前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126조 (권한을 넘은 表見代理)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김] 제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또는 ‘있을 때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순】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일] 第111條 ①代理權ハ左ノ事由ニ因リテ消滅ス

1. 本人ノ死亡
2. 代理人ノ死亡, 若クハ破産又ハ代理人ガ後見開始ノ審判ヲ受ケタルコト

[류]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김]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순】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消滅事由)]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일] 第111條 ②此他委任ニ因ル代理權ハ委任ノ終了ニ因リテ消滅ス

[류]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김]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앞∨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된다. 법률∨관계가 종료되기∨전에 본인이 수권∨행위(授權行爲)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순】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가 종료되기∨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112條 代理權ノ消滅ハ之ヲ以テ善意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  
ス但第三者カ過失ニ因リテ其事實ヲ知ラサリシ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表見代理)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이 소멸되고 난  
후에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말미암아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  
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일] 第113條 ①代理權ヲ有セサル者カ他人ノ代理人トシテ爲シタル契約  
ハ本人カ其追認ヲ爲スニ非サレハ之ニ對シテ其 カヲ生セス

[류] 제130조 (無權代理)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  
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여야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김] 제130조 【무권 대리(無權代理)】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  
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순】 제130조 [무권대리(無權代理)]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追認)하여야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  
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아니한 때  
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일] 第114條 前條ノ場合ニ於テ相手方ハ相当ノ期間ヲ定メ其期間内ニ追認ヲ爲スヤ否ヤヲ確答スヘキ旨ヲ本人ニ催告スルコトヲ得若シ本人カ其期間内ニ確答ヲ爲ササルトキハ追認ヲ拒絶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131조 (상대방의 催告權)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김]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순】 제131조 [상대방의 통지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통지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 ‘상당한’은 ‘적당한’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113條 ②追認又ハ其拒絶ハ相手方ニ對シテ之ヲ爲スニ非サレハ之ヲ以テ其相手方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但相手方カ其事實ヲ知リ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132조 【추인이나 거절의 상대방】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132조 [추인·거절(拒絶)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일] 第116條 追認ハ別段ノ意思表示ナキトキハ契約ノ時ニ遡リテ其効力ヲ生ス但第三者ノ權利ヲ害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김]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순】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115條 代理權ヲ有セサル者ノ爲シタル契約ハ本人ノ追認ナキ間ハ相手方ニ於テ之ヲ取消スコトヲ得但契約ノ當時相手方カ代理權ナキコトヲ知リ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을 한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117條 ① 他人ノ代理人トシテ契約ヲ爲シタル者カ其代理權ヲ證明スルコト能ハス且本人ノ追認ヲ得サリトキハ相手方ノ選擇ニ從ヒ之ニ對シテ履行又ハ損害賠償ノ責ニ任ス

② 前項ノ規定ハ相手方カ代理權ナキコトヲ知リタルトキ若クハ過失ニ因リテ之ヲ知ラサリトキ又ハ代理人トシテ契約ヲ爲シタル者カ其能力ヲ有セサリトキハ之ヲ適用セス

[류] 제135조 (無權代理人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사람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135조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져야 할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또는 ‘선택을 좇아’)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행위능력<sup>1</sup>이 없을 때에는 앞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135조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사람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일] 第118條 單獨行爲ニ付テハ其行爲ノ當時相手方カ代理人ト称スル者ノ代理權ナクシテ之ヲ爲スコトニ同意シ又ハ其代理權ヲ爭ハサリトキニ限り前5條ノ規定ヲ準用ス代理權ヲ有セサル者ニ對シ其同意ヲ得テ單獨行爲ヲ爲シタルトキ亦同シ

[류]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의 대리권이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김] 제136조 【단독 행위(單獨行爲)와 무권 대리】 단독 행위에는 그 행위 ∨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의 대리권이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동의를 얻어 단독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다

【순】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말하는 사람의 대리권이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을 때에만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다.

【해】 ‘칭하는’는 ‘말하는’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 제 4 절 무효와 취소(無效와 取消)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일] -없음

[류]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효력이 있는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부가 무효이다.

[김] 제137조 【법률 ∨ 행위의 일부 ∨ 무효】 법률 ∨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또는 ‘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순】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개정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효력이 있는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부가 무효이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일] -없음

[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김]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리라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순]**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일] 第119條 無効ノ行爲ハ追認ニ因リテ其効力ヲ生セス但当事者カ其無効ナルコトヲ知リテ追認ヲ爲シタルトキハ新ナル行爲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김]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순】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개] 제139조의2 (무권리자의 처분) ①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이 있다.

②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류] 제139조의2 (무권리자의 처분) ①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이 있다.

②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순】 제139조의2 [권리∨없는 사람의 처분] ①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은 효력이 있다.

②권리자가 권리가 없는 사람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해】 ‘無權利者’는 용어의 함축성이라는 점에서 순화대상으로 삼기에 무리가 있으나, 풀어쓰므로써 이해를 쉽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일] 第120條 ①能力ノ制限ニ因リテ取消シ得ヘキ行爲ハ制限能力者又ハ其代理人, 承届人若クハ同意ヲ爲スコトヲ得ル者ニ限り之ヲ取消スコトヲ得  
②詐欺又ハ強迫ニ因リテ取消シ得ベキ行爲ハ瑕疵アル意思表示ヲ爲シタル者又ハ其代理人若クハ承届人ニ限り之ヲ取消スコトヲ得

[류]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사기나 강박(強迫)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김]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그 승계인에 한한다.

【순】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사기나 협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일] 第121條 取消シタル行爲ハ初ヨリ無効ナリシモノト看做ス但制限能力者ハ其行爲ニ因リテ現ニ利益ヲ受クル限度ニ於テ償還ノ義務ヲ負フ

[류]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김]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순】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일] 第123條 取消シ得ヘキ行爲ノ相手方カ確定セル場合ニ於テ其取消又ハ追認ハ相手方ニ對スル意思表示依リテ之ヲ爲ス

[류]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김]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한다.

【순】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122條 取消シ得ヘキ行爲ハ第120條ニ掲ケタル者カ之ヲ追認シタルトキハ初ヨリ有効ナリシモノト看做ス但第三者ノ權利ヲ害スルコトヲ得ス  
第123條 取消シ得ヘキ行爲ノ相手方カ確定セル場合ニ於テ其取消又ハ追認ハ相手方ニ對スル意思表示依リテ之ヲ爲ス

[류]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사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사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앞∨조의 규정은 앞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사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124條 ①追認ハ取消ノ原因タル情況ノ止ミタル後之ヲ爲スニ非サレハ其効ナシ

第124條 ③前2項ノ規定ハ法定代理人又ハ制限能力者ノ保佐人若クハ補助人カ追認ヲ爲ス場合ニハ之ヲ適用セス

[류]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앞항의 규정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계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일] 第125條 前條ノ規定ニ依リ追認ヲ爲スコトヲ得ル時ヨリ後取消シ得ヘキ行爲ニ付キ左ノ事實アリタルトキハ追認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但異議ヲ留メ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1. 全部又ハ一部ノ履行
2. 履行ノ請求
3. 更改
4. 擔保ノ供
5. 取消シ得ヘキ行爲ニ因リテ取得シタル權利ノ全部又ハ一部ノ讓渡
6. 強制執行

[류]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更改)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김] 제145조 【법정 추인(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앞 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경우(또는 ‘보류하였을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更改)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 집행(強制執行)

【순】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履行)
2. 이행의 청구
3. 경개(更改)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強制執行)

【해】 ‘경개’는 법률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 第126條 取消權ハ追認ヲ爲スコトヲ得ル時ヨリ5年間之ヲ行ハサルトキハ時効ニ因リテ消滅ス行爲ノ時ヨリ20年ヲ經過シタルトキ亦同シ

[류]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김]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순】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 5 절 조건과 기한(條件과 期限)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일] 第127條 ①停止條件附法律行爲ハ條件成就ノ時ヨリ其効力ヲ生ス

②解除條件附法律行爲ハ條件成就ノ時ヨリ其効力ヲ失フ

③当事者カ條件成就ノ効果ヲ其成就以前ニ遡ラシムル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其意思ニ從フ

[류]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김]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 조건(停止條件)이 ∨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또는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또는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조건 성취 시점 이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순】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停止條件)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解除條件)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일] 第128條 條件附法律行爲ノ各當事者ハ條件ノ成否未定ノ間ニ於テ條件ノ成就ニ因リ其行爲ヨリ生スヘキ相手方ノ利益ヲ害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48조 (조건이 있는 권리의 침해금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김]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순]** 제148조 [조건이 있는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해]** ‘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있는 권리’로 풀어쓰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일] 第129條 條件ノ成否未定ノ間ニ於ケル當事者ノ權利義務ハ一般ノ規定ニ從ヒ之ヲ處分, 相續, 保存又ハ擔保スルコトヲ得

[류] 제149조 (조건이 있는 권리의 처분 등)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김]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순]** 제149조 [조건이 있는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일] 第130條 條件ノ成就ニ因リテ不利益ヲ受クヘキ當事者カ故意ニ其條件ノ成就ヲ妨ケタルトキハ相手方ハ其條件ヲ成就シタルモノト看做スコトヲ得

-제2항 없음

[류]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反信義行爲) ①조건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조건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조건을 이루어지게 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김]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反信義行爲)】

①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당할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게(또는 ‘-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게(또는 ‘-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또는 ‘시켰을 때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순】 제150조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에 대한 신의위반행위]

①조건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조건이 성취를 방해하였을 때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 第132條 不法ノ條件ヲ附シタル法律行爲ハ無効トス不法行爲ヲ爲ササルヲ以テ條件トスルモノ亦同シ

第131條 條件カ法律行爲ノ當時既ニ成就セル場合ニ於テ其條件カ停止條件ナルトキハ其法律行爲ハ無條件トシ解除條件ナルトキハ無効トス

第131條 ②條件ノ不成就カ法律行爲ノ當時既ニ確定セル場合ニ於テ其條件カ停止條件ナルトキハ其法律行爲ハ無効トシ解除條件ナルトキハ無條件トス

[류] 제151조 (불법조건, 既成條件)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김]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법률 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 것일 때(또는 ‘-를 위반한 것일 때’)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③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조건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순] 제151조 [불법조건(不法條件)과 기성조건(既成條件)]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된 것일 때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일] 第135條 ①法律行爲ニ始期ヲ附シタルトキハ其法律行爲ノ履行ハ期限ノ到來スルマテ之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②法律行爲ニ終期ヲ附シタルトキハ其法律行爲ノ効力ハ期限ノ到來シタル時ニ於テ消滅ス

[류]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始期)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終期)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김] 제152조 【기한이 닳쳐옴의 효과】 ①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닳쳐온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효력 종료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닳쳐온 시점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순】 제152조 [기한도래(期限到來)의 효과] ①시기(始期)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終期)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 ‘기한’과 ‘도래’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일] 第136條 ①期限ハ債務者ノ利益ノ爲メニ定メタルモノト推定ス

②期限ノ利益ハ之ヲ抛棄スルコトヲ得但之カ爲メニ相手方ノ利益ヲ害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김]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순**】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154조 (期限附權利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된다.

[김]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이 있는 법률 행위에 준용한다.

【**순**】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된다.

## 제 6 장 기 간(期間)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일] 第138條 期間ノ計算法ハ法令, 裁判上ノ命令又ハ法律行爲ニ別段ノ定アル場合ヲ除ク外本章ノ規定ニ從フ

[류] 제155조 (이 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

[김] 제155조 **【제6장의 적용 ∨ 범위】** 기간에 대한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 행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순】** 제155조 [이 장(章)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일] 第139條 期間ヲ定ムルニ時ヲ以テシタルトキハ即時ヨリ之ヲ起算ス

[류]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김]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起算點)】**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시, 분, 초부터 기산한다.

**【순】** 제156조 [기간의 계산시점(計算時點)] 기간을 시·분·초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계산한다.

**【해】** ‘기산점’은 ‘계산시점’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명확할 것으로 생각됨.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140條 期間ヲ定ムルニ日, 週, 月又ハ年ヲ以テシタルトキハ期間ノ  
初日ハ之ヲ算入セス但 其期間カ午前零時ヨリ始マ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  
에는 기간의 초일(初日)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  
하였을 때에는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자정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157조 [기간의 계산시점] 기간을 일(日)·주(週)·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자정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 ‘초일’은 ‘첫날’인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산입’은 ‘계산에 넣음’으로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일] -없음

[류]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김]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계산에  
넣는다.

【**순**】 제158조 [나이의 계산시점]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태어난 날을 계  
산에 넣는다.

【**해**】 법문을 풀어씀으로써 보다 이해의 쉽게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일] 第141條 前條ノ場合ニ於テハ期間ノ末日ノ終了ヲ以テ期間ノ滿了トス

[류]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  
에는 기간말일(末日)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기간▽끝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순】 제159조 [기간이 끝나는 시점] 기간을 일(日)·주(週)·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끝날의 종료를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해】 ‘만료점’은 ‘끝나는 시점’으로, ‘말일’은 ‘끝날’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일] 第143條 ①期間ヲ定ムルニ週, 月又ハ年ヲ以テシタルトキハ曆ニ從ヒテ之ヲ算ス

②週, 月又ハ年ノ始ヨリ期間ヲ起算セサルトキハ其期間ハ最後ノ週, 月又ハ年ニ於テ其起算日ニ滿了スル日ノ前日ヲ以テ滿了ス但月又ハ年ヲ以テ期間ヲ定メタル場合ニ於テ最後ノ月ニ 日ナキトキハ其月ノ末日ヲ以テ滿期日トス

[류] 제160조 (曆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된다.

③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末日)에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제160조 【달력에 따른 계산】 ①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또는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앞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③기간을 월이나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끝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순】** 제160조 [달력에 따른 계산] ①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②주·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월 또는 년에서 그 계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을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③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끝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끝날을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해】** ‘歷’은 ‘달력’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기산’은 ‘계산’으로 순화하여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말일’은 ‘끝날’인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보다 범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일] 第142條 期間ノ末日カ大祭日, 日曜日其他ノ休日ニ当タルトキハ其日ニ取引ヲ爲ササル慣習アル場合ニ限り期間ハ其翌日ヲ以テ滿了ス

**【류】**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末日)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 만료된다

**【김】**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끝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된다.

**【순】**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이 끝나는 시점] 기간의 끝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은 그 다음 날을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해】** ‘익일’은 ‘다음 날’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제 7 장 소멸시효(消滅時效)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 第167條 ①債權ハ10年間之ヲ行ハサルニ因リテ消滅ス

②債權又ハ所有權ニ非サル財産權ハ20年間之ヲ行ハサルニ因リテ消滅ス

[류]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김]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 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②채권과 소유권 ∨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순**】 제162조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①채권은 10년 ∨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채권과 소유권 ∨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 ‘間’은 ‘동안’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 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일] 第169條 年又ハ之ヨリ短キ時期ヲ以テ定メタル金錢其他ノ物ノ給付ヲ目的トスル債權ハ5年間之ヲ行ハサルニ因リテ消滅ス

第170條 左ニ掲ケタル債權ハ3年間之ヲ行ハサルニ因リテ消滅ス

1. 師, 産婆及ヒ藥劑師ノ治術, 勤勞及ヒ調劑ニ關スル債權
2. 技師, 棟梁及ヒ請負人ノ工事ニ關スル債權但此時効ハ其負擔シタル工事終了ノ時ヨリ之ヲ起算ス

第171條 弁護士又ハ弁護士法人ハ事件終了ノ時ヨリ公証人ハ其職務執行ノ時ヨリ3年ヲ経過シタルトキハ其職務ニ關シテ受取りタル書類ニ付キ其責ヲ免ル

第172條 弁護士, 弁護士法人及ヒ公証人ノ職務ニ關スル債權ハ其原因タル事件終了ノ時ヨリ2年間之ヲ行ハサルニ因リテ消滅ス但其事件中ノ各事項終了ノ時ヨリ5年ヲ経過シタルトキハ右ノ期間内ト雖モ其事項ニ關スル債權ハ消滅ス

第173條 左ニ掲ケタル債權ハ2年間之ヲ行ハサルニ因リテ消滅ス

1. 生産者, 卸賣商人及ヒ小賣商人カ賣却シタル産物及ヒ商品ノ代
2. 居職人及ヒ製造人ノ仕事ニ關スル債權
3. 生徒及ヒ習業者ノ教育, 衣食及ヒ止宿ノ代料ニ關スル校主, 塾主, 教師及ヒ師匠ノ債權

[류]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밖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사람, 기사(技師) 그밖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및 관세사에 대해 직무상 보관시킨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및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김]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 시효(短期消滅時效)】 다음 각 V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 밖의 1년 V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와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사람, 기사, 그 밖의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가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순**】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V호의 채권은 3년 V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그 밖의 1년 V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都給)을 받은 사람, 기사(技士), 그 밖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에게 직무상 보관 시킨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일] 第174條 左ニ掲ケタル債權ハ1年間之ヲ行ハサルニ因リテ消滅ス

1. 月又ハ之ヨリ短キ時期ヲ以テ定メタル雇人ノ給料
2. 勞力者及ヒ芸人ノ賃金並ニ其供給シタル物ノ代價
3. 運送賃
4. 旅店, 料理店, 貸席及ヒ娛遊場ノ宿泊料, 飲食料, 席料, 木戶錢, 消費物代價並ニ立替金
5. 動産ノ損料

[류]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替當金)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葬具) 그밖의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勞役人),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衣食) 및 유숙에 관한 교주(校主), 교사의 채권

[김] 제164조 【1년의 단기 소멸 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그 밖의 동산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vee$ 채권
4. 학생과 수업자의 교육, 의식과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순]**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vee$ 호의 채권은 1년 $\vee$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여관·음식점·대관(貸館)·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관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替當金)의 채권
2. 의복·침구·장구(葬具)·그 밖의 동산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
3.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교사의 교육과 의식(衣食) 및 기숙(寄宿)에 관한 학교설립경영자, 교사의 채권

**[해]** 전체적으로 법문의 의미를 보다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貸席’은 ‘대관’으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업자’는 ‘교사’로, ‘유숙’은 ‘기숙’으로, ‘교주, 숙주’는 ‘학교설립경영자’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일본민법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언어와 용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조문이라 생각됨. 또한 ‘교사’는 ‘교장과 교사’로 법문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며, ‘채당금’은 적절한 순화어로 대체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174條ノ2 確定判決ニ依リテ確定シタル權利ハ10年ヨリ短キ時効期間ノ定アルモノト雖モ其時効期間ハ之ヲ10年トス裁判上ノ和解, 調停其他確定判決ト同一ノ効力ヲ有スルモノニ依リテ確定シタル權利ニ付キ亦同シ

[류]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제165조 【판결 ∨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 ①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 ∨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앞항과 같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판결 ∨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다쳐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165조 [판결 ∨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조정·그 밖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일] 第166條 消滅時効ハ權利ヲ行使スルコトヲ得ル時ヨリ進行ス

-제2항 없음

[류]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②부작위(不作爲)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김] 제166조 【소멸 시효의 기산점】 ①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위반 $\vee$ 행위를 한 시점부터 진행된다.

【**순**】 제166조 [소멸시효의 계산시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일] 第144條 時効ノ効力ハ其起算日ニ遡ル

[류]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김] 제167조 【소멸 시효의 소급효(遡及效)】 소멸 시효는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순**】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遡及效)] 소멸시효는 그 계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일] 第147條 時効ハ左ノ事由ニ因リテ中斷ス

1. 請求
2. 差押, 仮差押又ハ仮處分
3. 承認

[류]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본안(本案)소송에 응하는 경우 그밖의 재판상 권리행사도 이에 준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김] 제168조 【소멸 시효의 중단∨사유】 소멸 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임시 압류, 임시 처분
3. 승인

【**순**】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개정안 : 본안(本案)소송에 응하는 경우, 그∨밖의 재판상 권리행사도 이에 준한다.)
2. 압류 또는 임시압류, 임시처분
3. 승인

【**해**】 ‘假’는 ‘임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일] 第148條 前條ノ時効中斷ハ当事者及ヒ其承屈人ノ間ニ於テノミ其効力ヲ有ス

[류]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김] 제169조 【시효 중단(時效中斷)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순】 제169조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 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일] 第149條 裁判上ノ請求ハ訴ノ却下又ハ取下ノ場合ニ於テハ時効中斷ノ効力ヲ生セス

-제2항 없음

[류] 제170조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訴)의 각하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김]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 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却下),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앞항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나 임시 압류, 임시 처분을 하였을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순】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訴)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또는 취하(取下)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임시압류, 임시처분을 하였을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 ‘소송의 각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소의 각하’로 정비되었음.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일] 第152條 破産手續參加ハ債權者カ之ヲ取消シ又ハ其請求カ却下セラレタルトキハ時効中斷ノ効力ヲ生セス

[류]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검]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 중단】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거나 파산∨절차∨참가 청구가 각하된 경우(또는 ‘각하되었을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순**】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일] 第150條 支拂督促ハ債權者カ法定ノ期間内ニ假執行ノ宣言ノ申立ヲ爲ササルニ因リ其効力ヲ失フトキハ時効中斷ノ効力ヲ生セス

[류]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검] 제172조 【지급 명령(支給命令)과 시효 중단】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지급 명령 임시 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지급명령’에서 ‘가집행신청(假執行申請)’이라는 제도는 1990년 1월 13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폐지되었음. 따라서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제172조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순**】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임시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안: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일] 第151條 和解ノ爲メニスル呼出ハ相手方カ出頭セス又ハ和解ノ調ハサルトキハ1个月内ニ訴ヲ提起スルニ非サレハ時効中斷ノ効力ヲ生セス任意出頭ノ場合ニ於テ和解ノ調ハサルトキ亦同シ

[류]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1개월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도 그러하다.

[김]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1개월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렇다.

【순】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에 따른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개월내에 소(訴)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일] 第153條 催告ハ6个月内ニ裁判上ノ請求, 和解ノ爲メニスル呼出若クハ任意出頭, 破産手續參加, 差押, 仮差押又ハ仮處分ヲ爲スニ非サレハ時効中斷ノ効力ヲ生セス

[류]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김] 제174조 【최고와 시효 중단】 재촉하는 통지는 6개월 $\vee$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vee$ 절차 $\vee$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vee$ 출석, 압류나 임시 압류, 임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순】 제174조 [통지와 시효중단] 통지는 6개월 $\vee$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임시압류, 임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일] 第154條 差押, 仮差押及ヒ仮處分ハ權利者ノ請求ニ因リ又ハ法律ノ規定ニ從ハサルニ因リテ取消サレタルトキハ時効中斷ノ効力ヲ生セス

[류]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김] 제175조 【압류, 임시 압류, 임시 처분과 시효 중단】 권리자의 청구로 말미암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류, 임시 압류 및 임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순】 제175조 [압류·임시압류·임시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임시압류 및 임시처분은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일] 第155條 差押，仮差押及ヒ仮處分ハ時効ノ利益ヲ受クル者ニ對シテ之ヲ爲ササルトキハ之ヲ其者ニ通知シタル後ニ非サレハ時効中斷ノ効力ヲ生セス

[류]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김] 제176조 【압류, 임시 압류, 임시 처분과 시효 중단】 소멸 시효 완료의 이익을 얻을 사람에게 대하여 압류, 임시 압류, 임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연대 보증인, 물상 보증인 등에 대한 압류, 임시 압류, 임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멸 시효 완료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순】 제176조 [압류·임시압류·임시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임시압류 및 임시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하지 않을 때에는 받을 사람에게 통지한 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 第156條 時効中斷ノ効力ヲ生スヘキ承認ヲ爲スニハ相手方ノ權利ニ付キ處分ノ能力又ハ權限アルコトヲ要セス

[류]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 제177조 【승인과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도 된다.

【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일] 第157條 ①中斷シタル時効ハ其中斷ノ事由ノ終了シタル時ヨリ更ニ其進行ヲ始ム

②裁判上ノ請求ニ因リテ中斷シタル時効ハ裁判ノ確定シタル時ヨリ更ニ其進行ヲ始ム

[류] 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될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김]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또는 ‘되었을 때에는’)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또는 ‘종료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앞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시점(또는 ‘확정되었을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순]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났을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해] ‘종료’는 문맥상 ‘끝남’으로 순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일] 第158條 時効ノ期間滿了前 6 箇月内ニ於テ未成年者又ハ成年被後見人カ法定代理人ヲ有セサリシトキハ其者カ能力者ト爲リ又ハ法定代理人カ就職シタル時ヨリ 6 箇月内ハ之ニ對シテ時 完成セス

[류]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김]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 시효의 기간∨만료∨전 6개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그가 능력이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하였을 때부터 6개월∨내에는 시효가 완료되지 않는다.

[순]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그가 능력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하였을 때부터 6개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이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일] 第159條 未成年者又ハ成年被後見人カ其財産ヲ管理スル父, 母又ハ後見人ニ對シテ有スル權利ニ付テハ其者カ能力者ト爲リ又ハ後任ノ法定代理人カ就職シタル時ヨリ6箇月内ハ時効完成セス

第159條ノ2 夫婦ノ一方カ他ノ一方ニ對シテ有スル權利ニ付テハ婚姻解消ノ時ヨリ6个月内ハ時効完成セス

[류]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이 되었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김]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이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시점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 시효가 완료되지 않는다.

②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 시효가 완료되지 않는다.

【순】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父)·모(母)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이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일] 第160條 相續財産ニ關シテハ相續人ノ確定シ, 管理人ノ選任セラレ又ハ破産ノ宣告アリタル時ヨリ 6个月内ハ時 完成セス

[류]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김]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 시효가 완료되지 않는다.

**[순]**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때부터 6개월 ∨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일] 第161條 時効ノ期間滿了ノ時ニ當タリ天災其他避クヘカラサル事變ノ爲メ時効ヲ中斷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其妨碍ノ止ミタル時ヨリ2週間内ハ時効完成セス

**[류]** 제182조 (天災, 그밖의 事變과 시효정지) 천재, 그밖의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김]** 제182조 【천재, 그 밖의 사변과 시효 ∨ 정지】 천재, 그 밖의 사변으로 소멸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또는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 내에는 시효가 완료되지 않는다.

**[순]** 제182조 [천재지변(天災地變)과 시효정지] 천재지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1개월 ∨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해]** ‘천재 기타 사변’은 ‘천재지변’으로 용어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일] -없음

**[류]**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김]**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 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순]**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 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일] 第146條 時効ノ利益ハ予メ之ヲ拋棄スルコトヲ得ス

-제2항 없음

[류]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등)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

[김] 제184조 **【시효의 이익 포기 등】** ①소멸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 하지 못한다.

②소멸 시효는 법률 ∨ 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순]**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등]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排除)·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 2 편 물 권(物權)

### 제 1 장 총 칙(總則)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일] 第175條 物權ハ本法其他ノ法律ニ定ムルモノノ外之ヲ創設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김]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순**】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177條 不動産ニ關スル物權ノ得喪及ヒ變更ハ登記法ノ定ムル所ニ從ヒ其登記ヲ爲スニ非サレハ之ヲ以テ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김]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순**】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득실변경’은 ‘변동’으로 순화하는 것이 조문명에 나타나는 용어의 통일성에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187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여야 처분할 수 있다.

[김] 제187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취득】 상속, 공용 징수(公用徵收),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순】 제187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공용 징수(公用徵收)·판결·경매·그 밖의 법률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여야 처분할 수 있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개] 제187조의2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류] 제187조의2 (임시등기의 효력) 임시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그 임시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순】 제187조의2 [임시등기의 효력] 임시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의 처분은 그 임시등기에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178條 動産ニ關スル物權ノ讓渡ハ其動産ノ引渡ア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第182條 ①占有權ノ讓渡ハ占有物ノ引渡ニ依リテ之ヲ爲ス

②讓受人又ハ其代理人カ現ニ占有物ヲ所持スル場合ニ於テハ占有權ノ讓渡ハ 事者ノ意思表示ノミニ依リテ之ヲ爲スコトヲ得

[류]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簡易引渡)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김]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 인도(簡易引渡)】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讓受人)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簡易引渡)] ①동산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讓受人)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간이인도’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일] 第183條 代理人カ自己ノ占有物ヲ爾後本人ノ爲メニ占有スヘキ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本人ハ之ニ因リテ占有權ヲ取得ス

[류] 제189조 (占有改定)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김] 제189조 【점유 개정(占有改定)】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할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순】 제189조 [점유개정(占有改定)] 동산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할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해】 ‘점유개정’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일] 第184條 代理人ニ依リテ占有ヲ爲ス場合ニ於テ本人カ其代理人ニ對シ爾後第三者ノ爲メニ其物ヲ占有スヘキ旨ヲ命シ第三者之ヲ承諾シタルトキハ其第三者ハ占有權ヲ取得ス

[류]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순】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179條 ①同一物ニ付キ所有權及ヒ他ノ物權カ同一人ニ歸シタルトキハ其物權ハ消滅ス但其物又ハ其物權カ第三者ノ權利ノ目的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所有權以外ノ物權及ヒ之ヲ目的トスル他ノ權利カ同一人ニ歸シタルトキハ其權利ハ消滅ス此場合ニ於テハ前項但書ノ規定ヲ準用ス

③前2項ノ規定ハ占有權ニハ之ヲ適用セス

[류] 제191조 (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191조 【혼동으로 말미암은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에 다른 물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또는 ‘될 때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②앞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191조 [혼동(混同)에 따른 물권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에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 ‘혼동’은 법률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제 2 장 점유권(占有權)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180條 占有權ハ自己ノ爲メニスル意思ヲ以テ物ヲ所持スルニ因リテ之ヲ取得ス

第203條 占有權ハ占有者カ占有ノ意思ヲ拋棄シ又ハ占有物ノ所持ヲ失フニ因リテ消滅ス但占有者カ占有回收ノ訴ヲ提起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순**】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일] -없음

[류]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 된다.

[김] 제193조 【상속으로 말미암은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순**】 제193조 [상속에 따른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일] 第181條 占有權ハ代理人ニ依リテ之ヲ取得スルコトヲ得

[류]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밖의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김]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 대차(使用貸借),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순**】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일] -없음

[류]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家事)나 영업 그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다른 사람만이 점유자로 된다.

[김] 제195조 【점유∨보조자】 타인과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또는 ‘지배할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순**】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家事)나 영업 그 밖에 유사한 관계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만이 점유자가 된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182條 ①占有權ノ讓渡ハ占有物ノ引渡ニ依リテ之ヲ爲ス

第183條 代理人カ自己ノ占有物ヲ爾後本人ノ爲メニ占有スヘキ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本人ハ之ニ因リテ占有權ヲ取得ス

第184條 代理人ニ依リテ占有ヲ爲ス場合ニ於テ本人カ其代理人ニ對シ爾後第三者ノ爲メニ其物ヲ占有スヘキ旨ヲ命シ第三者之ヲ承諾シタルトキハ其第三者ハ占有權ヲ取得ス

[류]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②앞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일] 第186條 ①占有者ハ所有ノ意思ヲ以テ善意, 平穩且公然ニ占有ヲ爲  
スモノト推定ス

第189條 ②善意ノ占有者カ本權ノ訴ニ於テ敗訴シタルトキハ其起訴ノ時  
ヨリ惡意ノ占有者ト看做ス

[류] 제197조 (점유의 형태) ①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公然)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김] 제197조 【점유의 형태】 ①점유자는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또는 ‘드러내 놓고’) 물건을 점유한 것으  
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본권(本權)에 관한 소  
에 패소하였을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순】 제197조 [점유의 형태(形態)] ①점유자는 소유할 의사로 선의·평  
온 및 공연(公然)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에 패소하였을 때에는 그 소  
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개정안: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  
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 ‘선의, 평온 및 공공연하게’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제2항이 신설되고, 제2항이 제3항으로 규정되  
어 있음.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 第186條 ②前後兩時ニ於テ占有ヲ爲シタル 據アルトキハ占有ハ其間  
續シタルモノト推定ス

[류]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前後)∨양 시점(또는 ‘앞뒤 두  
시기’)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 ‘전후양시’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  
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일] 第187條 ①占有者ノ承繼人ハ其選擇ニ從ヒ自己ノ占有ノミヲ主張シ  
又ハ自己ノ占有ニ前主ノ占有ヲ併セテ之ヲ主張スルコトヲ得

②前主ノ占有ヲ併セテ主張スル場合ニ於テハ其瑕疵モ亦之ヲ承繼ス

[류] 제199조 (점유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  
장할 수 있다.

②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김] 제199조 【점유에 대한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  
한다.

【순】 제199조 [점유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해】 ‘승계’는 ‘계승’으로 순화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 第188條 占有者カ占有物ノ上ニ行使スル權利ハ之ヲ適法ニ有スルモノト推定ス

[류] 제200조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200조 【권리에 대한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200조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일] 第189條 ①善意ノ占有者ハ占有物ヨリ生スル果實ヲ取得ス

第190條 ①惡意ノ占有者ハ果實ヲ返還シ且其既ニ消費シ、過失ニ因リテ毀損シ又ハ收取ヲ怠リタル果實ノ代價ヲ償還スル義務ヲ負フ

②前項ノ規定ハ強暴又ハ隱秘ニ因ル占有者ニ之ヲ準用ス

[류]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代價)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폭력에 의하거나 몰래 점유한 사람에게 준용된다.

[김] 제201조 【점유자와 이득】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이득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득을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하였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득의 대가(代價)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앞항의 규정은 점유물을 폭력으로 점유한 사람이나 몰래 점유한 사람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201조 [점유자와 이익]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이익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대가(代價)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폭력이나 몰래 숨겨 점유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해] ‘은비’는 ‘몰래 숨김’으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191條 占有物カ占有者ノ責ニ歸スヘキ事由ニ因リテ滅失又ハ毀損シタルトキハ惡意ノ占有者ハ其回復者ニ對シ其損害ノ全部ヲ賠償スル義務ヲ負ヒ善意ノ占有者ハ其滅失又ハ毀損ニ因リテ現ニ利益ヲ受クル限度ニ於テ賠償ヲ爲ス義務ヲ負フ但所有ノ意思ナキ占有者ハ其善意ナルトキト雖モ全部ノ賠償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回復者)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일] 第196條 ①占有者カ占有物ヲ返還スル場合ニ於テハ其物ノ保存ノ爲メニ費シタル金額其他ノ必要費ヲ回復者ヨリ償還セシムルコトヲ得但占有者カ果實ヲ取得シタル場合ニ於テハ通常ノ必要費ハ其負担ニ歸ス

第196條 ②占有者カ占有物ノ改良ノ爲メニ費シタル金額其他ノ有益費ニ付テハ其價格ノ增加カ現存スル場合ニ限り回復者ノ選擇ニ從ヒ其費シタル金額又ハ増価額ヲ償還セシムルコトヲ得但惡意ノ占有者ニ對シテハ裁判所ハ回復者ノ請求ニ因リ之ニ相当ノ期限ヲ許与スルコトヲ得

[류]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밖의 필요

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값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김]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앞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순]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해] ‘허여’는 ‘허락’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 第200條 ①占有者カ其占有ヲ奪ハレタルトキハ占有回收ノ訴ニ依リ  
其物ノ返還及ヒ損害ノ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占有回收ノ訴ハ侵奪者ノ特定承繼人ニ對シテ之ヲ提起スルコトヲ得ス  
但其承繼人カ侵奪ノ事實ヲ知リ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김]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을 때에  
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特別承繼人)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순】 제204조 [점유의 회수(回收)] ①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겼을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권은 빼앗은 사람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빼앗긴 날로부터 1년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 ‘침탈’과 ‘침탈자’는 ‘빼앗음’과 ‘빼앗은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개] 제204조의2 (점유물수거의 인용) ①물건이 점유자의 지배를 벗  
어나 타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있는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물건의 점유자가 이를  
수거하는 것을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수

거로 인하여 그 점유 또는 생활의 안온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수거를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수거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류] 제204조의2 (점유물수거의 認容) ①물건이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있는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성립하지 않는 한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물건의 점유자가 이를 수거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수거로 인하여 점유 또는 생활의 평온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수거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점유자는 수거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04조의2 [점유물수거의 인용(認容)] ①물건이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점유가 성립하지 않는 한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물건의 점유자가 이를 수거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수거로 점유 또는 생활의 안온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수거를 거절할 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점유자는 수거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198條 占有者カ其占有ヲ妨害セラレタルトキハ占有保持ノ訴ニ依リ其妨害ノ停止及ヒ損害ノ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

第201條 ①占有保持ノ訴ハ妨害ノ存スル間又ハ其止ミタル後1年内ニ之ヲ提起スルコトヲ要ス 但工事ニ因リ占有物ニ損害ヲ生シタル場合ニ於テ

其工事着手ノ時ヨリ 1年ヲ経過シ又ハ其工事ノ竣成シタルトキハ之ヲ提起スルコトヲ得ス

[류] 제205조 (점유의 保有)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김]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점유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199條 占有者カ其占有ヲ妨害セラルル虞アルトキハ占有保全ノ訴ニ依リ其妨害ノ予防又ハ損害賠償ノ担保ヲ請求スルコトヲ得

第201條 ②占有保全ノ訴ハ妨害ノ危險ノ存スル間ハ之ヲ提起スルコトヲ得但工事ニ因リ占有物ニ損害ヲ生スル虞アルトキハ前項但書ノ規定ヲ準用ス

[류] 제206조 (점유의 保全)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하는 데 방해받을(또는 ‘점유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점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점유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앞 ∨ 조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197條 占有者ハ後5條ノ規定ニ從ヒ占有ノ訴ヲ提起スルコトヲ得 他人ノ爲メニ占有ヲ爲ス者亦同シ

-제2항 없음

[류]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제204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07조 【간접 ∨ 점유의 보호】 ①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따른 간접 ∨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않을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따른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일] 第202條 ①占有ノ訴ハ本權ノ訴ト互ニ相妨クルコトナシ

②占有ノ訴ハ本權ニ關スル理由ニ基キテ之ヲ裁判スルコトヲ得ス

[류]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의한 소와 본권에 의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점유권에 의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김] 제208조 **【점유의 소(訴)와 본권(本權)의 소(訴)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訴)와 본권에 기인한 소(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訴)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순]** 제208조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초한 소(訴)와 본권에 기초한 소(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점유권에 기초한 소(訴)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해]** 이 규정의 ‘基因’은 ‘기초’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209조 (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09조 (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自力)으로써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그 점유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김] 제209조 【자력 구제(自力救濟)】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不正)하게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 점유자는 침탈 ∨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 점유자는 현장에서 점유물을 탈환하거나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순**】 제209조 [자력구제(自力救濟)]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을 빼앗겼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 점유자는 빼앗긴 ∨ 후 바로 가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빼앗아 올 수 있고, 동산일 때에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이를 빼앗아 올 수 있다.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205條 本章ノ規定ハ自己ノ爲メニスル意思ヲ以テ財産權ノ行使ヲ爲ス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210조 (準占有) 이 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210조 【준점유】 이 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210조 [준점유(準占有)] 이 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 3 장 소유권(所有權)

#### 제 1 절 소유권의 한계(所有權의 限界)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일] 第206條 所有者ハ法令ノ制限内ニ於テ自由ニ其所有物ノ使用、收益及ヒ處分ヲ爲ス權利ヲ有ス

[류]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김]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순**】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일] 第207條 土地ノ所有權ハ法令ノ制限内ニ於テ其土地ノ上下ニ及フ

[류]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김]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순**】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김]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순**】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14조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없는 상태로 환원하거나 방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일] 第208條 削除

[류]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共用)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共有)로 추정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그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값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김] 제215조 【건물의 구분 소유(區分所有)】 ①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였을 때에 건물과 그 부속물 ∨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 ∨ 부분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순**】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區分所有)] ①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였을 때에 건물과 그 부속물 ∨ 중 공동사용하는 부분은 공유(公有)로 추정한다.

②공동사용 ∨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그 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가격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해**】 ‘공용’은 일반화된 용어일 수도 있으나 보다 정확하게 ‘공동사용’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가액’은 ‘가격’으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됨.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209條 ①土地ノ所有者ハ疆界又ハ其近傍ニ於テ牆壁若クハ建物ヲ築造シ又ハ之ヲ修繕スル爲メ必要ナル範圍内ニ於テ隣地ノ使用ヲ請求スルコトヲ得但隣人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其住家ニ立入ルコトヲ得ス  
②前項ノ場合ニ於テ隣人カ損害ヲ受ケタルトキハ其償金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216조 (隣地使用請求權)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住居)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16조 【이웃 토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사람에게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16조 [이웃토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住居)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 ‘隣地’는 ‘이웃토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일] -없음

[류] 제217조 (생활방해의 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熱氣體), 액체, 음향, 진동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토지의 점유자도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前文)에서 정하는 의무를 진다.

②이웃 거주자는 제1항의 사태가 그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③이웃 거주자는 생활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17조 【매연∨등에 따른 이웃 토지의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앞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또는 ‘적당하면’) 이를 참고 견딜(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순】 제217조 [매연∨등에 따른 이웃 토지의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熱氣體)·액체·음향·진동·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제1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개정안: 제217조 (생활방해의 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熱氣體)·액체·음향·진동·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토지의 점유자도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前文)에서 정하는 의무를 진다.

③이웃 거주자는 생활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 ‘조처’는 ‘조치’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일] -없음

[류] 제218조 (수도 등의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필요한 수도, 송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거나 그러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김] 제218조 【수도∨등의 설치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송수관, 가스관, 전선∨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앞항에 따른 설치를 한 후에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순】 제218조 [수도∨등의 설치권(設置權)]** ①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필요한 수도, 송수관, 가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있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른 토지 소유자는 그 설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설치변경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해】** 이 조문에 있어서 ‘시설’은 ‘설치’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일] 第210條** 或土地カ他ノ土地ニ圍繞セラレテ公路ニ通セサルトキハ其土地ノ所有者ハ公路ニ至ル爲メ圍繞地ヲ通行スルコトヲ得

**第211條** ①前條ノ場合ニ於テ通行ノ場所及ヒ方法ハ通行權ヲ有スル者ノ爲メニ必要ニシテ且圍繞地ノ爲メニ損害最モ少キモノヲ選フコトヲ要ス

②通行權ヲ有スル者ハ必要アルトキハ通路ヲ開設スルコトヲ得

**第212條** 通行權ヲ有スル者ハ通行地ノ損害ニ對シテ償金ヲ拂フコトヲ要ス但通路開設ノ爲メニ生シタル損害ニ對スルモノヲ除ク外1年毎ニ其償金ヲ拂フコトヲ得

[류]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행권자는 통행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김]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떤 토지와 공공 도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공 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순**】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213條 ①分割ニ因リ公路ニ通セサル土地ヲ生シタルトキハ其土地ノ所有者ハ公路ニ至ル爲メ他ノ分割者ノ所有地ノミヲ通行スル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償金ヲ拂フコトヲ要セス

②前項ノ規定ハ土地ノ所有者カ其土地ノ一部ヲ讓渡シ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말미암아 공공 도로로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공 도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앞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공로에 연결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일] 第214條 土地ノ所有者ハ隣地ヨリ水ノ自然ニ流レ來ルヲ妨クルコトヲ得ス

-제2항 없음

[류] 제221조 (自然流水의 承水義務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高地)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김] 제221조 【흘러내리는 물을 막지 않아야 할 의무와 그 물을 받을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높은 곳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웃 낮은 곳의 토지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낮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순] 제221조 (흐르는 물에 관한 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高地)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해]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적절한 순화정비가 필요한 용어라고 생각됨.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일] 第215條 水流カ事變ニ因リ低地ニ於テ阻塞シタルトキハ高地ノ所有者ハ自費ヲ以テ其疏通ニ必要ナル工事ヲ爲スコトヲ得

[류] 제222조 (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저지(低地)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高地) 소유자는 자비(自費)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김]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낮은 곳의 토지에서 막힌 경우에 높은 곳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순] 제222조 [물 흐름 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기비용으로 물 흐름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해】 ‘소통’은 ‘물 흐름’으로 순화하거나 적절한 대체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일】 第216條 甲地ニ於テ貯水、排水又ハ引水ノ爲メニ設ケタル工作物ノ破潰又ハ阻塞ニ因リテ乙地ニ損害ヲ及ホシ又ハ及ホス虞アルトキハ乙地ノ所有者ハ甲地ノ所有者ヲシテ修繕若クハ疏通ヲ爲サシメ又必要アルトキハ予防工事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류】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를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막힘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은 그 공작물의 보수, 막힌 곳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김】 제223조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대기 위한 공작물의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대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놓인 다른 토지의 소유자는 공작물의 보수, 막힌 것의 소통이나 손해 예방(또는 ‘손해 예방 공사’)에 필요한 청구를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순】 제223조 [물저장·물빼기·물대기를 위한 공작물]의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물저장·물빼기·물대기를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부서지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에 타인은 그 공작물을 보수하거나 물 흐름을 뚫거나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해】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순화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수, 배수, 인수’는 우리말로 하는 것이 순화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됨.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일] 第217條 前2條ノ場合ニ於テ費用ノ負擔ニ付キ別段ノ慣習アルトキハ其慣習ニ從フ

[류]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2조와 제23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김] 제224조 【관습에 따른 비용∨부담】 제222조, 제223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순】 제224조 [관습에 따른 비용부담] 제222조와 제23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일] 第218條 土地ノ所有者ハ直チニ雨水ヲ隣地ニ注瀉セシムヘキ屋根其他ノ工作物ヲ設クルコトヲ得ス

[류]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김] 제225조 【처마∨물(또는 ‘낙숫물’) 낙하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또는 ‘낙숫물’)이 이웃집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순】 제225조 [낙숫물에 대한 시설물 설치의무] 토지소유자는 낙숫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 ‘처마물’은 ‘낙숫물’이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법문의 전체적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성이 있음.

**제226조 (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유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일] 第220條 高地ノ所有者ハ浸水地ヲ乾カス爲メ又ハ家用若クハ農工業用ノ余水ヲ排泄スル爲メ公路、公流又ハ下水道ニ至ルマテ低地ニ水ヲ通過セシムルコトヲ得 但低地ノ爲メニ損害最モ少キ場所及ヒ方法ヲ選フコトヲ要ス

[류] 제226조 (남은 물의 소통권) ①고지(高地)소유자는 침수된 토지를 건조하거나 가정용 또는 농·공업용의 남은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公路), 공동의 유수(流水)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저지(低地)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김] 제226조 [남은 물의 V 소통권] ①높은 곳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침수지를 건조하거나 가정용, 농공업용의 남은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공공 도로, 공동의 유수(流水)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낮은 곳의 토지로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는 낮은 곳의 토지에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순] 제226조 [남은 물의 흐름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정용이나 농·공업용의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공로, 공공하천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저지로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 ‘유수소통권’은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일] 第221條 ①土地ノ所有者ハ其所有地ノ水ヲ通過セシムル爲メ高地又ハ低地ノ所有者カ設ケタル工作物ヲ使用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他人ノ工作物ヲ使用スル者ハ其利益ヲ受クル割合ニ応シテ工作物ノ設定及ヒ保存ノ費用ヲ分担スルコトヲ要ス

[류] 제227조 (流水用工作物の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김] 제227조 【유수용(流水用)∨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이웃의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앞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얻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순】 제227조 [배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얻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해】 ‘유수용’은 ‘배수용’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됨.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28조 (남은 물의 給與請求權) 토지소유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은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28조 【남은 물 ∨ 급여 ∨ 청구권】 토지 ∨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 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 ∨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에는 이웃 토지 ∨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은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28조 [남은 물 공급청구권] 토지소유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 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은 물의 공급을 청구 할 수 있다.

【해】 ‘여수급여청구권’은 ‘남은 물 공급청구권’으로 순화하는 것이 이해를 쉽게 하는 것이라 생각됨.

**제229조 (수류의 변경)**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일] 第219條 ① 溝渠其他ノ水流地ノ所有者ハ對岸ノ土地カ他人ノ所有ニ屬スルトキハ其水路又ハ幅員ヲ變スルコトヲ得ス

② 兩岸ノ土地カ水流地ノ所有者ニ屬スルトキハ其所有者ハ水路及ヒ幅員ヲ變スルコトヲ得 但下口ニ於テ自然ノ水路ニ復スルコトヲ要ス

③ 前2項ノ規定ニ異ナリタル慣習アルトキハ其慣習ニ從フ

[류] 제229조 (물의 흐름의 변경) ① 도랑 그밖의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는 건너편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물의 흐름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 기슭의 토지가 물이 흐르는 토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는 수로와 물의 흐름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김] 제229조 【물 흐름의 변경】 ①도랑이나 그 밖의 물 흐르는 땅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또는 ‘소유일 때에’) 그 물길을 변경하거나 물 흐름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 기슭의 토지가 물 흐르는 땅 ∨ 소유자의 것인 경우에(또는 ‘것일 때에’) 소유자는 물길을 변경하거나 물 흐름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물길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순】 제229조 [물 흐름의 변경] ①도랑, 그 밖의 물이 흐르는 땅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물길이나 흐름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 기슭의 토지가 물이 흐르는 토지소유자의 소유인 경우에 소유자는 물길과 흐름의 폭을 변경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물길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해】 법문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순화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 第222條 ①水流地ノ所有者ハ堰ヲ設クル需要アルトキハ其堰ヲ對岸ニ附著セシムルコトヲ得但之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ニ對シテ償金ヲ拂フコトヲ要ス

②對岸ノ所有者ハ水流地ノ一部カ其所有ニ屬スルトキハ右ノ堰ヲ使用スルコトヲ得但前條ノ規定ニ從ヒ費用ヲ分担スルコトヲ要ス

[류] 제230조 (독의 설치, 이용권) ①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독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독을 건너편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건너편 토지의 소유자는 물이 흐르는 토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독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김] 제230조 【독의 설치, 이용권】 ①물이 흐르는 땅의 소유자가 독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독을 건너편 기슭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건너편 기슭의 소유자는 물이 흐르는 땅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 (또는 ‘소유일 때’) 그 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독을 설치하고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순**] 제230조 [독의 설치와 이용권] ①물이 흐르는 토지소유자가 독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독을 건너편 기슭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건너편 기슭의 소유자는 물이 흐르는 토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 그 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독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해**] ‘堰’은 ‘독’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31조 (公有河川用水權)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 또는 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김] 제231조 【공유 $\vee$ 하천 $\vee$ 용수권】 ①공유 $\vee$ 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경영에 필요한 물을 이용하려면 타인이 물을

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물대기를 할 수 있다.

② 앞항의 물대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순】**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유하천의 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대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대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해】** ‘引水’는 ‘물대기’로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되며, 전체적인 법문의 이해를 위하여 보다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32조 (하류연안의 用水權保護) 제231조의 인수(引水)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이 방해받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앞 조의 물대기나 공작물로 말미암아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또는 ‘방해할 때에’)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1조의 물대기나 공작물로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에 물사용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 ‘용수’는 ‘물사용’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물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물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일] -없음

[류] 제233조 (用水權의 승계) 농업 또는 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水路) 그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前)소유자나 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를 승계한다.

[김]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업이나 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물길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한 사람이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별 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前) 소유자나 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순】 제233조 [물사용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水路),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물사용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물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해】 ‘蒙利者’는 ‘물사용자’로 순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일] -없음

[류] 제234조 (用水權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김]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은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순】 제234조 [물사용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은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일] -없음

[류] 제235조 (公用水의 用水權) 이웃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공용(共用)에 속하는 원천(源泉)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김]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서로 이웃한 사람들은 공용에 속하는 자연 용출수, 인공 용출수 또는 수도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필요한 만큼 그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순**】 제235조 [공동사용하는 물사용권] 서로 이웃한 사람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천(源泉)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의 물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그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해**】 순화기준에 맞춘 법문의 순화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린자’는 ‘서로 이웃한 사람’으로, ‘공용’은 ‘공동사용’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36조 (용수장애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36조 (用水障害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源泉)이나 수도가 다른 사람의 건축 그밖의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減水) 그밖에 용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로 음료수 그밖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36조 【용수∨장애의 공사와 손해 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자연 용출수, 인공 용출수 또는 수도가 타인의 건

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말미암아 단수되거나 감수되거나 그 용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용수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공사로 음료수, 그 밖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36조 [물사용 방해공사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다른 사람의 건축, 그 밖의 공사로 단수·감수 또는 용도에 방해가 생긴 때에 물사용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로 음료수, 그 밖의 생활에 필요한 물사용에 방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해]** ‘장애’는 ‘방해’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일] 第223條 土地ノ所有者ハ隣地ノ所有者ト共同ノ費用ヲ以テ疆界ヲ標示スヘキ物ヲ設クルコトヲ得

第224條 界標ノ設置及ヒ保存ノ費用ハ相隣者平分シテ之ヲ負擔ス但測量ノ費用ハ其土地ノ廣狹ニ應シテ之ヲ分担ス

第226條 圍障ノ設置及ヒ保存ノ費用ハ相隣者平分シテ之ヲ負擔ス

第228條 前3條ノ規定ニ異ナリタル慣習アルトキハ其慣習ニ從フ

[류]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김]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앞항의 비용은 양쪽이 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순】 제237조 [경계표 및 담의 설치권] ①이웃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해】 ‘인접’은 ‘이웃’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일] 第227條 相隣者ノ1人ハ第225條第2項ニ定メタル材料ヨリ良好ナルモノヲ用キ又ハ高サヲ增シテ圍障ヲ設クルコトヲ得 但之ニ因リテ生スル費用ノ増額ヲ負擔スルコトヲ要ス

[류]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접토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그밖의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김] 제238조 【담의 특수 시설 설치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의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쌓을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의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이나 그 밖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순】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 설치권] 이웃토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의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그 밖의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지’는 ‘이웃토지’로, ‘양호’는 ‘더 좋은’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229條 疆界線上ニ設ケタル界標、圍障、牆壁及ヒ溝渠ハ相隣者ノ共有ニ屬スルモノト推定ス

第231條 相隣者ノ1人ハ共有ノ牆壁ノ高サヲ増スコトヲ得 但其牆壁カ此工事ニ耐ヘサルトキハ自費ヲ以テ工作ヲ加ヘ又ハ其牆壁ヲ改築スルコトヲ要ス

[류]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이웃 토지소유자의 공유(共有)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이웃 토지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등은 서로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도랑∨등이 서로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 중 한쪽만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한쪽의 소유로 인정한다(또는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순】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도랑∨등은 서로 이웃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도랑∨등이 서로 이웃한 사람의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 ‘공유’는 민법상의 소유형태로써 법률전문용어에 해당하지만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문의 내용에 맞추어 ‘공동소유’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구거’는 ‘도랑’으로, ‘상린자’는 ‘서로 이웃한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일] 第233條 ①隣地ノ竹木ノ枝カ疆界線ヲ踰ユルトキハ其竹木ノ所有者ヲシテ其枝ヲ剪除セシムルコトヲ得

-제2항 없음

第233條 ②隣地ノ竹木ノ根カ疆界線ヲ踰ユルトキハ之ヲ截取スルコトヲ得

[류] 제240조 (나무의 가지·뿌리의 제거권) ①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 온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이웃 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어 온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김] 제240조 **【나뭇가지, 나무뿌리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올 때(또는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또는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청구를 나무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또는 ‘않은 경우’)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또는 ‘넘어왔을 때’)에 그 토지의 주인은 그것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순】** 제240조 **【나뭇가지 및 뿌리의 제거권】** ①이웃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 온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청구자는 그 가치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이웃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어 온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 ‘수지, 목근’은 ‘나뭇가지 및 뿌리’로, ‘인접지’는 ‘이웃토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없음

[류] 제241조 (토지의 深掘禁止)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241조 【토지 깊이 파기∨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했을 때에는 깊이 팔 수 있다.

【순】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深掘禁止)] 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 ‘심굴’에 대한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234條 ① 建物ヲ築造スルニハ疆界線ヨリ50センチメートル以上ノ距離ヲ存スルコトヲ要ス

②前項ノ規定ニ違ヒテ建築ヲ爲サントスル者アルトキハ隣地ノ所有者ハ其建築ヲ廢止シ又ハ之ヲ變更セシムルコトヲ得但建築著手ノ時ヨリ1年ヲ經過シ又ハ其建築ノ竣成シタル後ハ損害賠償ノ請求ノミヲ爲スコトヲ得  
第236條 前2條ノ規定ニ異ナリタル慣習アルトキハ其慣習ニ從フ

[류]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이웃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게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42조 【경계선 ∨ 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50센티미터(또는 ‘0.5미터’) ∨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 ∨ 소유자는 앞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인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0.5미터 ∨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이웃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인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하】 ‘축조’는 ‘건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법문에 있어서 거리의 단위는 수학의 표시원칙에 따르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개] 제242조의2 (경계를 침범한 건축) ①건축된 건물이 그 건축시행자 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 그밖의 권리자는 경계가 침범된 후 1년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건물의 완성 후 제28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계가 침범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지료상당의 보상 또는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류] 제242조의2 (경계를 침범한 건축) ①건축된 건물이 그 건축시행자 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 그밖의 권리자는 경계가 침범된 후 1년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건물의 완성 후 제28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계가 침범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지료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42조의2 [경계를 침범한 건축] ①건축된 건물이 그 건축시행자 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이웃 토지의 소유자, 그∨밖의 권리자는 경계가 침범된 후 1년∨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건물의 완성 후 제28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계가 침범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지료에 적당한 보상 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일] 第235條 ①疆界線ヨリ1メートル未滿ノ距離ニ於テ他人ノ宅地ヲ觀望スヘキ窓又ハ椽側ヲ設クル者ハ目隱ヲ附スルコトヲ要ス

[류] 제243조 (遮面施設義務)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김] 제243조 【앞가림 시설 설치 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바라볼(또는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적당한 앞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순】 제243조 [차단시설(遮斷施設)의 설치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 ‘차면’은 ‘차단’ 혹은 ‘앞가림’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지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 第237條 ①井戸、用水溜、下水溜又ハ肥料溜ヲ穿ツニハ疆界線ヨリ2メートル以上池、地窖又ハ厠坑ヲ穿ツニハ1メートル以上ノ距離ヲ有スルコトヲ要ス

②水樋ヲ埋メ又ハ溝渠ヲ穿ツニハ疆界線ヨリ其深サノ半以上ノ距離ヲ有スルコトヲ要ス但1メートルヲ踰ユルコトヲ要セス

第238條 疆界線ノ近傍ニ於テ前條ノ工事ヲ爲ストキハ土砂ノ崩壞又ハ水若クハ汚液ノ滲漏ヲ防クニ必要ナル注意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用水,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구정물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장해 둘 지하√시설을 만들 때에는 경계에서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공사에 는 경계에서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앞항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더러운 물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물사용·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만들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계에서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구정물 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 ‘저치’는 ‘저장’으로, ‘오액’은 “구정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또한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순화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제 2 절 소유권의 취득(所有權의 取得)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 第162條 ①20年間所有ノ意思ヲ以テ平穩且公然ニ他人ノ物ヲ占有シタル者ハ其所有權ヲ取得ス

第162條 ②10年間所有ノ意思ヲ以テ平穩且公然ニ他人ノ不動産ヲ占有シタル者カ其占有ノ始善意ニシテ且過失ナカリシトキハ其不動産ノ所有權ヲ取得ス

[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김] 제245조 【점유로 말미암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소유할 의사(意思)로 20년간 평온하고도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소유할 의사로 10년간 평온하고도 공공연하게, 또한 선의로, 과실(過失)∨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을 때(또는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순**】 제245조 [점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소유할 의사로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소유할 의사로 1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히**】 ‘평온, 공연’은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 -없음

[류]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시작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김] 제246조 【점유로 말미암은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소유할 의사로 10년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앞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의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순**】 제246조 [점유에 따른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소유할 의사로 1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의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하다.

[일] 第144條 時効ノ効力ハ其起算日ニ遡ル

[류]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제245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된다.

[김]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제245조, 제246조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하였을 때로 소급한다.

②소멸 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제245조, 제246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순**】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遡及效) 및 중단사유] ①제245조와 제246조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하였을 때로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제245조와 제246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하다.

【**해**】 ‘개시’는 ‘시작’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일] 第163條 所有權以外ノ財産權ヲ自己ノ爲メニスル意思ヲ以テ平穩且公然ニ行使スル者ハ前條ノ區別ニ從ヒ20年又ハ10年ノ後權利ヲ取得ス

[류]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5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된다.

[김]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5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순】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5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 第192條 平穩且公然ニ動産ノ占有ヲ始メタル者カ善意ニシテ且過失ナキトキハ即時ニ其動産ノ上ニ行使スル權利ヲ取得ス

[류]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김] 제249조 【선의 취득】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讓受)한 사람이 선의로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또는 ‘아닐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순】 제249조 [선의취득(善意取得)]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로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바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193條 前條ノ場合ニ於テ占有物カ盜品又ハ遺失物ナルトキハ被害者又ハ遺失主ハ盜難又ハ遺失ノ時ヨリ 2年間占有者ニ對シテ其物ノ回復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250조 【도난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앞 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일 때에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당했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난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또는 ‘금전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250조 [도난품(盜難品)과 유실물(遺失物)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때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난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 ‘도품’은 ‘도난품’ 혹은 ‘도난물(건)’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실물’은 일반적인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194條 占有者カ盜品又ハ遺失物ヲ競賣若クハ公ノ市場ニ於テ又ハ其物ト同種ノ物ヲ販賣スル商人ヨリ善意ニテ買受ケタルトキハ被害者又ハ遺失主ハ占有者カ拂ヒタル代価ヲ弁償スルニ非サレハ其物ヲ回復スルコトヲ得ス

[류] 제251조 (盜品,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代價)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51조 【도난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하였을 때에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51조 [도난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난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선의로 매수하였을 때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일] 第239條 ①無主ノ動産ハ所有ノ意思ヲ以テ之ヲ占有スルニ因リテ其所有權ヲ取得ス  
②無主ノ不動産ハ國庫ノ所有ニ屬ス

[류] 제252조 (無主物の 귀속) ①무주(無主)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김] 제252조 【주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①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하고 사육하던 야생 ∨ 동물도 다시 야생 ∨ 상태로 돌아가면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한다.

**[순]** 제252조 [주인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며, 사육하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주인이 없는 물건이 된다.

**[해]** ‘무주물’은 민법상의 소유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전문용어이지만 적절한 순화어가 없다면 풀어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양’은 ‘사육’으로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 第240條 遺失物ハ特別法ノ定ムル所ニ從ヒ公告ヲ爲シタル後6个月内ニ其所有者ノ知レサルトキハ拾得者其所有權ヲ取得ス

[류] 제253조 (遺失物の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김]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순]**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일] 第241條 埋藏物ハ特別法ノ定ムル所ニ從ヒ公告ヲ爲シタル後6个月内ニ其所有者ノ知レサルトキハ發見者其所有權ヲ取得ス但他人ノ物ノ中ニ於テ發見シタル埋藏物ハ發見者及ヒ其物ノ所有者折半シテ其所有權ヲ取得ス

[류]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토지 그밖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그 토지 그밖의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김]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 취득】 매장물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으로 나누어 취득한다.

【**순**】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그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으로 나누어 취득한다.

【**해**】 ‘절반하여’는 ‘반으로 나누어’로 순화하거나 적절한 법문의 내용에 맞게 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242條 不動産ノ所有者ハ其不動産ノ從トシテ之ニ附合シタル物ノ所有權ヲ取得ス 但權原ニ因リテ其物ヲ附屬セシメタル他人ノ權利ヲ妨ケス

[류]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다.

[김]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어 있을 때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이 권원(權原)에 의거하여(또는 ‘권리에 근거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이다.

【**순**】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에 근거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해**】 ‘부합’과 ‘권원’ 은 민법상의 전문용어으로써 순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절한 대체어를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도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일] 第243條 各別ノ所有者ニ屬スル數個ノ動産カ附合ニ因リ毀損スルニ非サレハ之ヲ分離スル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トキハ其合成物ノ所有權ハ主タル動産ノ所有者ニ屬ス分離ノ爲メ過分ノ費用ヲ要スルトキ亦同シ  
第244條 附合シタル動産ニ付キ主從ノ區別ヲ爲スコト能ハサルトキハ各動産ノ所有者ハ其附合ノ當時ニ於ケル價格ノ割合ニ應シテ合成物ヲ共有ス

[류]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여야만 분리할 수 있거나 그 분리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 합성물(合成物)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값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共有)한다.

[김]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있어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순】** 제257조 [동산사이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있어서 훼손하여야만 분리할 수 있거나, 분리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격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公有)한다.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245條 前2條ノ規定ハ各別ノ所有者ニ屬スル物カ混和シテ識別スル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258조 (混和) 제257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258조 【혼화(混和)】 앞 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섞여(또는 ‘혼화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258조 [혼합(混合)] 제257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합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해】** ‘混和’는 민법상의 전문용어이지만 ‘혼합’으로 순화하여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제259조 (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 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일] 第246條 ①他人ノ動産ニ工作ヲ加ヘタル者アルトキハ其加工物ノ所有權ハ材料ノ所有者ニ屬ス但工作ニ因リテ生シタル價格カ著シク材料ノ價格ニ超ユルトキハ加工者其物ノ所有權ヲ取得ス

②加工者カ材料ノ一部ヲ供シタルトキハ其價格ニ工作ニ因リテ生シタル價格ヲ加ヘタルモノカ他人ノ材料ノ價格ニ超ユルトキニ限り加工者其物ノ所有權ヲ取得ス

[류] 제259조 (加工) ①다른 사람의 동산에 가공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값의 증가가 원재료의 값보다 현저히 많을 때에는 가공한 사람의 소유로 된다.

②가공한 사람이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값은 제1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김] 제259조 【가공】 ①타인의 동산을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말미암은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 그 가액은 앞항의 증가액에 더한다.

【순】 제259조 [가공(加工)] ①다른 사람의 동산을 가공하였을 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가격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매우 많을 때에는 가공한 사람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한 사람이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 그 가격은 제1항의 증가액에 더한다.

**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일] 第247條 ①前5條ノ規定ニ依リテ物ノ所有權カ消滅シタルトキハ其物ノ上ニ存セル他ノ權利モ亦消滅ス

②右ノ物ノ所有者カ合成物、混和物又ハ加工物ノ單獨所有者ト爲リタルトキハ前項ノ權利ハ爾後合成物、混和物又ハ加工物ノ上ニ存シ其共有者ト爲リタルトキハ其持分ノ上ニ存ス

[류] 제260조 (添附의 효과) ①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된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제1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김] 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앞항의 권리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앞항의 권리가 그 지분에 존속한다.

【순】 제260조 [첨부(添附)의 효과] ①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해】 ‘첨부’는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혼화물’은 ‘혼합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248條 前6條ノ規定ノ適用ニ因リテ損失ヲ受ケタル者ハ第703條及ヒ第704條ノ規定ニ從ヒ償金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261조 (添附로 인한 求償權) 제256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61조 【침부로 말미암은 구상권(求償權)】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의 경우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부당이익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61조 [침부(添附)에 따른 보상청구권(報償請求權)]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사람은 부당이익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 ‘求償權’은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조의 ‘구상권’은 ‘보상청구권’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제 3 절 공동소유(共同所有)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 第250條 各共有者ノ持分ハ相均シキモノト推定ス

[류]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하나의 물건이 지분으로 나누어져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일] 第249條 各共有者ハ共有物ノ全部ニ付キ其持分ニ應シタル使用ヲ爲スコトヲ得

[류]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①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②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공유자가 제2항의 계약을 하는 때에도 공유자 서로간의 처분을 허용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김] 제263조 【공유 $\vee$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순】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개정안: ②공유자는 5년 $\vee$ 내의 기간으로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 계약을 갱신한 때에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공유자가 제2항의 계약을 하는 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는 처분을 허용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일] 第251條 各共有者ハ他ノ共有者ノ同意アルニ非サレハ共有物ニ變更ヲ加フルコトヲ得ス

[류]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김]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vee$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순】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vee$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일] 第252條 共有物ノ管理ニ關スル事項ハ前條ノ場合ヲ除ク外各共有者ノ持分ノ價格ニ從ヒ其過半數ヲ以テ之ヲ決ス但保存行爲ハ各共有者之ヲ爲スコトヲ得

[류]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김]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순**】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일] 第253條 ①各共有者ハ其持分ニ應シ管理ノ費用ヲ拂ヒ其他共有物ノ負擔ニ任ス

②共有者カ1年内ニ前項ノ義務ヲ履行セサルトキハ他ノ共有者ハ相当ノ償金ヲ拂ヒテ其者ノ持分ヲ取得スルコトヲ得

[류]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그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제1항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적당한 값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김]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나 그 밖의 의무를 진다.

②공유자가 1년 $\vee$ 이상 앞항의 의무 $\vee$ 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 다른 공유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순]**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vee$ 이상 제1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 다른 공유자는 적당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일] 第255條 共有者ノ1人カ其持分ヲ拋棄シタルトキ又ハ相續人ナクシテ 死亡シタルトキハ其持分ハ他ノ共有者ニ歸屬ス

[류]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에 지분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김] 제267조 **【지분 $\vee$ 포기 $\vee$ 등과 같은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vee$ 없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순]** 제267조 [지분포기 $\vee$ 등과 같은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vee$ 없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256條 ①各共有者ハ何時ニテモ共有物ノ分割ヲ請求スルコトヲ得 但5年ヲ超エサル期間内分割ヲ爲サル契約ヲ爲スコトヲ妨ケス

②此契約ハ之ヲ更新スルコトヲ得 但其期間ハ更新ノ時ヨリ5年ヲ超ユルコトヲ得ス

第257條 前條ノ規定ハ第229條ニ掲ケタル共有物ニハ之ヲ適用セス

[류]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앞항의 계약을 갱신하였을 때에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동안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을 갱신하였을 때에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 ‘갱신’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일] 第258條 ①分割ハ共有者ノ協議調ハサルトキハ之ヲ裁判所ニ請求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現物ヲ以テ分割ヲ爲スコト能ハサルトキ又ハ分割ニ因リテ著シク其價格ヲ損スル虞アルトキハ裁判所ハ其競賣ヲ命スルコトヲ得

[류]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現物)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하게 그 가치가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김]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써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순】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써 매우 그 가격이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일] 第261條 各共有者ハ他ノ共有者カ分割ニ因リテ得タル物ニ付キ賣主ト同シク其持分ニ應シテ担保ノ責ニ任ス

[류]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김] 제270조 【분할로 말미암은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써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순】**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써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 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 물 전체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일] -없음

[류] 제271조 (물건의 合有)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조합체(組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김] 제271조 **【물건의 합유(合有)】** ①**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또는 ‘소유할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앞항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도 제 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순】** 제271조 [물건의 합유(合有)]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여러사람이 조합체(組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도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해】** ‘합유’는 ‘합동소유’로, ‘공유’는 ‘공동소유’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소유’나 ‘복합 소유’ 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김]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 $\vee$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순】**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김] 제273조 **【합유 $\vee$ 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vee$ 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vee$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vee$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된다.

②앞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일] -없음

[류] 제275조 (물건의 總有)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때에는 총유라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그밖의 규약에 의하는 외에 제276조 및 제277조의 규정에 따른다.

[김] 제275조 【물건의 총유(總有)】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 사단의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도 제276조, 제277조의 규정에 따른다.

【순】 제275조 [물건의 총유(總有)]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는 사단의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도 제276조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해】 ‘총유’는 ‘총괄소유’ 혹은 ‘전체소유’ 등으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김]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 ∨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각 사원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또는 ‘규약을 좇아’)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순】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각 ∨ 사원은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일] -없음

[류]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김]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얻거나 잃음】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 상실함으로써 함께 취득하거나 ∨ 상실한다.

【**순**】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과 상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함께 취득 또는 상실한다.

【**해**】 ‘득실’은 ‘취득과 상실’ 혹은 ‘취득·상실’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일] 第264條 本節ノ規定ハ數人ニテ所有權以外ノ財産權ヲ有スル場合ニ之ヲ準用ス但法令ニ別段ノ定ア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278조 (準共同所有) 이 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김] 제278조 【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이 절의 규정은 소유권 ∨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순**】 제278조 [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이 절의 규정은 소유권 ∨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 제 4 장 지상권(地上權)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일] 第265條 地上權者ハ他人ノ土地ニ於テ工作物又ハ竹木ヲ所有スル爲  
メ其土地ヲ使用スル權利ヲ有ス

[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나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김]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순]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있  
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나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할 권리가 있다.

[해] ‘수목’은 ‘나무’로 순화하여도 문맥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개] 제279조의2 (지상권의 설정)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류] 제279조의2 (지상권의 설정)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존속기간  
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 제279조의2 [지상권의 설정]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를 위하  
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한다.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일] -없음

[류]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②제1항의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지상권이 설정될 때에 건물 그밖의 공작물이나 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280조 【존속V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V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돌, 석회, 벽돌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또는 ‘1. 돌, 석회,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樹木)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30년.
2. 앞V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15년.
3. 건물V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5년.

②앞항의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앞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순】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돌, 석회, 벽돌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 2. 제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 3. 건물 V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 ② 제1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해** 어려운 한자어는 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한’은 ‘기간’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올바르다고 생각됨.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일] 第268條 ① 設定行爲ヲ以テ地上權ノ存續期間ヲ定メサリシ場合ニ於テ別段ノ慣習ナキトキハ地上權者ハ何時ニテモ其權利ヲ拋棄スルコトヲ得但地代ヲ拂フヘキトキハ1年前ニ予告ヲ爲シ又ハ未タ期限ノ至ラサル1年分ノ地代ヲ拂フコトヲ要ス

② 地上權者カ前項ノ規定ニ依リテ其權利ヲ拋棄セサルトキハ裁判所ハ當事者ノ請求ニ因リ20年以上50年以下ノ範圍内ニ於テ工作物又ハ竹木ノ種類及ヒ狀況其他地上權設定ノ當時ノ事情ヲ斟酌シテ其存續期間ヲ定ム

[류]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지상권이 설정될 때에 건물 그밖의 공작물이나 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제280조 제3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지상권설정자가 제3항의 통고를 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상권이 소멸한다.

1. 석조, 석회조, 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2년
2. 제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6개월

[김]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 기간은 앞 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 지상권은 앞∨조∨제2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순**】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 기간은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 지상권은 제281조∨제2호의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지상권이 설정될 때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 지상권은 제280조 제3호의 공작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④지상권설정자가 제3항의 통고를 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상권이 소멸한다.

1. 돌, 석회, 벽돌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2. 제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중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김]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 $\vee$ 기간 $\vee$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순]**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vee$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그밖의 공작물이나 나무가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자는 적당한 값으로 제1항의 공작물이나 나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vee$ 청구권, 매수 $\vee$ 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였을 때에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 $\vee$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또는 ‘않을 때에’) 지상권자는 적절한 가액으로 앞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구입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나무가 남아있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적당한 가격으로 제1항의 공작물이나 나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 ‘현존하는’은 ‘남아있는’으로, ‘매수’는 ‘구입’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김]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순】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일] 第269條 ①地上權者ハ其權利消滅ノ時土地ヲ原狀ニ復シテ其工作物及ヒ竹木ヲ收去スルコトヲ得但土地ノ所有者カ時価ヲ提供シテ之ヲ買取ルヘキ旨ヲ通知シタルトキハ地上權者ハ正當ノ理由ナクシテ之ヲ拒ムコトヲ得ス

[류]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나무를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적당한 값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김]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에 지상권자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적절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였을 때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순] 제285조 [수거의무와 구입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에 지상권자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나무를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적당한 가격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나무의 구입을 청구하였을 때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 ‘원상에 회복하여야’는 ‘원래대로 복구시켜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문용어로서의 ‘원상회복’과의 용어상의 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음.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286조 (地料增減請求權)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86조 【지료(地料)∨조정∨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그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86조 [지료조정청구권(地料調整請求權)]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그 밖의 부담의 변동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 법문의 문맥에 있어서 ‘증감’은 ‘변동’ 혹은 ‘조정으로 맞게 순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266條 ①地上權者カ土地ノ所有者ニ定期ノ地代ヲ拂フヘキトキハ第274條乃至第276條ノ規定ヲ準用ス

②此他地代ニ付テハ賃貸借ニ關スル規定ヲ準用ス

[류]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없음

[류]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나무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이 생긴다.

[김]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또는 ‘된 경우’)에 앞 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적절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나무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일] -없음

[류] 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김] 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순] 제289조 [강행규정(强行規定)]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일] 第269條ノ2 地下又ハ空間ハ上下ノ範圍ヲ定メ工作物ヲ所有スル爲メ之ヲ地上權ノ目的ト爲ス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設定行爲ヲ以テ地上權ノ行使ノ爲メニ土地ノ使用ニ制限ヲ加フルコトヲ得

②前項ノ地上權ハ第三者ガ土地ノ使用又ハ收益ヲ爲ス權利ヲ有スル場合ニ於テモ其權利又ハ之ヲ目的トスル權利ヲ有スル總テノ者ノ承諾アルトキハ之ヲ設定スル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土地ノ使用又ハ收益ヲ爲ス權利ヲ有スル者ハ其地上權ノ行使ヲ妨グルコトヲ得ズ

[류] 제289조의2 (區分地上權)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그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김] 제289조의2 【구분 지상권(區分地上權)】 ①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또는 '가질 때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순]**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해]**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문장의 순화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일] 第267條 第209條乃至第238條ノ規定ハ地上權者間又ハ地上權者ト土地ノ所有者トノ間ニ之ヲ準用ス但第229條ノ推定ハ地上權設定後ニ爲シタル工事ニ付テノミ之ヲ地上權者ニ準用ス

[류] 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 준용된다.

②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된다.

[김] 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준용한다.

②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과 제29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준용한다.

**[순]** 제290조 [준용규정(準用規定)] ①제213조·제214조·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토지소유자 사이에 준용한다.

②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과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구분지상권 에 준용한다.

## 제 5 장 지역권(地役權)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일] 第280條 地役權者ハ設定行爲ヲ以テ定メタル目的ニ從ヒ他人ノ土地ヲ自己ノ土地ノ便益ニ供スル權利ヲ有ス但第3章第1節中ノ公ノ秩序ニ關スル規定ニ違反セサルコトヲ要ス

[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김]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순]** 제291조 [지역권(地役權)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利)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해]** ‘편익’은 ‘편리’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일] 第281條 ①地役權ハ要役地ノ所有權ノ從トシテ之ト共ニ移轉シ又ハ要役地ノ上ニ存スル他ノ權利ノ目的タルモノトス但設定行爲ニ別段ノ定ア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地役權ハ要役地ヨリ分離シテ之ヲ讓渡シ又ハ他ノ權利ノ目的ト爲スコトヲ得ス

[류] 제292조 (附從性) ①지역권은 요역지(要役地)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김] 제292조 【부종성(附從性)】 ①지역권은 편익 향유지 ∨ 소유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이전하며, 편익 향유지에 대한 소유권 ∨ 이외의 권리가 발생하면 지역권도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지역권은 편익 향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지 못한다.

【순】 제292조 [부종성(附從性)] ①지역권은 향유지 ∨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사용토지에 대한 소유권 ∨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지역권은 향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해】 ‘요역지’는 ‘향유지’ 또는 ‘사용(토)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법문의 이해를 위하여 보다 쉽게 문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282條 ①土地ノ共有者ノ1人ハ其持分ニ付キ其土地ノ爲メニ又ハ其土地ノ上ニ存スル地役權ヲ消滅セシムルコトヲ得ス

②土地ノ分割又ハ其一部ノ讓渡ノ場合ニ於テハ地役權ハ其各部ノ爲メニ又ハ其各部ノ上ニ存ス 但地役權カ其性質ニ因リ土地ノ一部ノミニ關ス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不可分性) ①토지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要役地)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承役地)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편의 향유지 또는 그 편의 제공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련된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권이나 편의 제공 의무가 존속하지 않는다.

[순] 제293조 [공유관계 및 일부∨양도와 불가분성(不可分性)] ①토지공유자 중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향유지 또는 그 제공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련된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해] ‘승역지’는 ‘제공(토)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법문의 이해를 위하여 보다 쉽게 문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인’은 ‘한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283條 地役權ハ繼續且表現ノモノニ限り時効ニ因リテ之ヲ取得スルコトヲ得

[류]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김]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294조 [지역권의 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일] 第284條 ①共有者ノ1人カ時効ニ因リテ地役權ヲ取得シタルトキハ他ノ共有者モ亦之ヲ取得ス

第284條 ②共有者ニ對スル時効中斷ハ地役權ヲ行使スル各共有者ニ對シテ之ヲ爲スニ非サレハ其効力ヲ生セス

[류] 제295조 (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김]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말미암은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순**】 제295조 [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不可分性)] ①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에 따른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일] 第292條 要役地カ數人ノ共有ニ屬スル場合ニ於テ其1人ノ爲メニ時効ノ中斷又ハ停止アルトキハ其中斷又ハ停止ハ他ノ共有者ノ爲メニモ其効力ヲ生ス

[류]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不可分性) 요역지(要役地)가 여러 사람의 공유(共有)인 경우에 그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김] 제296조 【소멸 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편의 향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에 그 중 한 명의 의사로 행한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순】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불가분성] 향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이 행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297조 (용수지역권)**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일] 第285條 ①用水地役權ノ承役地ニ於テ水カ要役地及ヒ承役地ノ需要ノ爲メニ不足ナルトキハ其各地ノ需要ニ応シ先ツ之ヲ家用ニ供シ其殘余ヲ他ノ用ニ供スルモノトス但設定行爲ニ別段ノ定ア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同一ノ承役地ノ上ニ數個ノ用水地役權ヲ設定シタルトキハ後ノ地役權者ハ前ノ地役權者ノ水ノ使用ヲ妨クルコトヲ得ス

[류] 제297조 (用水地役權) ①용수승역지(用水承役地)의 수량(水量)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의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정용에 공급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김] 제297조 【용수∨지역권(地役權)】 ①용수∨편익 제공지의 수량이 편익 향유지와 편익 제공지의 수요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수요의 정도에 따라 먼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편익 제공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또는 ‘설정되었을 때에’)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순**】 제297조 [물사용지역권] ①물사용∨향유지의 수량이 향유지 및 제공지의 수요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수요의 정도에 따라 먼저 가정용으로 공급하고 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제공지에 여러 개의 물사용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물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일] 第286條 設定行爲又ハ特別契約ニ因リ承役地ノ所有者カ其費用ヲ以テ地役權ノ行使ノ爲メニ工作物ヲ設ケ又ハ其修繕ヲ爲ス義務ヲ負擔シタルトキハ其義務ハ承役地ノ所有者ノ特定承繼人モ亦之ヲ負擔ス

[류] 제298조 (承役地所有者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김] 제298조 【편익 제공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따라 편익 제공 토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地役權者)의 지역권이 원활하게 행사 되도록 자기의 비용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의무를 졌을 때에는 편익 제공 토지∨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진다.

【순】 제298조 [제공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따라 제공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공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해】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문장의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일] 第287條 承役地ノ所有者ハ何時ニテモ地役權ニ必要ナル土地ノ部分ノ所有權ヲ地役權者ニ委棄シテ前條ノ負擔ヲ免ルルコトヲ得

[류] 제299조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담의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떠넘겨서 제298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김] 제299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담∨면제】 편익 제공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地役權)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포기하여 지역권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앞 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순】 제299조 [소유권 이전을 통한 부담의 면제] 제공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제298조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해】 ‘委棄’는 문장에 맞게 적절하게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또한 ‘면할’은 ‘피할’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일] 第288條 承役地ノ所有者ハ地役權ノ行使ヲ妨ケサル範圍内ニ於テ其行使ノ爲メニ承役地ノ上ニ設ケタル工作物ヲ使用スルコトヲ得

[류]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承役地)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김]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편익 제공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편익 제공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편익 제공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순]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제공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제공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공지의 소유자는 수익의 정도에 따른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301조 (準用規定)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김] 제301조 【준용 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순]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294條 共有ノ性質ヲ有セサル入會權ニ付テハ各地方ノ慣習ニ從フ外本章ノ規定ヲ準用ス

[류]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그 밖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떤 지역(또는 ‘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과 토사의 채취, 방목, 그 밖의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습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302조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 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그 밖의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습에 따르는 이외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6 장 전세권(傳貰權)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김]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순】 제303조 [전세권(傳貰權)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김]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때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②앞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순]**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때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일] -없음

- [류]**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法定地上權) ① 대지(垡地)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김]**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것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② 앞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순]**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없음

[류]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및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轉專貰)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전세’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일] -없음

[류]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김] 제307조 【전세권 $\vee$ 양도의 효력】 전세권 $\vee$ 양수인은 전세권 $\vee$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vee$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순】 제307조 [전세권 $\vee$ 양도의 효력] 전세권 $\vee$ 양수인은 전세권 $\vee$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vee$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일] -없음

[류] 제308조 (轉傳貰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김] 제308조 【전전세(轉傳貰)와 같은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를 주거나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를 주거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순】 제308조 [전전세 $\vee$ 등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여야 한다.

[김]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vee$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순]**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해]** ‘현상’은 ‘현재 상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통상’에 대한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치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김]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는 현재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또는 ‘-을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순]**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는 그 가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이나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앞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사용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 ‘용법’은 ‘사용방법’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 -없음

[류]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등기 없이도 전전세권(前轉貫權)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김]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V기간】 ①전세권의 존속V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V기간이 10년을 넘었을 때에는(또는 ‘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V기간을 1년V미만으로 정하였더라도 그 존속V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V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V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V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순]**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었을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1년으로 본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김] 제312조의2 【전세금 조정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합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또는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장래에 그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순]** 제312조의2 [전세금 조정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변동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 ‘증감’은 법문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순화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일] -없음

[류]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김]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순]**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消滅通告)]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해]** ‘통고’는 법률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고’와 마찬가지로 ‘통지’로 통일적으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②제1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남은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은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 전부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그 없어진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②앞항의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14조 [불가항력(不可抗力)에 따른 멸실(滅失)] ①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제1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나머지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 ‘멸실’은 ‘없어짐’으로 순화할 수 있으나 적절한 대체어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 전부나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없어졌을 때에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모자라면(또는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모자람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해**】 ‘잉여’는 ‘나머지’로, ‘부족’은 ‘모자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일] -없음

[류]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買受請求權) ①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買受)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김]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을 때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하였을 때에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일 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에게서 매수한 것일 때에도 이와 같다.

**[순]** 제316조 [원상회복의무와 구입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이 끝남으로써 소멸되었을 때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 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구입을 청구하였을 때에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일 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 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구입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 설정자에게서 구입한 것일 때에도 이와 같다.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김]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同時履行)】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에 전세권 ∨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 ∨ 설정 ∨ 등기의 말소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순]**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同時履行)]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에 전세권 ∨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서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 '교부'는 '건넌'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게을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였을 때에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게을리하였을 때에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 ‘지체’를 ‘게을리함’으로 순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적절한 순화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문명을 제외하고는 문장에 있어서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319조 (準用規定)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김]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간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제214조·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사이에 준용한다.

제 7 장 유치권(留置權)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295條 他人ノ物ノ占有者カ其物ニ關シテ生シタル債權ヲ有スルトキハ其債權ノ弁濟ヲ受クルマテ其物ヲ留置スルコトヲ得 但其債權カ弁濟期ニ在ラサ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留置)할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 $\vee$ 증권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vee$ 증권을 유치(留置)할 권리가 있다.

②앞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vee$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순]** 제320조 [유치권(留置權)의 내용] ①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 第296條 留置權者ハ債權ノ全部ノ弁濟ヲ受クルマテハ留置物ノ全部ニ付キ其權利ヲ行フコトヲ得

[류]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유치권자는 채권 ∨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순**】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체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체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 ‘전부’는 ‘전체’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김] 제322조 【경매, 간이 ∨ 변제 ∨ 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순]** 제322조 (경매와 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 ①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일]** 第297條 ①留置權者ハ留置物ヨリ生スル果實ヲ收取シ他ノ債權者ニ先チテ之ヲ其債權ノ弁濟ニ充當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果實ハ先ツ之ヲ債權ノ利息ニ充當シ尙ホ余剩アルトキハ之ヲ元本ニ充當スルコトヲ要ス

**[류]**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元本)에 충당된다.

**[김]** 제323조 【이득수취권(收取權)】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이득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또는 ‘아닐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이득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순]** 제323조 [이익취득권(利益取得權)]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이익을 취득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이익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해】 ‘원본’을 ‘원금’으로 순화하는 것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적절한 순화어가 없다면 ‘원금’으로 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됨.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298條 ①留置權者ハ善良ナル管理者ノ注意ヲ以テ留置物ヲ占有スルコトヲ要ス

②留置權者ハ債務者ノ承諾ナクシテ留置物ノ使用若クハ賃貸ヲ爲シ又ハ之ヲ担保ニ供スルコトヲ得ス但其物ノ保存ニ必要ナル使用ヲ爲スハ此限ニ在ラス

③留置權者カ前2項ノ規定ニ違反シタルトキハ債務者ハ留置權ノ消滅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324조 (유치권자의 善管義務)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다.

③유치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③유치권자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또는 ‘위반할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善管義務)]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③유치권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 ‘선관의무’와 ‘선량한’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일] 第299條 ①留置權者カ留置物ニ付キ必要費ヲ出タルトキハ所有者ヲシテ其償還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②留置權者カ留置物ニ付キ有益費ヲ出タルトキハ其價格ノ增加カ現存スル場合ニ限リ所有者ノ選擇ニ從ヒ其費シタル金額又ハ增価額ヲ償還セシムルコトヲ得但裁判所ハ所有者ノ請求ニ因リ之ニ相当ノ期限ヲ許与スルコトヲ得

[류]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치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김]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또는 ‘-을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순】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가격의 증가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300條 留置權ノ行使ハ債權ノ消滅時効ノ進行ヲ妨ケス

[류]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제326조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 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제326조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 ‘피담보채권’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301條 債務者ハ相當ノ担保ヲ供シテ留置權ノ消滅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327조 (다른 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27조 **【다른 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27조 [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일] 第302條 留置權ハ占有ノ喪失ニ因リテ消滅ス但第298條第2項ノ規定ニ依リ賃貸又ハ質入ヲ爲シタル場合ハ此限ニ在ラス

[류]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김]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된다.

**【순】**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된다.

## 제 8 장 질 권(質權)

### 제 1 절 동산질권(動産質權)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 第342條 質權者ハ其債權ノ担保トシテ債務者又ハ第三者ヨリ受取リタル物ヲ占有シ且其物ニ付キ他ノ債權者ニ先チテ自己ノ債權ノ弁濟ヲ受クル權利ヲ有ス

[류]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김]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순】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344條 質權ノ設定ハ債權者ニ其目的物ノ引渡ヲ爲ス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330조 (질권의 설정) 질권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要物性)】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

【순】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要物性)]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 제330조 [질권의 설정] 질권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해】 ‘요물성’은 적절한 순화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일] 第343條 質權ハ讓渡スコトヲ得サル物ヲ以テ其目的ト爲スコトヲ得ス

[류]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김]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순】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일] 第345條 質權者ハ質權設定者ヲシテ自己ニ代ハリテ質物ノ占有ヲ爲  
サシムルコトヲ得ス

[류]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占有改정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  
여금 질물(質物)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김] 제332조 **【질권 설정자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質物)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순】** 제332조 [설정자의 대리점유금지] 질권자는 설정자가 질물(質物)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개정안: 제332조 [설정자의 점유개정(占有改  
定)금지] 질권자는 설정자가 질물(質物)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  
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일] 第355條 數個ノ債權ヲ担保スル爲メ同一ノ動産ニ付キ質權ヲ設定シ  
タルトキハ其質權ノ順位ハ設定ノ前後ニ依ル

[류]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  
에 의한다.

[김]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

**【순】**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 그 순위는 설정의 선  
후에 따른다.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일] 第346條 質權ハ元本、利息、違約金、質權實行ノ費用、質物保存ノ費用及ヒ債務ノ不履行又ハ質物ノ隠レタル瑕疵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ノ時価ヲ担保ス但設定行爲ニ別段ノ定ア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334조 (被擔保債權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비용, 질물(質物)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김] 제334조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 ∨ 실행의 비용, 질물 ∨ 보존의 비용 및 채무 ∨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채권을 담보로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순】 제334조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 질권은 원금·이자·위약금·질권의 실행비용·질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흠에 따른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347條 質權者ハ前條ニ掲ケタル債權ノ弁濟ヲ受クルマテハ質物ヲ留置スルコトヲ得但此權利ハ之ヲ以テ自己ニ對シ優先權ヲ有スル債權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제334조에서 규정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質物)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335조 【유치적 ∨ 효력】 질권자는 앞 조의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제334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일] 第348條 質權者ハ其權利ノ存續期間内ニ於テ自己ノ責任ヲ以テ質物ヲ轉質ト爲スコトヲ得 此場合ニ於テハ轉貸ヲ爲ササレハ生セサルヘキ不可抗力ニ因ル損失ニ付テモ亦其責ニ任ス

**【류】** 제336조 (轉質權)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質物)을 전질(轉質)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김] 제336조 【전질권(轉質權)】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도 전질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순】** 제336조 [전질권(轉質權)]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轉質)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해】** ‘전질권’은 ‘전전세’와 함께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337조 (轉質의 대항요건) ①제336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337조 【전질의 대항v요건】 ①앞 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v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앞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하였을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v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337조 [전질(轉質)의 대항요건] ①제336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면 전질로써 채무자·보증인·질권v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하였을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v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 第354條 動産質權者カ其債權ノ弁濟ヲ受ケサルトキハ正當ノ理由アル場合ニ限り鑑定人ノ評價ニ從ヒ質物ヲ以テ直チニ弁濟ニ充ツルコトヲ裁判所ニ請求スル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質權者ハ予メ債務者ニ其請求ヲ通知スルコトヲ要ス

[류]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質物)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김]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순】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일] 第349條 質權設定者ハ設定行爲又ハ債務ノ弁濟期前ノ契約ヲ以テ質權者ニ弁濟トシテ質物ノ所有權ヲ取得セシメ其他法律ニ定メタル方法ニ依ラスシテ質物ヲ處分セシムルコトヲ約スルコトヲ得ス

[류] 제339조 (流質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대신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質物)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김] 제339조 【유질(流質)∨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를 대신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순]** 제339조 [질권전가계약(質權轉嫁契約)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에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해]** ‘유질계약’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예: ‘질권전가계약’ 혹은 ‘질권떠넘김계약’). 또한 ‘갈음’은 순우리말로써 순화하지 않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40조 (質物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 변제한】 ①질권자는 질물로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앞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40조 [질물 ∨ 이외의 재산으로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로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정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일] 第351條 他人ノ債務ヲ担保スル爲メ質權ヲ設定シタル者カ其債務ヲ弁済シ又ハ質權ノ實行ニ因リテ質物ノ所有權ヲ失ヒタルトキハ保証債務ニ關スル規定ニ從ヒ債務者ニ對シテ求償權ヲ有ス

[류]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341조 【물상 보증인(物上保證人)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또는 ‘잃었을 때에는’) 보증 ∨ 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341조 [물권보증인의 배상청구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순]** ‘물상보증인’은 ‘물권보증인’ 혹은 ‘물건보증인’으로 순화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보다 쉬울 것으로 생각됨.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일] 第350條 第296條乃至第300條及ヒ第304條ノ規定ハ質權ニ之ヲ準用ス

[류] 제342조 (物上代位) 질권자는 질물(質物)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김] 제342조 【물상 대위(物上代位)】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말미암아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 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순]** 제342조 [물권대위(物權代位)]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해]** ‘代位’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예 : ‘대행’)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일] 第350條 第296條乃至第300條及ヒ第304條ノ規定ハ質權ニ之ヲ準用ス

[류] 제343조 (準用規定) 제213조, 제214조,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제321조부터 제326조까지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된다.

[김]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와 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순】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와 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344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 이 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된다.

[김] 제34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이 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순】 제34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이 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 2 절 권리질권(權利質權)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362條 ①質權ハ財産權ヲ以テ其目的ト爲スコトヲ得

[류]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않다.

【순】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않다.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김]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순**】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347條 債權ニシテ之ヲ讓渡スニハ其證書ヲ交付スルコトヲ要スルモノヲ以テ質權ノ目的ト爲ストキハ質權ノ設定ハ其證書ノ交付ヲ爲スニ因リテ其効力ヲ生ズ

[류] 제347조 (권리질권의 설정)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을 때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

【**순**】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要物性)]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을 때에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건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 제347조 [권리질권의 설정]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건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하**】 개정안의 순화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일] -없음

[류]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김]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순**】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364條 ①指名債權ヲ以テ質權ノ目的ト爲シタルトキハ第467條ノ規定ニ從ヒ第三債務者ニ質權ノ設定ヲ通知シ又ハ第三債務者カ之ヲ承諾ス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第三債務者其他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349조 (指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이로써 제3채무자 그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349조 【지명 채권(指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면 지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자는 이로써 제삼∨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앞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349조 [지명채권(指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 하여야 제3∨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366條 指図債權ヲ以テ質權ノ目的ト爲シタルトキハ其證書ニ質權ノ設定ヲ裏書ス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350조 【지시 채권(指示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350조 [지시채권(指示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질권자에게 건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없음

[류] 제351조 (無記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김] 제351조 【무기명 채권(無記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 ∨ 방법】 무기명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351조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건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일] -없음

[류]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김] 제352조 【질권 ∨ 설정자의 권리 ∨ 처분 ∨ 제한】 질권 ∨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순】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 第367條 ①質權者ハ質權ノ目的タル債權ヲ直接ニ取立ツルコトヲ得

②債權ノ目的物カ金錢ナルトキハ質權者ハ自己ノ債權額ニ對スル部分ニ限リ之ヲ取立ツルコトヲ得

③右ノ債權ノ弁濟期カ質權者ノ債權ノ弁濟期前ニ到來シタルトキハ質權者ハ第三債務者ヲシテ其弁濟金額ヲ供託セシムルコトヲ得 此場合ニ於テハ質權ハ其供託金ノ上ニ存在ス

④債權ノ目的物カ金錢ニ非サルトキハ質權者ハ弁濟トシテ受ケタル物ノ上ニ質權ヲ有ス

[류]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또는 ‘금전일 때에’)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앞항의 채권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다쳐왔을 때에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vee$ 이외의 물건인 경우에(또는 ‘물건일 때에’) 질권자는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채권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vee$ 이외의 물건인 경우에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일] 第368條 削除

[류] 제354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제353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김] 제354조 **[앞과 같음]** 질권자는 앞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외에 민사 $\vee$ 소송법에서 정한 집행 $\vee$ 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순]** 제354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제353조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해]** ‘同前’은 앞 조문의 조문명과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362條 ②前項ノ質權ニハ本節ノ規定ノ外前3節ノ規定ヲ準用ス

[류] 제355조 (準用規定) 권리질권에는 이 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

[김]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이 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이 절의 규정▽이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9 장 저당권(抵當權)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 第369條 ①抵當權者ハ債務者又ハ第三者カ占有ヲ移サスシテ債務ノ担保ニ供シタル不動産ニ付キ他ノ債權者ニ先チテ自己ノ債權ノ弁濟ヲ受クル權利ヲ有ス

[류]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김]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순**】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일] 第398條ノ2 ①抵当權ハ設定行爲ヲ以テ定ムル所ニ依リ一定ノ範圍ニ屬スル不特定ノ債權ヲ極度額ノ限度ニ於テ担保スル爲メニモ之ヲ設定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抵当權(以下根抵当權ト称ス)ノ担保スベキ不特定ノ債權ノ範圍ハ債務者トノ特定ノ繼續的取引契約ニ因リテ生ズルモノ其他債務者トノ一定ノ種類ノ取引ニ因リテ生ズルモノニ限定シテ之ヲ定ムルコトヲ要ス

③特定ノ原因ニ基キ債務者トノ間ニ繼續シテ生ズル債權又ハ手形上若クハ小切手上ノ請求權ハ前項ノ規定ニ拘ハラズ之ヲ根抵当權ノ担保スベキ債權ト爲スコトヲ得

[류] 제357조 (근저당권) ①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김] 제357조 【근저당(根抵當)】 ①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最高額)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발생하는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앞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순] 제357조 [근저당(根抵當)] ①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最高額)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생기는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 중에 계산된 것으로 본다.

[해] ‘근저당’은 일반화된 전문용어이지만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개] 제357조의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된다.

**[류] 제357조의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또는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한정된다.

**[순] 제357조의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V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또는 특정한 원인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된다.

**[개] 제357조의3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의 변경)** ①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의 확정 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변경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의 변경을 함에는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류] 제357조의3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의 변경)** ①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경될 수 있다. 채무자의 변경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순] 제357조의3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의 변경]** ①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금의 확정 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변경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 그V밖의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 제357조의4 (채권최고액의 변경)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류] 제357조의4 (채권최고액의 변경)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순] 제357조의4 [채권최고액의 변경]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 제357조의5 (근저당권의 양도) ①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을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류] 제357조의5 (근저당권의 양도) ①근저당권자는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되는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순] 제357조의5 [근저당권의 양도] ①근저당권자는 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을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개] 제357조의6 (근저당권의 공유) ①근저당권의 공유자는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그러나 원본의 확정전에 다른 비율을 약정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근저당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35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류] 제357조의6 (근저당권의 共有) ①근저당권의 공유자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그러나,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비율을

약정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근저당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35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순]** 제357조의 6 [근저당권의 공유] ①근저당권의 공유자는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그러나 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비율을 약정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를 받기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근저당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35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 제357조의7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과 근저당권) ①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본의 확정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도 같다.

②원본의 확정전에 채무의 인수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는 인수인의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류]** 제357조의7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과 근저당권) ①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代位)하는 사람도 같다.

②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인수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는 인수인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순]** 제357조의7 (채권양도·채무인수와 근저당권) ①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채권에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금의 확정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②원금의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인수가 있을 때에 근저당권자는 인수인의 채무에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 제357조의8 (상속과 근저당권)** ①원본의 확정전에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상속인과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취득하는 채권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②원본의 확정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부담하는 채무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③제357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관하여 상속개시후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상속개시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류] 제357조의8 (상속과 근저당권)** ①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상속인과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취득하는 채권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②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부담하는 채무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③제357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준용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될 원본은 상속개시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순] 제357조의8 [상속과 근저당권]** ①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상속인과 근저당권 ∨ 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시작한 후에 취득하는 채권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②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에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 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시작한 후에 부담하는 채무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③제357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약정에 준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약정에서 상속을 시작한 후 6개월 ∨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담보되는 원금은 상속이 시작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 제357조의9 (합병과 근저당권) ①원본의 확정전에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인 법인에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 또는 채무 외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채권 또는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담보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합병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청구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합병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2주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합병이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류] 제357조의9 (합병과 근저당권) ①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인 법인에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 또는 채무 외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채권 또는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담보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합병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청구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합병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합병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도 같다.

- [순]** 제357조의9 [합병과 근저당권] ①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 또는 채무 외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채권 또는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근저당권 ∨ 설정자는 담보할 원금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인 근저당권 ∨ 설정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③제2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 담보할 원금은 합병할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④제2항의 청구는 근저당권 ∨ 설정자가 합병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2주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합병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도 이와 같다.

- [개]** 제357조의10 (원본의 확정청구) ①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할 원본의 확정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그 청구시부터 2주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 [류]** 제357조의10 (원본의 확정청구) ①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될 원본의 확정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담보될 원본은 그 청구시부터 2주가 경과됨으로써 확정된다.

- [순]** 제357조의10 [원금의 확정청구] ①근저당권 ∨ 설정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담보할 원금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할 원금의 확정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 담보할 원본은 그 청구를 할 때부터 2주가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개] 제357조의11 (원본의 확정사유) ①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확정된다.

1. 담보할 원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42조에 의한 압류를 신청한 때. 다만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가 있는 때에 한한다.
3.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
4.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2주간이 경과한 때
5.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때

②제1항 제4호의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나 제5호의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본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류] 제357조의11 (원본의 확정사유) ①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확정된다.

1. 담보될 원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때
2.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42조에 의한 압류를 신청한 때. 다만,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가 있는 때에 한한다.
3.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
4.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2주가 경과된 때
5.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때

②제1항 제4호의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나 제5호의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본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순]** 제357조의11 [원금의 확정사유] ①근저당권이 담보할 원금은 다음 각 V호의 경우에 확정된다.

1. 담보할 원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2.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제37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2조에 따른 압류를 신청한 경우. 다만 경매절차의 시작 또는 압류가 있을 때에 한한다.
3.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
4.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시작 또는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2주가 지난 경우
5.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V 설정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시작결정을 받은 경우

②제1항 제4호의 경매절차의 시작 또는 압류나 제5호의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시작결정이 그 효력을 잃을 때에 담보할 원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금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 제357조의12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①원본의 확정전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초과한 때에는 그 예상액의 범위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원본의 확정후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현존하는 채무액과 이후 1년간 발생할 이자 그밖의 정기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류]** 제357조의12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①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부당하게 많이 초과한 때에는 예상액의 범위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원본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현존하는 채무액과 이후 1년간 발생할 이자, 그밖의 정기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57조의12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①원금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V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부당하고 지나치게 많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예상금액의 범위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원금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V설정자는 남아있는 채무액과 이후 1년 동안 발생할 이자, 그V밖의 정기금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370條 抵当權ハ抵当地ノ上ニ存スル建物ヲ除ク外其目的タル不動産ニ附加シテ之ト一体ヲ成シタル物ニ及フ但設定行爲ニ別段ノ定アルトキ及ヒ第424條ノ規定ニ依リ債權者カ債務者ノ行爲ヲ取消スコトヲ得ル場合ハ此限ニ在ラス

[류]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김]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V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V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순】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371條 抵当權ハ其担保スル債權ニ付キ不履行アリタルトキハ其後ニ生ジタル抵当不動産ノ果實ニ及ブ

[류] 제359조 (果實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김] 제359조 **【이득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서 거두어들인 이득이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득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359조 **[이익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서 취득한 이익 또는 취득할 수 있는 이득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 第374條 ① 抵当權者カ利息其他ノ定期金ヲ請求スル權利ヲ有スルトキハ其滿期ト爲リタル最後ノ2年分ニ付テノミ其抵当權ヲ行フコトヲ得但其以前ノ定期金ニ付テモ滿期後特別ノ登記ヲ爲シタルトキハ其登記ノ時ヨリ之ヲ行フコトヲ妨ケス

② 前項ノ規定ハ抵当權者カ債務ノ不履行ニ因リテ生ジタル損害ノ賠償ヲ請求スル權利ヲ有スル場合ニ於テ其最後ノ2年分ニ付テモ亦之ヲ適用ス但利息其他ノ定期金ト通シテ2年分ヲ超ユルコトヲ得ス

[류]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360조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 ∨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 ∨ 배상은 원금의 이행 ∨ 기일이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금·이자·위약금·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의 1년 ∨ 분에 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김]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 ∨ 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순**】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 ∨ 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때에 저당권자는 저당권 ∨ 설정자에게 그 원상 ∨ 회복이나 적절한 담보 ∨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감소하였을 때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일] 第389條 抵当權設定ノ後抵当地ニ建物が築造セラレタルトキハ抵当權者ハ土地ト共ニ其建物ヲ競賣スルコトヲ得但其優先權ハ土地ノ代ニ付テノミ之ヲ行フコトヲ得

第390條 第三取得者ハ競買人ト爲ルコトヲ得

[류]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김]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 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순】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일] 第389條 ① 抵当權設定ノ後 抵当地ニ 建物ガ 築造セラレタルトキハ 抵当權者ハ 土地ト 共ニ 其建物ヲ 競賣スルコトヲ 得 但 其優先權ハ 土地ノ 代價ニ 付テ ノミ之ヲ 行フコトヲ 得

② 前項ノ 規定ハ 其建物ノ 所有者ガ 抵当地ヲ 占有スルニ 付キ 抵当權者ニ 對抗スルコトヲ 得 べき權利ヲ 有スル場合ニ ハ 之ヲ 適用セズ

[류] 제365조 (抵當地上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競賣代價)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김] 제365조 【저당권 설정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였을 때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순]** 제365조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였을 때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競賣代價)는 우선 V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일] 第388條 土地及ヒ其上ニ存スル建物カ同一ノ所有者ニ屬スル場合ニ於テ其土地又ハ建物ノミヲ抵当ト爲シタルトキハ抵当權設定者ハ競賣ノ場合ニ付キ地上權ヲ設定シタルモノト看做ス 但地代ハ当事者ノ請求ニ因リ裁判所之ヲ定ム

[류] 제366조 (法定地上權)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김] 제366조 **【법정 V 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또는 ‘저당물을 경매함으로써’) 토지와 그 지상 V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V 소유자는 건물 V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순]** 제366조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일] 第391條 第三取得者カ抵当不動産ニ付キ必要費又ハ有益費ヲ出タシタルトキハ第196條ノ區別ニ從ヒ不動産ノ代価ヲ以テ最モ先ニ其償還ヲ受クルコトヲ得

[류] 제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競賣代價)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김]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순] 제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03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 第392條 ①債權者ガ同一ノ債權ノ担保トシテ數個ノ不動産ノ上ニ抵当權ヲ有スル場合ニ於テ同時ニ其代価ヲスヘキトキハ其各不動産ノ価額ニ準シテ其債權ノ負擔ヲ分ツ

②或不動産ノ代価ノミヲ配当スヘキトキハ抵当權者ハ其代価ニ付キ債權ノ全部ノ弁濟ヲ受クル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次ノ順位ニ在ル抵当權者

ハ前項ノ規定ニ從ヒ右ノ抵当權者カ他ノ不動産ニ付キ弁濟ヲ受クヘキ金額ニ滿ツルマテ之ニ代位シテ抵当權ヲ行フコトヲ得

[류] 제368조 (공동저당과 代價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競賣代價)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제1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代價)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代位)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次)순위자의 대위(代位)】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앞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경매한 그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앞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次)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제1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일] 第396條 抵当權ハ債務者及ヒ抵当權設定者ニ對シテハ其担保スル債權ト同時ニ非サレハ時効ニ因リテ消滅セス

[류] 제369조 (附從性)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그밖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김] 제369조 【부종성(附從性)】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료나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을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된다.

【**순**】 제369조 [부종성(附從性)]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일] 第372條 제296조, 제304조及ヒ제351조ノ規定ハ抵当權ニ之ヲ準用ス

[류] 제370조 (準用規定)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김]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순**】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제321조·제333조·제340조·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 第369條 ①抵当權者ハ債務者又ハ第三者カ占有ヲ移サスシテ債務ノ担保ニ供シタル不動産ニ付キ他ノ債權者ニ先チテ自己ノ債權ノ弁濟ヲ受クル權利ヲ有ス

-제2항 없음

[류]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이 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저당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전세권설정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이 장(章)의 규정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순】 제371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이 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안: ③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저당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전세권설정자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37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권) 이 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된다.

[김] 제3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이 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순】 제3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이 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 제 3 편 채 권(債權)

#### 제 1 장 총 칙(總則)

##### 제 1 절 채권의 목적(債權의 目的)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일] 第399條 債權ハ金錢ニ見積ルコトヲ得サルモノト雖モ之ヲ以テ其目的ト爲スコトヲ得

[류]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김]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價額)을 계산하여 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순**】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일] 第400條 債權ノ目的カ特定物ノ引渡ナルトキハ債務者ハ其引渡ヲ爲スマテ善良ナル管理者ノ注意ヲ以テ其物ヲ保存スルコトヲ要ス

[류]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善管義務)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김] 제374조 【특정물 ∨ 인도 ∨ 채무자의 선관 ∨ 의무】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이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또는 ‘목적일 때에’)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순]**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 (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일] 第401條 ①債權ノ目的物ヲ指示スルニ種類ノミヲ以テシタル場合ニ於テ法律行爲ノ性質又ハ当事者ノ意思ニ依リテ其品質ヲ定ム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債務者ハ中等ノ品質ヲ有スル物ヲ給付スルコトヲ要ス

②前項ノ場合ニ於テ債務者カ物ノ給付ヲ爲スニ必要ナル行爲ヲ完了シ又ハ債權者ノ同意ヲ得テ其給付スヘキ物ヲ指定シタルトキハ爾後其物ヲ以テ債權ノ目的物トス

**[류]** 제375조 (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은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

**[김]** 제375조 【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순]** 제375조 [종류채권(種類債權)]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품질을 정할 수 없음을 경우에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일] 第402條 ②債權ノ目的タル特種ノ通貨カ弁濟期ニ於テ強制通用ノ効力ヲ失ヒタルトキハ債務者ハ他ノ通貨ヲ以テ弁濟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김]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떤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일 때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는(또는 ‘잃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순]**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떤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 경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7조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일] -제1항 없음

第402條 ③前2項ノ規定ハ外國ノ通貨ノ給付ヲ以テ債權ノ目的ト爲シ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377조 (外貨債權)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김] 제377조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 때에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떤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 때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는(또는 ‘잃었을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순】 제377조 [외화채권(外貨債權)]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 경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일] 第403條 外國ノ通貨ヲ以テ債權額ヲ指定シタルトキハ債務者ハ履行地ニ於ケル爲替相場ニ依リ日本ノ通貨ヲ以テ弁済ヲ爲スコトヲ得

[류] 제378조 (외화채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에서 환금(換金)한 시장가격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김] 제378조 【앞과 같음】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경우에 (또는 ‘지정되었을 때에’)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이행지의 환금 V 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순】 제378조 [외화채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경우에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전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해】 법문을 보다 쉽게 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금’은 ‘환전’으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일] 第404條 利息ヲ生スヘキ債權ニ付キ別段ノ意思表示ナキトキハ其利率ハ年5分トス

【류】 제379조 (法定利率)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김] 제379조 【법정 V 이율】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순】 제379조 [법정이율(法定利率)]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리(年利) 5%로 한다.

【해】 이율의 비율은 ‘분’이나 ‘푼’보다는 ‘%’로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됨.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일] 第406條 債權ノ目的カ數個ノ給付中選擇ニ依リテ定マルヘキトキハ其選擇權ハ債務者ニ屬ス

[류]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김]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순】 제380조 [선택채권(選擇債權)]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일] -제1항 없음

第408條 債權カ弁濟期ニ在ル場合ニ於テ相手方ヨリ相当ノ期間ヲ定メテ催告ヲ爲スモ選擇權ヲ有スル當事者カ其期間内ニ選擇ヲ爲ササルトキハ其選擇權ハ相手方ニ屬ス

[류] 제381조 (선택권의 移轉)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김]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재촉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다쳐온 후 상대방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재촉하는 통지를 하였는데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앞항과 같다.

【순】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통지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통지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일] 第407條 ①ノ選擇權ハ相手方ニ對スル意思表示ニ依リテ之ヲ行フ

②前項ノ意思表示ハ相手方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之ヲ取消スコトヲ得ス

[류]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김]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앞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순】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를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일] 第409條 ①第三者カ選擇ヲ爲スヘキ場合ニ於テハ其選擇ハ債權者又ハ債務者ニ對スル意思表示ニ依リテ之ヲ爲ス

-제2항 없음

[류] 제383조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를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김]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앞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를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순】 제383조 [제3자의 선택권 행사] ①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를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일] 第409條 ②第三者カ選擇ヲ爲スコト能ハス又ハ之ヲ欲セサルトキハ選擇權ハ債務者ニ屬ス

-제2항 없음

[류]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移轉) ①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김]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재촉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vee$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순】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통지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vee$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410條 ①債權ノ目的タルヘキ給付中始ヨリ不能ナルモノ又ハ後ニ至リテ不能ト爲リタルモノアルトキハ債權ハ其殘存スルモノニ付キ存在ス

②選擇權ヲ有セサル當事者ノ過失ニ因リテ給付カ不能ト爲リタルトキハ前項ノ規定ヲ適用セス

[류] 제385조 (불가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385조 【이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선택 V 채권의 특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V 중에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것이나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또는 ‘되었을 때에는’) 앞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385조 [불가능에 따른 선택채권의 확정(確定)]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V 중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나,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 ‘불능’은 ‘불가능’으로, ‘특정’은 ‘확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일] 第411條 選擇ハ債權發生ノ時ニ遡リテ其効力ヲ生ス 但第三者ノ權利ヲ害スルコトヲ得ス

[류] 제386조 (선택권의 소급효) 선택권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김]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순**】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 절 채권의 효력(債權의 效力)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일] 第412條 ①債務ノ履行ニ付キ確定期限アルトキハ債務者ハ其期限ノ到來シタル時ヨリ遲滯ノ責ニ任ス

②債務ノ履行ニ付キ不確定期限アルトキハ債務者ハ其期限ノ到來シタルコトヲ知リタル時ヨリ遲滯ノ責ニ任ス

第412條 ③債務ノ履行ニ付キ期限ヲ定メサリシトキハ債務者ハ履行ノ請求ヲ受ケタル時ヨリ遲滯ノ責ニ任ス

[류] 제387조 (履行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이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이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알았을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김]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 지체(履行遲滯)】 ①채무∨이행에 대한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닥쳐온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에 불확정적인(또는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닥쳐왔다는 것을 안 시점(또는 ‘알았을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시점(또는 ‘받았을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순】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연(履行遲延)] ①채무이행에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연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에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연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책임이 있다.

【해】 ‘지체’는 ‘지연’으로 순화하는 것이 용어의 통일에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일] 第137條 左ノ場合ニ於テハ債務者ハ期限ノ利益ヲ主張スルコトヲ得ス

1. 債務者カ破産ノ宣告ヲ受ケタルトキ
2. 債務者カ担保ヲ毀滅シ又ハ之ヲ減少シタルトキ
3. 債務者カ担保ヲ供スル義務ヲ負フ場合ニ於テ之ヲ供セサルトキ

[류] 제388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킨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김] 제388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V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였다 때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순】 제388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V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시킨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

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414條 ①債務者カ任意ニ債務ノ履行ヲ爲ササルトキハ債權者ハ其強制履行ヲ裁判所ニ請求スルコトヲ得 但債務ノ性質カ之ヲ許ササ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債務ノ性質カ強制履行ヲ許ササル場合ニ於テ其債務カ作爲ヲ目的トスルトキハ債權者ハ債務者ノ費用ヲ以テ第三者ニ之ヲ爲サシムルコトヲ裁判所ニ請求スルコトヲ得但法律行爲ヲ目的トスル債務ニ付テハ裁判ヲ以テ債務者ノ意思表示ニ代フルコトヲ得

③不作爲ヲ目的トスル債務ニ付テハ債務者ノ費用ヲ以テ其爲シタルモノヲ除却シ且將來ノ爲メ適當ノ處分ヲ爲スコト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④前3項ノ規定ハ損害賠償ノ請求ヲ妨ケス

[류]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또는 ‘것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앞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한 사람에게 전속하지 않은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강제 이행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不作爲)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또는 ‘없애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손해 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 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강제이행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不作爲)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 ‘제각’은 ‘제거’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또한 ‘일신’은 ‘개인’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415條 債務者カ其債務ノ本旨ニ從ヒタル履行ヲ爲ササルトキハ債權者ハ其損害ノ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 債務者ノ責ニ歸スヘキ事由ニ因リテ履行ヲ爲ス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トキ亦同シ

**[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 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한 일도 없고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또는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일] -없음

[류]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김]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이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피고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순]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해] 이 조문에서 ‘사용하여’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통하여’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 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없음

[류]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 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392조 [이행지연∨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 지연∨중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어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일] 第416條 ①損害賠償ノ請求ハ債務ノ不履行ニ因リテ通常生スヘキ損害ノ賠償ヲ爲サシムルヲ以テ其目的トス

②特別ノ事情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ト雖モ当事者カ其事情ヲ予見シ又ハ予見スルコトヲ得ヘカリシトキハ債權者ハ其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김] 제393조 【손해 배상의 범위】 ①채무 $\vee$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미리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순**】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일] 第417條 損害賠償ハ別段ノ意思表示ナキトキハ金錢ヲ以テ其額ヲ定ム

[류]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①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정기금(定期金)으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김] 제394조 【손해 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 $\vee$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순**】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개정안: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①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정기금(定期金)으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395조 (이행지체와 填補賠償)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에 채권자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대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填補)∨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을 대신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395조 [이행지연와 완전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 채권자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통지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 ‘轉補’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일] 第418條 債務ノ不履行ニ關シ債權者ニ過失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損害賠償ノ責任及ヒ其金額ヲ定ムルニ付キ之ヲ斟酌ス

[류] 제396조 (過失相計)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는 이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김] 제396조 【과실 상계(過失相計)】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순**】 제396조 [과실상계(過失相計)]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는 이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해**】 ‘과실상계’는 법률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예 : ‘과실맞계산’ 혹은 ‘과실상호계산’)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일] 第419條 ①金錢ヲ目的トスル債務ノ不履行ニ付テハ其損害賠償ノ額ハ法定利率ニ依リテ之ヲ定ム但約定利率ガ法定利率ニ超ユルトキハ約定利率ニ依ル

②前項ノ損害賠償ニ付テハ債權者ハ損害ノ証明ヲ爲スコトヲ要セス又債務者ハ不可抗力ヲ以テ抗弁ト爲スコトヲ得ス

[류]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김]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별 규정】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른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②앞항의 손해 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

[순] 제397조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특별원칙] ①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른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해] ‘특칙’은 ‘특별규정’ 혹은 ‘특별원칙’으로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또한 ‘항변’은 법률전문용어로 쓰이고 있으나, 그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하여 순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420條 ①当事者ハ債務ノ不履行ニ付キ損害賠償ノ額ヲ予定スル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裁判所ハ其額ヲ増減スルコトヲ得ス

第420條 ②賠償額ノ予定ハ履行又ハ解除ノ請求ヲ妨ケス

第420條 ③違約金ハ之ヲ賠償額ノ予定ト推定ス

第421條 前條ノ規定ハ当事者カ金錢ニ非サルモノヲ以テ損害ノ賠償ニ充ツヘキ旨ヲ予定シ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 $\vee$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액수로 줄일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일] 第422條 債權者カ損害賠償トシテ其債權ノ目的タル物又ハ權利ノ価額ノ全部ヲ受ケタルトキハ債務者ハ其物又ハ權利ニ付キ当然債權者ニ代位ス

[류]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김] 제399조 【손해 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價額)∨ 전부를 손해 배상으로 받았을 때에 채무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순】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을 때에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일] 第413條 債權者カ債務ノ履行ヲ受クルコトヲ拒ミ又ハ之ヲ受ク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其債權者ハ履行ノ提供アリタル時ヨリ遲滯ノ責ニ任ス

[류]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은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김]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은 경우(또는 ‘않았을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순】 제400조 [채권자지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을 제공하였을 때부터 지연책임이 있다.

【해】 ‘채권자지체’는 ‘채권자지연’으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일] -없음

[류]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

[김] 제401조 【채권자 $\vee$ 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 $\vee$ 지체 $\vee$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모든 책임이 없다.

【순】 제401조 [채권자지연과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연 $\vee$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 (등전)** 채권자지체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일] -없음

[류] 제402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김] 제402조 【앞과 같음】 채권자 $\vee$ 지체 $\vee$ 중에는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순】 제402조 [채권자지연과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연 $\vee$ 중에는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일] -없음

[류]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김]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그 목적물을 보관하고 변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또는 ‘되었을 때에’)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순】 제403조 [채권자지연과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연으로 그 목적물의 보관과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423條 ①債權者ハ自己ノ債權ヲ保全スル爲メ其債務者ニ屬スル權利ヲ行フコトヲ得但債務者ノ一身ニ專屬スル權利ハ此限ニ在ラス

②債權者ハ其債權ノ期限カ到來セサル間ハ裁判上ノ代位ニ依ルニ非サレハ前項ノ權利ヲ行フコトヲ得ス但保存行爲ハ此限ニ在ラス

[류] 제404조 (債權者代位權)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한 권리는 그러하지 않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한 사람에게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다쳐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앞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

【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전속(專屬)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행위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앞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앞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행위~~이외~~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일] 第424條 ①債權者ハ債務者カ其債權者ヲ害スルコトヲ知りテ爲シタル法律行爲ノ取消ヲ裁判所ニ請求スルコトヲ得 但其行爲ニ因リテ利益ヲ受ケタル者又ハ轉得者カ其行爲又ハ轉得ノ当時債權者ヲ害スヘキ事實ヲ知ラサリシ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前項ノ規定ハ財産權ヲ目的トセサル法律行爲ニハ之ヲ適用セス

第426條 第424條ノ取消權ハ債權者カ取消ノ原因ヲ覺知シタル時ヨリ2年間之ヲ行ハサルトキハ時効ニ因リテ消滅ス 行爲ノ時ヨリ20年ヲ經過シタルトキ亦同シ

[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轉得)한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1항의 소(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김] 제406조 【채권자V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V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는 그것의 취소와 원상V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나 전득(轉得)한 사람이 그 행위를 한 당시나 전득한 당시에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앞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V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V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V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순] 제406조 [채권자V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전득(轉得)한 사람이 그 행위를 한 당시에 전득한 당시에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소(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었던 날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순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함’은 ‘불리함’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또한 ‘轉得’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일] 第425條 前條ノ規定ニ依リテ爲シタル取消ハ總債權者ノ利益ノ爲メニ其効力ヲ生ス

[류]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김]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앞∨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순]**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6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 3 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순]** 제 3 절 여러 사람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 1 관 총 칙(總則)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일] 第427條 數人ノ債權者又ハ債務者アル場合ニ於テ別段ノ意思表示ナキトキハ各債權者又ハ各債務者ハ平等ノ割合ヲ以テ權利ヲ有シ又ハ義務ヲ負フ

[류]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김]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나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거나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진다.(또는 ‘~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진다.)

【**순**】 제408조 [분할채권관계(分割債權關係)]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똑같은 비율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해**】 ‘균등한’은 똑같은‘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제 2 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일] 第428條 債權ノ目的カ其性質上又ハ当事者ノ意思表示ニ因リテ不可分ナル場合ニ於テ數人ノ債權者アルトキハ各債權者ハ總債權者ノ爲メニ履行ヲ請求シ又債務者ハ總債權者ノ爲メ各債權者ニ對シテ履行ヲ爲スコトヲ得

[류]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김]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각 채권

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순]** 제409조 [불가분채권(不可分債權)]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해]** ‘불가분’은 ‘분리가 가능한’으로 풀어쓰는 순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계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일]** 第429條 ①不可分債權者ノ一人ト其債務者トノ間ニ更改又ハ免除アリタル場合ニ於テモ他ノ債權者ハ債務ノ全部ノ履行ヲ請求スルコトヲ得但其一人ノ債權者カ其權利ヲ失ハサレハ之ニ分与スヘキ利点ヲ債務者ニ償還スルコトヲ要ス

②此他不可分債權者ノ一人ノ行爲又ハ其一人ニ付キ生シタル事項ハ他ノ債權者ニ對シテ其効力ヲ生セス

**[류]**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제4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계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않았으면 그에게 나누어 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김]** 제410조 **[한 명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①앞 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

권자 $\vee$ 중 한 명의 행위나 한 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 $\vee$ 채권자 $\vee$ 중의 한 명과 채무자 $\vee$ 간에 경개(更改)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 $\vee$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불가분 $\vee$ 채권자 $\vee$ 중 한 명이 권리를 잃지 않았으면 그에게 나누어 주었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순]** 제410조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제409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vee$ 중 한 사람의 행위나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vee$ 중의 한 사람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更改)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한 사람이 권리를 잃지 않았으면 그에게 나누어 주었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해]** ‘분급’은 ‘나누어 주다’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430條 數人カ不可分債務ヲ負擔スル場合ニ於テハ前條ノ規定及ヒ連帶債務ニ關スル規定ヲ準用ス但第434條乃至第440條ノ規定ハ此限ニ在ラス

[류]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부터 제415조까지, 제422조, 제424조부터 제427조 및 제4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11조 【불가분 $\vee$ 채무와 준용 $\vee$ 규정】 여러 사람이 불가분 $\vee$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부터 제415조까지와 제422조, 제424조부터 제427조까지와 제4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여러 사람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부터 제415조까지와 제422조·제424조부터 제427조까지와 제4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일] 第431條 不可分債務カ可分債務ニ變シタルトキハ各債權者ハ自己ノ部分ニ付テノミ履行ヲ請求スルコトヲ得 又各債務者ハ其負擔部分ニ付テノミ履行ノ責ニ任ス

**【류】** 제412조 (可分債權, 可分債務로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김】**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로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이나 가분∨채무로 변경된 경우에(또는 ‘변경되었을 때에’)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순】** 제412조 [가분채권(可分債權)·가분채무(可分債務)로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경우에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해】** ‘가분’은 ‘분리할 수 있는’으로 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제 3 관 연대채무(連帶債務)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일] -없음

[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김]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한 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또는 ‘될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순**】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432條 數人カ連帶債務ヲ負擔スルトキハ債權者ハ其債務者ノ一人ニ對シ又ハ同時若クハ順次ニ總債務者ニ對シテ全部又ハ一部ノ履行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또는 동시나 차례대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 ‘순차’는 ‘차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433條 連帶債務者ノ一人ニ付キ法律行爲ノ無効又ハ取消ノ原因ノ存スル爲メ他ノ債務者ノ債務ノ効力ヲ妨クルコトナシ

[류] 제415조 (채무자에게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제415조 【특정 연대 채무자에게 발생한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제415조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무효·취소]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일] 第434條 連帶債務者ノ一人ニ對スル履行ノ請求ハ他ノ債務者ニ對シテモ其効力ヲ生ス

[류]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김]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순】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경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일] 第435條 連帶債務者ノ一人ト債權者トノ間ニ更改アリタルトキハ債權ハ總債務者ノ利益ノ爲メニ消滅ス

[류] 제417조 (更改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김] 제417조 【경개(更改)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중 한 명과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更改)가 있을 때에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이 소멸된다.

【순】 제417조 [경개(更改)의 절대적 효력]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계가 있을 때에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일] 第436條 ① 連帶債務者ノ一人カ債權者ニ對シテ債權ヲ有スル場合ニ於テ其債務者カ相殺ヲ援用シタルトキハ債權ハ總債務者ノ利益ノ爲メニ消滅ス

② 右ノ債權ヲ有スル債務者カ相殺ヲ援用セサル間ハ其債務者ノ負擔部分ニ付テノミ他ノ債務者ニ於テ相殺ヲ援用スルコトヲ得

[류] 제418조 (相計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김] 제418조 【맞계산의 절대적 효력】 ①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맞계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이 소멸된다.

② 맞계산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맞계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맞계산할 수 있다.

**【순】 제418조 [상계(相計)의 절대적 효력]** ①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상계하였을 때에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해】** ‘상계’를 ‘맞계산’이나 ‘상호계산’으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일] 第437條 連帶債務者ノ一人ニ對シテ爲シタル債務ノ免除ハ其債務者ノ負擔部分ニ付テノミ他ノ債務者ノ利益ノ爲メニモ其効力ヲ生ス

[류]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김]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순】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일] 第438條 連帶債務者ノ一人ト債權者トノ間ニ混同アリタルトキハ其債務者ハ弁濟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420조 (混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김]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중 한 명과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순】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일] 第439條 連帶債務者ノ一人ノ爲メニ時効カ完成シタルトキハ其債務者ノ負担部分ニ付テハ他ノ債務者モ亦其義務ヲ免ル

[류]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김] 제421조 【소멸 시효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순】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일] -없음

[류]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김]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순**】 제422조 [채권자지연의 절대적 효력]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연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일] 第440條 前6條ニ掲ケタル事項ヲ除ク外連帶債務者ノ一人ニ付キ生シタル事項ハ他ノ債務者ニ對シテ其効力ヲ生セス

[류]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16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김]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 원칙】 제416조부터 제422조까지의 사항 ∨ 외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순**】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16조부터 제422조까지의 사항 ∨ 외에는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 -없음

[류]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일] 第442條 ① 連帶債務者ノ一人カ債務ヲ弁済シ其他自己ノ出捐ヲ以テ共同ノ免責ヲ得タルトキハ他ノ債務者ニ對シ其各自ノ負擔部分ニ付キ求償權ヲ有ス

② 前項ノ求償ハ弁済其他免責アリタル日以後ノ法定利息及ヒ避クルコトヲ得サリシ費用其他ノ損害ノ賠償ヲ包含ス

[류] 제425조 (재산출원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재산출원으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김] 제425조 【재산출원채무자의 구상권(求償權)】 ①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재산출원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또는 ‘되었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앞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

**[순]** 제425조 [출자채무자의 보상청구권] ①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자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청구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해】 ‘출재’는 ‘재산출연’으로 순화하기 보다는 ‘출자’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됨.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일] 第443條 ①連帶債務者ノ一人カ債權者ヨリ請求ヲ受ケタルコトヲ他ノ債務者ニ通知セシテ弁済ヲ爲シ其他自己ノ出捐ヲ以テ共同ノ免責ヲ得タル場合ニ於テ他ノ債務者カ債權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ヘキ事由ヲ有セシトキハ其負擔部分ニ付キ之ヲ以テ其債務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 但相殺ヲ以テ之ニ對抗シタルトキハ過失アル債務者ハ債權者ニ對シ相殺ニ因リテ消滅スヘカリシ債務ノ履行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連帶債務者ノ一人カ弁済其他自己ノ出捐ヲ以テ共同ノ免責ヲ得タルコトヲ他ノ債務者ニ通知スルコトヲ怠リタルニ因リ他ノ債務者カ善意ニテ債權者ニ弁済ヲ爲シ其他有償ニ免責ヲ得タルトキハ其債務者ハ自己ノ弁済其他免責ノ行爲ヲ有効ナリシモノト看做スコトヲ得

[류]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그밖의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그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밖의 유상(有償)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김] 제426조 【구상∨요건이 되는 통지】 ①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맞계산인 경우에(또는 ‘맞계산일 때에’) 맞계산으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변제하거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밖의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순] 제426조 [보상청구요건으로서의 통지] ①한 사람의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자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경우에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한 사람의 연대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자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의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

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일] 第444條 連帶債務者中ニ償還ヲ爲ス資力ナキ者アルトキハ其償還スルコト能ハサル部分ハ求償者及ヒ他ノ資力アル者ノ間ニ其各自ノ負擔部分ニ應シテ之ヲ分割ス 但求償者ニ過失アルトキハ他ノ債務者ニ對シテ分担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第445條 連帶債務者ノ一人カ連帶ノ免除ヲ得タル場合ニ於テ他ノ債務者中ニ弁濟ノ資力ナキ者アルトキハ債權者ハ其無資力者カ弁濟スルコト能ハサル部分ニ付キ連帶ノ免除ヲ得タル者カ負擔スヘキ部分ヲ負擔ス

[류] 제427조 (償還無資力者の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금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삭제>

[김] 제427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경제적 능력(또는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求償權者)와 다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분담하라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금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대의 면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순】** 제427조 [상환(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V중에 상환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채무자의 부담부  
분은 보상청구권자 및 다른 자금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보상청구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다  
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금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부담  
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대의 면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채무자  
가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 ‘무자력’은 ‘자금(경제적)능력이 없는’으로, ‘자력’은 ‘자금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 4 관 보증채무(保證債務)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일] 第446條 保證人ハ主タル債務者カ其債務ヲ履行セサル場合ニ於テ其  
履行ヲ爲ス責ニ任ス

-제2항 없음

[류]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김] 제428조 **【보증V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순】**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고 주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보증인의 책임액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보증인의 책임을 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방식의 하자는 그 한도에서 치유된다.

**[류]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로 표시되고 주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그 문서에 보증인의 책임액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보증인의 책임을 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의 하자는 그 한도에서 치유된다.

**[순]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서명 또는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로써 표시되고, 주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보증인의 책임금액이 적혀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보증인의 책임을 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방식의 하자는 그 범위에서 치유된다.

**[해]** ‘치유’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일] 第447條** ①保証債務ハ主タル債務ニ關スル利息、違約金、損害賠償其他總テ其債務ニ從タルモノヲ包含ス

②保証人ハ其保証債務ニ付テノミ違約金又ハ損害賠償ノ額ヲ約定スルコトヲ得

[류]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밖의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김]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 배상, 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순】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일] 第448條 保証人ノ負擔カ債務ノ目的又ハ体様ニ付キ主タル債務ヨリ重キトキハ之ヲ主タル債務ノ限度ニ減縮ス

[류]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附從性)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운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김]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附從性)】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보증인의 부담을 감축한다.

【순】 제430조 [목적·형태상의 부종성(附從性)]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주채무의 범위로 줄여진다.

【해】 ‘한도’는 이 법조문에서는 ‘범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축’은 ‘줄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450條 ①債務者カ保証人ヲ立ツル義務ヲ負フ場合ニ於テハ其保証人ハ左ノ條件ヲ具備スル者タルコトヲ要ス

1. 能力者タルコト

2. 弁濟ノ資力ヲ有スルコト

②保証人カ前項第2号ノ條件ヲ欠クニ至リタルトキハ債權者ハ前項ノ條件ヲ具備スル者ヲ以テ之ニ代フルコト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③前2項ノ規定ハ債權者カ保証人ヲ指名シタル場合ニハ之ヲ適用セス

[류]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 능력과 변제 능력(또는 ‘자금 능력,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 능력(또는 ‘자금 능력, 빚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되었을 때’)에 채권자는 보증인을 변경해 줄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금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일] 第451條 債務者カ前條ノ條件ヲ具備スル保証人ヲ立ツ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他ノ担保ヲ供シテ之ニ代フルコトヲ得

[류] 제432조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김] 제432조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순**】 제432조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일] -없음

[류]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김]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순**】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 第457條 ②保証人ハ主タル債務者ノ債權ニ依リ相殺ヲ以テ債權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

[류]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vee$ 상계권(相計權)】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행한 matched asset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순】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vee$ 상계권(相計權)]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행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김]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vee$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있는 동안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순】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vee$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취소권이나 해제권(解除權) 또는 해지권(解止權)이 있는 동안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일] 第449條 能力ノ制限ニ因リテ取消スコトヲ得ヘキ債務ヲ保証シタル者カ保証契約ノ当時其取消ノ原因ヲ知リタルトキハ主タル債務者ノ不履行又ハ其債務ノ取消ノ場合ニ付キ同一ノ目的ヲ有スル獨立ノ債務ヲ負擔シタルモノト推定ス

[류] 제436조 <삭제>

[김]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할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보증 ∨ 계약 ∨ 당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이나 취소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 ∨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순]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할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보증 계약 ∨ 당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해] 제436조는 개정안에서 삭제됨.

[개] 제436조의2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류] 제436조의2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바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순]** 제436조의2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금·이자·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어긴 경우에 보증인은 손해를 입은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452條 債權者カ保証人ニ債務ノ履行ヲ請求シタルトキハ保証人ハ先ツ主タル債務者ニ催告ヲ爲スヘキ旨ヲ請求スルコトヲ得 但主タル債務者カ破産ノ宣告ヲ受ケ又ハ其行方カ知レサ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第453條 債權者カ前條ノ規定ニ從ヒ主タル債務者ニ催告ヲ爲シタル後ト雖モ保証人カ主タル債務者ニ弁濟ノ資力アリテ且執行ノ容易ナルコトヲ証明シタルトキハ債權者ハ先ツ主タル債務者ノ財産ニ付キ執行ヲ爲スコトヲ要ス

第454條 保証人カ主タル債務者ト連帶シテ債務ヲ負 シタルトキハ前2條ニ定メタル權利ヲ有セス

[류] 제437조 (보증인의催告,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437조 **【최고, 검색을 요구할 보증인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또는 ‘-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라고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437조 [보증인의 통지·조사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 ‘검색’은 ‘검사’ 혹은 ‘조사’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됨.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일] 第455條 第452條及ヒ第453條ノ規定ニ依リ保証人ノ請求アリタルニ拘ハラズ債權者カ催告又ハ執行ヲ爲スコトヲ怠リ其後主タル債務者ヨリ全部ノ弁済ヲ得サルトキハ保証人ハ債權者カ直チニ催告又ハ執行ヲ爲セハ弁済ヲ得ヘカリシ限度ニ於テ其義務ヲ免ル

[류] 제438조 (催告, 檢索을 게을리한 효과) 제4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게을리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김] 제438조 **【최고나 검색을 게을리 한 효과】** 앞 V 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항변이 있었지만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채무자에게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순]** 제438조 [통지·조사를 게을리한 효과] 제437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게으름으로 채무자에게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게으르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 第456條 數人ノ保証人アル場合ニ於テハ其保証人カ各別ノ行爲ヲ以テ債務ヲ負擔シタルトキト雖モ第427條ノ規定ヲ適用ス

[류]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김] 제439조 **【공동 보증(共同保證)의 분별의 이익】**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순]**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分別)의 이익]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 ‘분별’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일] 第457條 ①主タル債務者ニ對スル履行ノ請求其他時効ノ中斷ハ保証人ニ對シテモ其効力ヲ生ス

[류] 제440조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김] 제440조 **【시효 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순]**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채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459條 ①保証人カ主タル債務者ノ委託ヲ受ケテ保証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過失ナクシテ債權者ニ弁済スヘキ裁判言渡ヲ受ケ又ハ主タル債務者ニ代ハリテ弁済ヲ爲シ其他自己ノ出捐ヲ以テ債務ヲ消滅セシムヘキ行爲ヲ爲シタルトキハ其保証人ハ主タル債務者ニ對シテ求償權ヲ有ス

②第442條第2項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441조 (受託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없이 변제 그밖의 재산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vee$ 없이 변제하거나 그 밖의 재산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 $\vee$ 제2항의 규정은 앞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441조 [수탁보증인(受託保證人)의 보상청구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vee$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자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있다.

②제425조 $\vee$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460條 保証人カ主タル債務者ノ委託ヲ受ケテ保証ヲ爲シタルトキハ其保証人ハ左ノ場合ニ於テ主タル債務者ニ對シテ予メ求償權ヲ行フコトヲ得

1. 主タル債務者カ破産ノ宣告ヲ受ケ且債權者カ其財團ノ配當ニ加入セサルトキ

2. 債務カ弁濟期ニ在ルトキ但保証契約ノ後債權者カ主タル債務者ニ許与シタル期限ハ之ヲ以テ保証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3. 債務ノ弁濟期カ不確定ニシテ且其最長期ヲモ確定スルコト能ハサル場合ニ於テ保証契約ノ後10年ヲ經過シタルトキ

[류] 제442조 (受託保證人の 事前求償權)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락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過失)∨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았을 때

2. 주채무자가 파산 $\vee$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 재단(破産財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 $\vee$ 계약 $\vee$ 후 5년 $\text{\u2264}$ 이 경과하였을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다쳐왔을 때
- ②앞항 $\vee$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 $\vee$ 계약 $\vee$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락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보상청구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음 각 $\vee$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미리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 $\vee$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았을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破産財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vee$ 후 5년 $\text{\u2264}$ 이 경과하였을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 ②제1항 $\vee$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vee$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락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일] 第461條 ①前 2 條ノ規定ニ依リ主タル債務者カ保證人ニ對シテ賠償ヲ爲ス場合ニ於テ債權者カ全部ノ弁濟ヲ受ケサル間ハ主タル債務者ハ保證人ヲシテ擔保ヲ供セシメ又ハ之ニ對シテ自己ニ免責ヲ得セシムヘキ旨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右ノ場合ニ於テ主タル債務者ハ供託ヲ爲シ, 擔保ヲ供シ又ハ保證人ニ免責ヲ得セシノテ其賠償ノ義務ヲ免ルルコトヲ得

[류] 제443조 (주채무자의 免責請求)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김]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앞 조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순】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2조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채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채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일] 第462條 ①主タル債務者ノ委託ヲ受ケスシテ保証ヲ爲シタル者カ債務ヲ弁濟シ其他自己ノ出捐ヲ以テ主タル債務者ニ其債務ヲ免レシメタルトキハ主タル債務者ハ其当時利益ヲ受ケタル限度ニ於テ賠償ヲ爲スコトヲ要ス

第462條 ②主タル債務者ノ意思ニ反シテ保証ヲ爲シタル者ハ主タル債務者カ現ニ利益ヲ受クル限度ニ於テノミ求償權ヲ有ス 但主タル債務者カ

求償ノ日以前ニ相殺ノ原因ヲ有セシコトヲ主張スルトキハ保証人ハ債權者ニ對シ其相殺ニ因リテ消滅スヘカリシ債務ノ履行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444조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 그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위반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 그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의 원인이 있었음을 주장한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김] 제444조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되게 하였을 때에는,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그 보증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또는 ‘-를 거슬러’) 보증인이 된 사람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되게 하였을 때에는 주채무자가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앞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은 날 이전에 맞계산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을 때에는 그 맞계산으로 소멸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순] 제444조 [부탁받지 않은 보증인의 보상청구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고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자로 주채무를 소멸하였을 때에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얻은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거슬러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자로 주채무를 소멸하였을 때에 주채무자는 이익이 남아있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보상청구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을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채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채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입] 第463條 ①第443條ノ規定ハ保証人ニ之ヲ準用ス

②保証人カ主タル債務者ノ委託ヲ受ケテ保証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善意ニテ弁済其他免責ノ爲メニスル出捐ヲ爲シタルトキハノ規定ハ主タル債務者ニモ亦之ヲ準用ス

[류]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그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그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밖의 유상(有償)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김] 제445조 【구상√요건이 되는(또는 ‘~으로 성립하는’)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맞계산인 경우에는(또는 ‘-일 때에는’) 맞계산으로 소멸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 출연으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밖의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순]** 제445조 [보상청구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자로 주채무를 소멸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경우에는 상계로 소멸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자로 면책되었다는 것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의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일] 第463條 ②保証人カ主タル債務者ノ委託ヲ受ケテ保証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善意ニテ弁済其他免責ノ爲メニスル出捐ヲ爲シタルトキハ第443條ノ規定ハ主タル債務者ニモ亦之ヲ準用ス

[류]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된 사실을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밖의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김]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자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밖의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순]**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된 사실을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의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하였을 때에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일] 第464條 連帶債務者又ハ不可分債務者ノ一人ノ爲メニ保証ヲ爲シタル者ハ他ノ債務者ニ對シテ其負擔部分ノミニ付キ求償權ヲ有ス

[류] 제447조 (連帶, 不可分債務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김] 제447조 【연대 채무, 불가분 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연대 채무자 중 한 명이나 불가분 채무자 중 한 명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른 연대 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순]** 제447조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보증인의 보상청구권] 한 사람의 연대채무자나 한 사람의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보상청구권이 있다.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465條 ①數人ノ保証人アル場合ニ於テ主タル債務カ不可分ナル爲メ又ハ各保証人カ全額ヲ弁済スヘキ特約アル爲メ一人ノ保証人カ全額其他自己ノ負擔部分ヲ超ユル額ヲ弁済シタルトキハ第442條乃至第444條ノ規定ヲ準用ス

②前項ノ場合ニ非シテ互ニ連帶セサル保証人ノ一人カ全額其他自己ノ負擔部分ヲ超ユル額ヲ弁済シタルトキハ第462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서로 연대(連帶)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48조 【공동 보증인 ∨ 간의 구상권】 ①보증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보증인 중 한 명이 자기의 부담 ∨ 부분을 넘어선 변제를 하였을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 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보증인 중 한 명이 자기의 부담 ∨ 부분을 넘어선 변제를 하였을 때에는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48조 [공동보증인 사이의 보상청구권] ①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의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변제를 하였을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한 명의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변제를 하였을 때에는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제448조의2 (근보증)** ①보증은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②근보증에 의한 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류] 제448조의2 (근보증)** ①보증은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근보증에 의한 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순] 제448조의2 [근보증(根保證)]** ①보증은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근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sup>2</sup>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따른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 제448조의3 (근보증기간)** ①근보증의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3년으로 단축한다.

②근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③근보증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때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

**[류] 제448조의3 (근보증기간)** ①근보증의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때에는 3년으로 단축된다.

- ②근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③근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때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

**【순】 제448조의3 [근보증기간]** ①근보증의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때에는 3년으로 단축한다.

- ②근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③근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하였을 때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

**[개] 제448조의4 (근보증의 해지)**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류] 제448조의4 (근보증의 해지)**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448조의4 [근보증의 해지]**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절 채권의 양도(債權의 讓渡)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466條** ①債權ハ之ヲ讓渡スコトヲ得但其性質カ之ヲ許ササ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 ②前項ノ規定ハ当事者カ反對ノ意思ヲ表示シタル場合ニハ之ヲ適用セス但其意思表示ハ之ヲ以テ善意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467條 ①指名債權ノ讓渡ハ讓渡人カ之ヲ債務者ニ通知シ又ハ債務者カ之ヲ承諾ス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債務者其他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②前項ノ通知又ハ承諾ハ確定日附アル證書ヲ以テス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債務者以外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450조 (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경우에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 제450조 【지명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채권의 제2양수인 등을 말함)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50조 [지명채권(指名債權)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는 경우에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 第468條 ①債務者カ異議ヲ留メスシテ前條ノ承諾ヲ爲シタルトキハ讓渡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ヘカリシ事由アルモ之ヲ以テ讓受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但債務者カ其債務ヲ消滅セシムル爲メ讓渡人ニ拂渡シタルモノアルトキハ之ヲ取返シ又讓渡人ニ對シテ負擔シタル債務アルトキハ之ヲ成立セサルモノト看做スコトヲ妨ケス

②讓渡人カ讓渡ノ通知ヲ爲シタルニ止マルトキハ債務者ハ其通知ヲ受クルマテニ讓渡人ニ對シテ生シタル事由ヲ以テ讓受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

[류]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제450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이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았을 때에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어도 양도된 채권보다 늦지 않게 이행기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그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

[김]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앞조의 승낙을 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도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채무 소멸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양도인에게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 $\vee$ 통지만을 하였을 때에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양도인에게 대항(또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순**】 제451조 [승낙과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제450조의 승낙을 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였을 때에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안: ③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았을 때에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어도 양도된 채권보다 늦지 않게 이행기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452조 (양도통지와 禁反言)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김]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禁反言)】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을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양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순】 제452조 [양도통지와 의사변복금지(意思顛覆禁止)]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을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해】 ‘금반언’은 법률전문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예: 의사변복금지).

### 제 5 절 채무의 인수(債務의 引受)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債務引受) ①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위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김] 제453조 【채권자와 계약함에 따른 채무 ∨ 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 계약함으로써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또는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해 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또는 ‘-를 거슬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순**】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債務引受)]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 법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일] -없음

[류]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도 같다.

[김] 제454조 【채무자와 계약함에 따른 채무 ∨ 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 맺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가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할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순】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 ①제3자가 채무자와 맺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가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개정안: ③채권자가 제1항의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3자는 채무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일] -없음

**[류] 제455조 (승낙 여부의 최고)** ①제454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김] 제455조 【승낙V여부의 최고】** ①앞 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V여부의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를 채권자에게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V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순】 제455조 [승낙V여부의 통지]** ①제454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V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 $\vee$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김] 제456조 【채무 $\vee$ 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 $\vee$ 간의 계약에 따른 채무 $\vee$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 $\vee$ 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순**】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와 변경]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 $\vee$ 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김] 제457조 【채무 $\vee$ 인수의 소급효】 제삼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인수 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 $\vee$ 표시가 없으면 채무 인수 계약을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순】**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하였을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458조 (前債務者の 대항사유) ①인수인은 전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인수인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전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김] 제458조 **【전(前) 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순】** 제458조 [전(前)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안: ②인수인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로써 전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없음

[류]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前債務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말미암아 소

멸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순]**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및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 6 절 채권의 소멸(債權의 消滅)

### 제 1 관 변 제(辨濟)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일] 第493條 弁濟ノ提供ハ債務ノ本旨ニ從ヒテ現實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但債權者カ予メ其受領ヲ拒ミ又ハ債務ノ履行ニ付キ債權者ノ行爲ヲ要スルトキハ弁濟ノ準備ヲ爲シタルコトヲ通知シテ其受領ヲ催告スルヲ以テ足ル

[류]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김]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완료를 알리고, 그 수령을 재촉하는 통지를 하면 된다.

**[순]**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라 직접 건내는 방법으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가 끝났다는 것과 그 수령을 통지하면 된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현실제공’을 법률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법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직접 건넨’ 등으로 풀어쓰므로써 이해를 쉽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일] 第492條 弁濟ノ提供ハ其提供ノ時ヨリ不履行ニ因リテ生スヘキ一切ノ責任ヲ免レシム

[류]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을 한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

[김] 제461조 【변제 제공의 효과】 채무자는 변제를 제공한 시점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

【순】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채무자는 변제를 제공한 때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일] 第483條 債權ノ目的カ特定物ノ引渡ナルトキハ弁濟者ハ其引渡ヲ爲スヘキ時ノ現狀ニテ其物ヲ引渡スコトヲ要ス

[류] 제462조 (특정물의 現狀引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재 상태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김]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現狀)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또는 ‘목적일 때에’)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재 상태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순】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재 상태 그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해】 ‘현상인도’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문에 사용될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475條 弁濟者カ他人ノ物ヲ引渡シタルトキハ更ニ有効ナル弁濟ヲ爲スニ非サレハ其物ヲ取戻スコトヲ得ス

[류] 제463조 (변제로서의 다른 사람의 물건인도) 채무의 변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463조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463조 [변제로서 다른 사람의 물건인도] 채무의 변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476條 讓渡ノ能力ナキ所有者カ弁濟トシテ物ノ引渡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其弁濟ヲ取消シタルトキハ其所有者ハ更ニ有効ナル弁濟ヲ爲スニ非サレハ其物ヲ取戻スコトヲ得ス

[류] 제464조 (양도능력이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김] 제464조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464조 [양도능력이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 第477條 前2條ノ場合ニ於テ債權者カ弁濟トシテ受ケタル物ヲ善意ニテ消費シ又ハ讓渡シタルトキハ其弁濟ハ有効トス 但債權者カ第三者ヨリ賠償ノ請求ヲ受ケタルトキハ弁濟者ニ對シテ求償ヲ爲スコトヲ妨ケス

**[류]**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제463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V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제463조, 제464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에게 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善意消費)·양도와 보상청구권] ① 제463조와 제464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서 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일] 第482條 債務者カ債權者ノ承諾ヲ以テ其負擔シタル給付ニ代ヘテ他ノ給付ヲ爲シタルトキハ其給付ハ弁済ト同一ノ効力ヲ有ス

[류] 제466조 (代物辨濟)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김] 제466조 【대물 변제(代物辨濟)】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 이행을 대신하여 다른 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순】 제466조 [대물변제(代物辨濟)]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해】 ‘대물변제’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일] 第484條 弁済ヲ爲スヘキ場所ニ付キ別段ノ意思表示ナキトキハ特定物ノ引渡ハ債權發生ノ當時其物ノ存在セシ場所ニ於テ之ヲ爲シ其他ノ弁済ハ債權者ノ現時ノ住所ニ於テ之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김]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現)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순]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재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재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일] 第474條 ①債務ノ弁濟ハ第三者之ヲ爲スコトヲ得但其債務ノ性質カ之ヲ許ササルトキ又ハ當事者カ反對ノ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利害ノ關係ヲ有セサル第三者ハ債務者ノ意思ニ反シテ弁濟ヲ爲スコトヲ得ス

[류]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김]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이해 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또는 ‘-를 거슬러’) 변제하지 못한다.

【순】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를 거슬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일] 第478條 債權ノ準占有者ニ爲シタル弁濟ハ弁濟者ノ善意ナリシトキニ限リ其効力ヲ有ス

[류] 제470조 (채권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김]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순】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480條 受取証書ノ持參人ハ弁濟受領ノ權限アルモノト看做ス但弁濟者カ其權限ナキコトヲ知リタルトキ又ハ過失ニ因リテ之ヲ知ラサリシ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471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일] 第479條 前條ノ場合ヲ除ク外弁濟受領ノ權限ヲ有セサル者ニ爲シタル  
弁濟ハ債權者カ之ニ因リテ利益ヲ受ケタル限度ニ於テノミ其効力ヲ有ス

[류] 제472조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 제470조의 경우 외에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김] 제472조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 제470조, 제471조의 경  
우 ∨ 외에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순】** 제472조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 제470조와 제471조의  
경우 ∨ 외에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  
익을 얻은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  
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일] 第485條 弁濟ノ費用ニ付キ別段ノ意思表示ナキトキハ其費用ハ債務者  
之ヲ負擔ス但債權者カ住所ノ移轉其他ノ行爲ニ因リテ弁濟ノ費用ヲ増加  
シタルトキハ其増加額ハ債權者之ヲ負擔ス

[류]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  
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김] 제473조 **【변제 ∨ 비용의 부담】** 변제 ∨ 비용은 다른 의사 ∨ 표시가 없  
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 이전, 그 밖의 행위로  
변제 ∨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또는 ‘되었을 때에’) 그 증가액은 채권자  
가 부담한다.

**【순】**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변제비  
용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486條 弁濟者ハ弁濟受領者ニ對シテ受取証書ノ交付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일] 第487條 債權ノ証書アル場合ニ於テ弁濟者カ全部ノ弁濟ヲ爲シタルトキハ其証書ノ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김]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순】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제476조 (지정변제총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

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으로써 한다.

[일] 第488條 ①債務者カ同一ノ債權者ニ對シテ同種ノ目的ヲ有スル數個ノ債務ヲ負擔スル場合ニ於テ弁濟トシテ提供シタル給付カ總債務ヲ消滅セシムルニ足ラサルトキハ弁濟者ハ給付ノ時ニ於テ其弁濟ヲ充當スヘキ債務ヲ指定スルコトヲ得

②弁濟者カ前項ノ指定ヲ爲ササルトキハ弁濟受領者ハ其受領ノ時ニ於テ其弁濟ノ充當ヲ爲スコトヲ得 但弁濟者カ其充當ニ對シテ直チニ異議ヲ述ヘ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③前2項ノ場合ニ於テ弁濟ノ充當ハ相手方ニ對スル意思表示ニ依リテ之ヲ爲ス

[류] 제476조 (指定辨濟充當)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제1항의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제1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으로써 한다.

[김]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를 제공하더라도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에 변제자는 그 당시 채무 중의 하나(또는 ‘어떤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앞항의 지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받는 사람이 그 당시 채무 중의 하나(또는 ‘어떤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③제1항, 제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순]** 제476조 [변제의 지정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에 변제자는 당시 채무 중의 하나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제1항의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 변제를 받은 사람은 당시 채무 중의 하나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일] 第489條 当事者カ弁濟ノ充當ヲ爲ササルトキハ左ノ規定ニ從ヒ其弁濟ヲ充當ス

1. 總債務中弁濟期ニ在ルモノト弁濟期ニ在ラサルモノトアルトキハ弁濟期ニ在ルモノヲ先ニス
2. 總債務カ弁濟期ニ在ルトキ又ハ弁濟期ニ在ラサルトキハ債務者ノ爲メニ弁濟ノ利益多キモノヲ先ニス
3. 債務者ノ爲メニ弁濟ノ利益相同シキトキハ弁濟期ノ先ツ至リタルモノ又ハ先ツ至ルヘキモノヲ先ニス

4. 前2号ニ掲ゲタル事項ニ付キ相同シキ債務ノ弁済ハ各債務ノ額ニ応シテ之ヲ充当ス

[류] 제477조 (法定辨濟充當)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제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김]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채무∨중에 이행기(履行期)가 다쳐온 것과 다쳐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다쳐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다쳐왔거나 다쳐오지 않았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다쳐온 채무나 먼저 다쳐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제2호, 제3호의 사항이 같은 때(또는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순】 제477조 [법정변제충당(法定辨濟充當)]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이 같을 때에는 그 채무의 가격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490條 一個ノ債務ノ弁濟トシテ數個ノ給付ヲ爲スヘキ場合ニ於テ弁濟者カ其債務ノ全部ヲ消滅セシムルニ足ラサル給付ヲ爲シタルトキハ前2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478조 (부족한 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여러 개의 급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78조 【부족한 변제의 충당】 한 개의 채무에 여러 개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제476조,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78조 [부족한 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여러 개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제476조와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491條 ①債務者カ一個又ハ數個ノ債務ニ付キ元本ノ外利息及ヒ費用ヲ拂フヘキ場合ニ於テ弁濟者カ其債務ノ全部ヲ消滅セシムルニ足ラサル給付ヲ爲シタルトキハ之ヲ以テ順次ニ費用、利息及ヒ元本ニ充當スルコトヲ要ス

②第489條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79조 【비용, 이자, 원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한 개나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79조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499條 ①債務者ノ爲メニ弁濟ヲ爲シタル者ハ其弁濟ト同時ニ債權者ノ承諾ヲ得テ之ニ代位スルコトヲ得

②第467條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450조부터 제4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任意代位)】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제450조부터 제4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任意代位)]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 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450조부터 제4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일] 第500條 弁濟ヲ爲スニ付キ正當ノ利益ヲ有スル者ハ弁濟ニ因リテ當然債權者ニ代位ス

[류] 제481조 (변제자의 法定代位)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김]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法定代位)】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순**】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法定代位)]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

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501條 前2條ノ規定ニ依リテ債權者ニ代位シタル者ハ自己ノ權利ニ基キ求償ヲ爲スコトヲ得ヘキ範圍内ニ於テ債權ノ効力及ヒ担保トシテ其債權者カ有セシ一切ノ權利ヲ行フコトヲ得 但左ノ規定ニ從フコトヲ要ス

1. 保証人ハ予メ先取特權、不動産質權又ハ抵当權ノ登記ニ其代位ヲ附記シタルニ非サレハ其先取特權、不動産質權又ハ抵当權ノ目的タル不動産ノ第三取得者ニ對シテ債權者ニ代位セス
2. 第三取得者ハ保証人ニ對シテ債權者ニ代位セス
3. 第三取得者ノ一人ハ各不動産ノ價格ニ應スルニ非サレハ他ノ第三取得者ニ對シテ債權者ニ代位セス
4. 前号ノ規定ハ自己ノ財産ヲ以テ他人ノ債務ノ担保ニ供シタル者ノ間ニ之ヲ準用ス
5. 保証人ト自己ノ財産ヲ以テ他人ノ債務ノ担保ニ供シタル者トノ間ニ於テハ其頭數ニ應スルニ非サレハ債權者ニ代位セス 但自己ノ財産ヲ以テ他人ノ債務ノ担保ニ供シタル者數人アルトキハ保証人ノ負擔部分ヲ除キ其殘額ニ付キ各財産ノ價格ニ應スルニ非サレハ之ニ對シテ代位ヲ爲スコトヲ得ス 右ノ場合ニ於テ其財産カ不動産ナルトキハ第1号ノ規定ヲ準用ス

[류]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 사이의 관계) ①제4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附記) 하여야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값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람과 보증인 사이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값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제480조, 제48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중의 한 명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앞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람과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와 대위자 사이의 관계] ①제480조와 제48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따라 보상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V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附記) 하여야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 V중의 한 사람은 각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류] 第502條 ①債權ノ一部ニ付キ代位弁済アリタルトキハ代位者ハ其弁済シタル価額ニ応シテ債權者ト共ニ其權利ヲ行フ

②前項ノ場合ニ於テ債務ノ不履行ニ因ル契約ノ解除ハ債權者ノミ之ヲ請求スルコトヲ得但代位者ニ其弁済シタル価額及ヒ其利息ヲ償還スルコトヲ要ス

[류] 제483조 (一部分의 代位)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값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값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김]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vee$ 변제가 있을 때에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채무 $\vee$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순**】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격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격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 第503條 ①代位弁済ニ因リテ全部ノ弁済ヲ受ケタル債權者ハ債權ニ關スル証書及ヒ其占有ニ在ル担保物ヲ代位者ニ交付スルコトヲ要ス

②債權ノ一部ニ付キ代位弁済アリタル場合ニ於テハ債權者ハ債權証書ニ其代位ヲ記入シ且ツ代位者ヲシテ其占有ニ在ル担保物ノ保存ヲ監督セシムルコトヲ要ス

[류]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의 전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김]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를 대위∨변제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와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순】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및 담보물] ①채권∨전부를 대위변제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건내어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일] 第504條 第500條ノ規定ニ依リテ代位ヲ爲スヘキ者アル場合ニ於テ債權者カ故意又ハ懈怠ニ因リテ其担保ヲ喪失又ハ減少シタルトキハ代位ヲ爲スヘキ者ハ其喪失又ハ減少ニ因リ償還ヲ受クル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限度ニ於テ其責ヲ免ル

[류]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사람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김]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대위할 사람이 상실이나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대위할 책임을 면한다.

**【순】**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및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할 사람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대위할 사람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해】**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486조 (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채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그밖에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제4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486조 【변제∨이외의 방법에 따른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이나 그 밖에 자기의 재산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제480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486조 [변제∨이외의 방법에 따른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그 밖의 자기 출자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제480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 관 공 탁(供託)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일] 第494條 債權者カ弁濟ノ受領ヲ拒ミ又ハ之ヲ受領スルコト能ハサル  
トキハ弁濟者ハ債權者ノ爲メニ弁濟ノ目的物ヲ供託シテ其債務ヲ免ルル  
コトヲ得 弁濟者ノ過失ナクシテ債權者ヲ確知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亦同シ

[류]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  
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도 같다.

[김]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  
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순】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  
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일] 第495條 ①供託ハ債務履行地ノ供託所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

②供託所ニ付キ法令ニ別段ノ定ナキ場合ニ於テハ裁判所ハ弁濟者ノ請求  
ニ因リ供託所ノ指定及ヒ供託物保管者ノ選任ヲ爲スコトヲ要ス

③供託者ハ遲滯ナク債權者ニ供託ノ通知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  
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공탁을 한 후 바로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김]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순】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공탁을 한 후 바로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496條 ①債權者カ供託ヲ受諾セス又ハ供託ヲ有効ト宣告シタル判決カ確定セサル間ハ弁済者ハ供託物ヲ取戻スコトヲ得 此場合ニ於テハ供託ヲ爲ササリシモノト看做ス

②前項ノ規定ハ供託ニ因リテ質權又ハ抵当權カ消滅シタル場合ニハ之ヲ適用セス

[류]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을 것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앞항의 규정은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回收)]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을 것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일] 第497條 弁濟ノ目的物カ供託ニ適セス又ハ其物ニ付キ滅失若クハ毀損ノ虞アルトキハ弁濟者ハ裁判所ノ許可ヲ得テ之ヲ競賣シ其代価ヲ供託スルコトヲ得 其物ノ保存ニ付キ過分ノ費用ヲ要スルトキ亦同シ

[류] 第490條 (自助賣却金の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김] 제490조 【자조 매각금(自助賣却金)의 공탁】 변제하는 목적물이 공탁하는 데 적당하지 않거나 (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공탁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판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순]** 제490조 [자기매각대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판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해】 ‘자조매각금’은 ‘자기매각대금’으로, ‘방매’는 ‘판매’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일] 第498條 債務者カ債權者ノ給付ニ對シテ弁濟ヲ爲スヘキ場合ニ於テハ債權者ハ其給付ヲ爲スニ非サレハ供託物ヲ受取ルコトヲ得ス

[류]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환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여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

[김]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순】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동시의무이행] 채권자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해】 ‘상대의무이행’은 ‘동시의무이행’으로 순화하는 것이 용어의 통일적 이해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제3관 상계(相計)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으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05條 ①2人互ニ同種ノ目的ヲ有スル債務ヲ負擔スル場合ニ於テ双方ノ債務カ弁濟期ニ在ルトキハ各債務者ハ其對當額ニ付キ相殺ニ因リテ其債務ヲ免ルルコトヲ得但債務ノ性質カ之ヲ許ササ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前項ノ規定ハ當事者カ反對ノ意思ヲ表示シタル場合ニハ之ヲ適用セス  
但其意思表示ハ之ヲ以テ善意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492조 【맞계산의 요건】 ①양쪽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양쪽의 채무 이행기가 다쳐왔을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한 금액끼리 맞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맞계산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앞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양쪽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양쪽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한 금액끼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 ‘상계’는 ‘맞계산’ 혹은 ‘상호계산’으로 순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대등액’은 ‘대등한 금액’으로 풀어쓰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함.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일] 第506條 ①相殺ハ当事者ノ一方ヨリ其相手方ニ對スル意思表示ニ依リテ之ヲ爲ス但其意思表示ニハ條件又ハ期限ヲ附スルコトヲ得ス

②前項ノ意思表示ハ双方ノ債務カ互ニ相殺ヲ爲スニ適シタル始ニ遡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김] 제493조 【맞계산의 방법, 효과】 ①맞계산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각 채무가 맞계산을 허용하는 성질일 때에 맞계산의 의사표시를 하면 대등한 금액끼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순】 제493조 [상계의 방법과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한 금액끼리 소멸된 것으로 본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507條 相殺ハ双方ノ債務ノ履行地カ異ナルトキト雖モ之ヲ爲スコトヲ得但相殺ヲ爲ス当事者ハ其相手方ニ對シ之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ヲ賠償スルコトヲ要ス

[류] 제494조 (履行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할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맞계산】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맞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맞계산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맞계산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494조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일] 第508條 時効ニ因リテ消滅シタル債權カ其消滅以前ニ相殺ニ適シタル場合ニ於テハ其債權者ハ相殺ヲ爲スコトヲ得

[류]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김] 제495조 【소멸 시효가 완료된 채권으로 하는 맞계산】 소멸 시효가 완료된 채권이 소멸 시효 완료 시점 이전에 맞계산(또는 ‘엇셈’)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비록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 그 채권자는 맞계산(또는 ‘엇셈’)할 수 있다.

**[순]**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의 상계]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이 그 완료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09條 債務カ不法行爲ニ因リテ生シタルトキハ其債務者ハ相殺ヲ以テ債權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496조 【불법 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맞계산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일 때에는 그 채무자는 맞계산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일 때에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10條 債權カ差押ヲ禁シタルモノナルトキハ其債務者ハ相殺ヲ以テ債權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맞계산의 금지】** 채권의 성질상 압류하지 못할 채권인 경우에 그 채무자는 맞계산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하는 것인 때에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11條 支拂ノ差止ヲ受ケタル第三債務者ハ其後ニ取得シタル債權ニ依リ相殺ヲ以テ差押債權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맞계산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따른 맞계산으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따른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일] 第512條 第488條乃至第491條ノ規定ハ相殺ニ之ヲ準用ス

[류]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된다.

[김]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은 맞계산에 준용한다.

**【순】**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 제 4 관 경 개(更改)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일] 第513條 ①当事者カ債務ノ要素ヲ変更スル契約ヲ爲シタルトキハ其債務ハ更改ニ因リテ消滅ス

[류] 제500조 (更改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구채무(舊債務)는 경개로 소멸한다.

[김] 제500조 **【경개(更改)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 구채무는 경개로 말미암아 소멸된다.

**【순】** 제500조 [경개(更改)의 요건과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 구(舊)채무는 경개로 소멸된다.

**【해】** ‘更改’는 적절한 순화어로 대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일] 第514條 債務者ノ交替ニ因ル更改ハ債權者ト新債務者トノ契約ヲ以テ之ヲ爲スコトヲ得但旧債務者ノ意思ニ反シテ之ヲ爲スコトヲ得ス

[류]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更改)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新債務者)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舊債務者)의 의사에 위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김]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말미암은 경계】 채무자 변경으로 말미암은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또는 ‘-를 거슬러’) 경계를 하지는 못한다.

【순】 제501조 [채무자∨변경에 따른 경계] 채무자의 변경에 따른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를 거슬러 하지는 못한다.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15條 債權者ノ交替ニ因ル更改ハ確定日附アル証書ヲ以テス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更改)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말미암은 경계】 채권자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경계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이것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502조 [채권자∨변경에 따른 경계) 채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계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계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준용한다.

[일] 第516條 第468條第1項ノ規定ハ債權者ノ交替ニ因ル更改ニ之ヲ準用ス

[류]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更改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준용된다.

[김] 제503조 【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계와 채무자 V 승낙의 효과】 제451조 V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경계에 준용한다.

【순】 제503조 [채권자 V 변경의 경계와 채무자 V 승낙의 효과] 제451조 V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계에 준용한다.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일] 第517條 更改ニ因リテ生シタル債務カ不法ノ原因ノ爲メ又ハ当事者ノ知ラサル事由ニ因リテ成立セス又ハ取消サレタルトキハ旧債務ハ消滅セス

[류] 제504조 (舊債務不消滅의 경우)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못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김] 제504조 【구채무 V 불소멸의 경우】 경계로 말미암은 신채무가, 불법적인 원인이나 당사자가 알지 못했던 사유로 말미암아 성립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순】 제504조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경계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했던 사유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일] 第518條 更改ノ当事者ハ旧債務ノ目的ノ限度ニ於テ其債務ノ担保ニ供シタル質權又ハ抵当權ヲ新債務ニ移スコトヲ得 但第三者カ之ヲ供シタル場合ニ於テハ其承諾ヲ得ルコトヲ要ス

[류] 제505조 (신채무로의 담보이전) 경계의 당사자는 그 목적의 한도에서 구채무의 담보를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김] 제505조 【담보 이전】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순】 제505조 [담보의 이전]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범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 5 관 면 제(免除)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19條 債權者カ債務者ニ對シテ債務ヲ免除スル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其債權ハ消滅ス

[류]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 채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506조 [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6 관 혼 동(混同)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520條 債權及ヒ債務カ同一人ニ歸シタルトキハ其債權ハ消滅ス但其債權カ第三者ノ權利ノ目的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된 때에는 채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된 경우(또는 ‘귀속되었을 때’)에 채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채상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또는 ‘목적일 때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순**】 제507조 [혼동의 요건과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된 경우에 채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 7 절 지시채권(指示債權)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일] 第469條 指図債權ノ讓渡ハ其證書ニ讓渡ノ裏書ヲ爲シテ之ヲ讓受人ニ交付ス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債務者其他ノ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김] 제508조 【지시 채권의 양도 V 방식】 지시 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순**】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양수인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해**】 ‘背書’는 법률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509조 (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09조 (還背書)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김] 제509조 【환배서(還背書)】 ①지시 채권은 그 채무자에게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 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순】 제509조 [재배서(再背書)]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게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해】 ‘환배서’는 ‘재배서’ 혹은 ‘이중배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10조 (背書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補充紙)에 그 뜻을 적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김]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나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순]**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적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서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해]** ‘서명’과 ‘기명’은 표기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하는 용어이지만 구별할 의미상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서명’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11조 (略式背書의 처리방식) 배서가 제510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칭을 피배서인(被背書人)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적지 않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김]**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앞조 제2항의 약식에 따른 것일 때에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배서하거나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순】** 제511조 [약식배서(略式背書)의 처리방식] 배서가 제510조∨제2항의 약식에 따른 것일 때에 소지인(所持人)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적을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적지 않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건넌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일] -없음

[류] 제512조 (所持人出給背書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김]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순】** 제512조 [소지인∨지급배서(支給背書)의 효력] 소지인∨지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해】** ‘출급’은 ‘지급’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일] -없음

[류] 제513조 (背書의 資格授與力)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所持人)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김]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또는 ‘증명할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순】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資格授與力)]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적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없음

[류] 제514조 (證書의 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所持人)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말미암은 경계】 채무자 변경으로 말미암은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채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또는 ‘-를 거슬러’) 경계를 하지는 못한다.

【순】 제514조 [배서의 자격수여력과 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증서를 취득할 때에 양도인이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472條 指図債權ノ債務者ハ其證書ニ記載シタル事項及ヒ其證書ノ性質ヨリ当然生スル結果ヲ除ク外原債權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ヘカリシ事由ヲ以テ善意ノ讓受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515조 (移轉背書와 人的抗辯)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所持人)의 전수취인(前受取人)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침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 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前) 수취인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지시 채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515조 [이전배서(移轉背書)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前)수취인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 ‘이전배서’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일] -없음

[류]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김]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무자의 현(現) 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순**】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무자의 현재∨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일] -없음

[류]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김]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닥쳐온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순**】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연]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부터 채무자는 지연책임이 있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일] 第470條 指図債權ノ債務者ハ其證書ノ所持人及ヒ其署名、捺印ノ眞僞ヲ調査スル權利ヲ有スルモ其義務ヲ負フコトナシ 但債務者ニ惡意又ハ重大ナル過失アルトキハ其弁濟ハ無効トス

[류]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眞僞)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

[김]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할 권리와 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이나 날인의 진위,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할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순】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할 권리와 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眞僞)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할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일] -없음

[류]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김] 제519조 【변제와 증서 ∨ 교부】 채무자가 변제할 때에는 증서와 교환하여야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순】 제519조 [변제와 증서 ∨ 건넌]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520조 (領收의 記入請求權)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김] 제520조 【영수의 기입 ∨ 청구권】 ①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또는 ‘변제할 때에는’) 소지인에게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 ∨ 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순】 제520조 [수령의 기재 청구권] ①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에게 증서에 수령의 증명을 적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失效)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김] 제521조 【공시 최고(公示催告)∨절차에 따른 증서의 실효】 없어진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순】 제521조 [공시통지절차(公示通知節次)에 의한 증서의 효력상실]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통지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 ‘失效’는 ‘효력상실’로 풀어씀으로써 의미전달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김] 제522조 【공시 최고∨절차에 따른 공탁, 변제】 공시 최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순】 제522조 [공시통지절차에 따른 공탁과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절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일] 第86條 ③無記名債權ハ之ヲ動産ト看做ス

[류]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김] 제523조 【무기명 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건넌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순**】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건넌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일] 第473條 前條ノ規定ハ無記名債權ニ之ヲ準用ス

[류]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부터 제522조까지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

[김]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부터 제522조까지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순**】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부터 제522조까지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일] 第471條 前條ノ規定ハ証書ニ債權者ヲ指名シタルモ其証書ノ所持人ニ弁済スヘキ旨ヲ附記シ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附記)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附記)한 증서는 무기명 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순**】 제525조 [지명소지인∨지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附記)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526조 (免責證書)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된다.

[김]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순**】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 제 2 장 계 약(契約)

### 제 1 절 총 칙(總則)

#### 제 1 관 계약의 성립(契約의 成立)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일] 第521條 ①承諾ノ期間ヲ定メテ爲シタル契約ノ申込ハ之ヲ取消スコトヲ得ス

[류]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김] 제527조 【계약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순**】 제527조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해**】 ‘청약’은 계약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으로써 ‘계약의 청약’으로 쓰기보다는 ‘청약’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여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 第521條 ②申込者カ前項ノ期間内ニ承諾ノ通知ヲ受ケサルトキハ申込ハ其効力ヲ失フ

第522條 ①承諾ノ通知カ前條ノ期間後ニ到達シタルモ通常ノ場合ニ於テハ其期間内ニ到達スヘカリシ時ニ發送シタルモノナルコトヲ知り得ヘキトキハ申込者ハ遲滯ナク相手方ニ對シテ其延著ノ通知ヲ發スルコトヲ要ス 但其到達前ニ遲延ノ通知ヲ發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申込者カ前項ノ通知ヲ怠リタルトキハ承諾ノ通知ハ延著セサリシモノト看做ス

[류]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보통 제1항의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그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바로 상대방에게 연착(延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遲延)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청약자가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延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김]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앞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청약자가 앞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순]**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①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제1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 청약자는 바로 상대방에게 지연도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청약자가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 승낙의 통지는 지연도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 ‘延着’은 ‘지연도착’으로 순화하는 것이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됨.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일] 第524條 承諾ノ期間ヲ定メスシテ隔地者ニ爲シタル申込ハ申込者カ承諾ノ通知ヲ受クルニ相当ナル期間之ヲ取消スコトヲ得ス

[류]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김]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적절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순】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일] 第523條 遅延シタル承諾ハ申込者ニ於テ之ヲ新ナル申込ト看做スコトヲ得

[류]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28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김] 제530조 **【연착(延着)된 승낙의 효력】 제528조, 제529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순】 제530조 [지연도착된 승낙의 효력] 제528조와 제529조의** 경우, 지연도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일] 第526條 ①隔地者間ノ契約ハ承諾ノ通知ヲ發シタル時ニ成立ス

[류] 제531조 (隔地者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김] 제531조 **【격지자(隔地者)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순】 제531조 [격지자(隔地者) 사이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해】** ‘격지자’는 적절한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일] 第526條 ②申込者ノ意思表示又ハ取引上ノ慣習ニ依リ承諾ノ通知ヲ必要トセサル場合ニ於テハ契約ハ承諾ノ意思表示ト認ムヘキ事實アリタル時ニ成立ス

[류]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김] 제532조 【의사∨실현에 따른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판단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

【**순**】 제532조 [의사실현(意思實現)에 따른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일] -없음

[류] 제533조 (交叉請約)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김]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순**】 제533조 [교차청약(交叉請約)]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일] 第528條 承諾者カ申込ニ條件ヲ附シ其他變更ヲ加ヘテ之ヲ承諾シタルトキハ其申込ノ拒絶ト共ニ新ナル申込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534조 (변경을 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김] 제534조 【청약 조건을 변경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 조건을 변경하여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 제534조 [청약을 변경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없음

[류]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제535조 【계약V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하여 생길 이익액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생길 이익금액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관 계약의 효력(契約의 效力)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일] 第533條 双務契約当事者ノ一方ハ相手方カ其債務ノ履行ヲ提供スルマテハ自己ノ債務ノ履行ヲ拒ムコトヲ得 但相手方ノ債務カ弁濟期ニ在ラサ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제2항 없음

[류]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본문과 같다.

[김] 제536조 【동시 이행의 항변권】 ①쌍무V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그 채무V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V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또는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앞항 본문과 같다.

**【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본문과 같다.

**【해】** ‘곤란’, ‘현저’ 등의 수식어는 가능하다면 문맥에 맞게 보다 쉽게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536條 ①前2條ニ掲ケタル場合ヲ除ク外當事者双方ノ責ニ歸スヘカラサル事由ニ因リテ債務ヲ履行スル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トキハ債務者ハ反對給付ヲ受クル權利ヲ有セス

[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김]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양쪽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또는 ‘되었을 때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危險負擔主義)]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

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일] 第536條 ②債權者ノ責ニ歸スヘキ事由ニ因リテ履行ヲ爲ス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トキハ債務者ハ反對給付ヲ受クル權利ヲ失ハス但自己ノ債務ヲ免レタルニ因リテ利益ヲ得タルトキハ之ヲ債權者ニ償還スルコトヲ要ス

-제1항 없음

[류]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김]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말미암은 이행∨불가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또는 ‘되었을 때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수령을∨지체하던∨중에 당사자∨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또는 ‘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②앞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또는 ‘얻은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순**】 제538조 [채권자의 책임사유에 따른 이행불가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연∨중에 당사자∨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해]** ‘귀책사유’는 ‘책임사유’ 혹은 ‘책임귀속사유’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이행불능’은 ‘이행불가능’으로 순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일]** 第537條 ①契約ニ依リ当事者ノ一方カ第三者ニ對シテ或給付ヲ爲スヘキコトヲ約シタルトキハ其第三者ハ債務者ニ對シテ直接ニ其給付ヲ請求スル權利ヲ有ス

②前項ノ場合ニ於テ第三者ノ權利ハ其第三者カ債務者ニ對シテ契約ノ利益ヲ享受スル意思ヲ表示シタル時ニ發生ス

**[류]**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김]**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얻을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생긴다.

**[순]**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얻을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일] -없음

[류]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제539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김]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앞 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지(또는 ‘누릴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삼자에게 재촉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얻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순】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통지권] 제539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3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얻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 ‘향수’는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일] 第538條 前條ノ規定ニ依リテ第三者ノ權利カ發生シタル後ハ当事者ハ之ヲ變更シ又ハ之ヲ消滅セシムルコトヲ得ス

[류]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김]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순】 제541조 [제3자의 권리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 第539條 第537條ニ掲ケタル契約ニ基因スル抗弁ハ債務者之ヲ以テ其契約ノ利益ヲ受クヘキ第三者ニ對抗スルコトヲ得

[류]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조의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초한 (또는 ‘기반한’) 항변으로 그 계약으로 이익을 얻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순】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따른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얻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 3 관 계약의 해제, 해지(契約의 解除, 解止)

**【순】 제 3 관 계약의 해제·해지**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일] 第540條 ①契約又ハ法律ノ規定ニ依リ当事者ノ一方カ解除權ヲ有スルトキハ其解除ハ相手方ニ對スル意思表示ニ依リテ之ヲ爲ス

②前項ノ意思表示ハ之ヲ取消スコトヲ得ス

[류]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김]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앞항의 의사 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순】 제543조 [해지·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에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제1항의 의사 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일] 第541條 当事者ノ一方カ其債務ヲ履行セサルトキハ相手方ハ相当ノ期間ヲ定メテ其履行ヲ催告シ若シ其期間内ニ履行ナキトキ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한쪽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또는 ‘않을 때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를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재촉하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순】 제544조 [이행지연와 해제] 당사자 한쪽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고, 그 기

간V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 제544조의2 (채무불이행과 해제) ①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때
3.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류]** 제544조의2 (채무불이행과 해제) ①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때
3.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

**[순]** 제544조의2 [채무불이행과 해제] ①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고, 그 기간 $\vee$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vee$ 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채권자는 다음 각 $\vee$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3.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vee$ 내에 이행하여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 제544조의3 (채무불이행과 해지) ①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장래의 계약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된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류] 제544조의3 (채무불이행과 해지) ①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장래 계약의 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권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약정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544조의3 [채무불이행과 해지]** 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장래 계약의 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채권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된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채권자는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당사자가 계약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류]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당한 때에는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라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순】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 第542條 契約ノ性質又ハ当事者ノ意思表示ニ依リ一定ノ日時又ハ一定ノ期間内ニ履行ヲ爲スニ非サレハ契約ヲ爲シタル目的ヲ達スルコト能ハサル場合ニ於テ当事者ノ一方カ履行ヲ爲サシテ其時期ヲ經過シタルトキハ相手方ハ前條ノ催告ヲ爲サシテ直チニ其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545조 <삭제>

[김]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이나 일정한 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한쪽이 그 시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대방이 앞 조의 재촉하는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순】 제545조 [정기행위(定期行爲)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한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상대방은 제544조의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 第543條 履行ノ全部又ハ一部カ債務者ノ責ニ歸スヘキ事由ニ因リテ不能ト爲リタルトキハ債權者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546조 <삭제>

[김] 제546조 【이행∨불가능과 해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순】 제546조 [이행불가능과 해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일] 第544條 ①当事者ノ一方カ數人アル場合ニ於テハ契約ノ解除ハ其全員ヨリ又ハ其全員ニ對シテノミ之ヲ爲ス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解除權カ当事者中ノ一人ニ付キ消滅シタルトキハ他ノ者ニ付テモ亦消滅ス

[류] 제547조 (해제, 해지권의 不可分性)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제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김]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이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명에 대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된다.

[순] 제547조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①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모두가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사람에게 대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일] 第545條 ①当事者ノ一方カ其解除權ヲ行使シタルトキハ各当事者ハ其相手方ヲ原狀ニ復セシムル義務ヲ負フ 但第三者ノ權利ヲ害スルコトヲ得ス

第545條 ②前項ノ場合ニ於テ返還スヘキ金錢ニハ其受領ノ時ヨリ利息ヲ附スルコトヲ要ス

[류]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 하여야 한다.

[김]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또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계약 해제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순] 제548조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546條 第533條ノ規定ハ前條ノ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48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앞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48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일] 第620條 賃貸借ヲ解除シタル場合ニ於テハ其解除ハ將來ニ向テノミ其効力ヲ生ス但當事者ノ一方ニ過失アリタルトキハ之ニ對スル損害賠償ノ請求ヲ妨ケス

[류]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김]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계약은 장래에 그 효력을 잃는다.

**[순]**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계약은 장래에만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545條 ③解除權ノ行使ハ損害賠償ノ請求ヲ妨ケス

[류] 제551조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 배상】**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 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제551조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일] 第547條 解除權ノ行使ニ付キ期間ノ定ナキトキハ相手方ハ解除權ヲ有スル者ニ對シ相當ノ期間ヲ定メ其期間内ニ解除ヲ爲スヤ否ヤヲ確答スヘキ旨ヲ催告スルコトヲ得若シ其期間内ニ解除ノ通知ヲ受ケサルトキハ解除權ハ消滅ス

[류] 제552조 (해제권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김]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앞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된다.

【순】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통지권] ①해제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일] 第548條 ①解除權ヲ有スル者カ自己ノ行爲又ハ過失ニ因リテ著シク契約ノ目的物ヲ毀損シ若クハ之ヲ返還スル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トキ又ハ加工若クハ改造ニ因リテ之ヲ他ノ種類ノ物ニ變シタルトキハ解除權ハ消滅ス

[류]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된다.

[김] 제553조 【훼손 ∨ 등으로 말미암은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또는 ‘되었을 때에’) 해제권은 소멸된다.

【순】 제553조 (훼손 ∨ 등에 따른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매우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제권은 소멸된다.

## 제 2 절 증 여(贈與)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549條 贈與ハ当事者ノ一方カ自己ノ財産ヲ無償ニテ相手方ニ与フル意思ヲ表示シ相手方カ受諾ヲ爲ス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無償)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554조 [증여(贈與)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무상(無償)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 ‘수여’는 문맥에 맞게 순화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일] 第550條 書面ニ依ラサル贈与ハ各当事者之ヲ取消スコトヲ得但履行ノ終ハリタル部分ニ付テハ此限ニ在ラス

[류] 제555조 (문서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문서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김] 제555조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순] 제555조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일] -없음

[류] 제556조 (受贈者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②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의 원인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김] 제556조 [수증자(受贈者)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2.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②앞항의 해제권은 해제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소멸된다.

**[순]** 제556조 [증여받을 사람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증여받을 사람이 증여자에게 다음 각 V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2.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증여받을 사람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해]** ‘수증자’를 ‘증여받을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을 그 적절함에 의문이 있지만, 의미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순화방법이라고 생각됨.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김]**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 V 상태 V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 V 계약 V 후에 증여자의 재산 V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를 함으로써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순]**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V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매우 많이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550條 書面ニ依ラサル贈与ハ各当事者之ヲ取消スコトヲ得 但履行ノ終ハリタル部分ニ付テハ此限ニ在ラス

[류]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일] 第551條 ①贈与者ハ贈与ノ目的タル物又ハ權利ノ瑕疵又ハ欠缺ニ付キ其責ニ任セス但贈与者カ其瑕疵又ハ欠缺ヲ知リテ之ヲ受贈者ニ告ケサリシ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負擔附贈与ニ付テハ贈与者ハ其負擔ノ限度ニ於テ賣主ト同シク担保ノ責ニ任ス

[류]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김]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지닌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상대방의 부담이 있는 증여(또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대하여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순】**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도 증여받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는 그 부담의 범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해】** ‘고지’는 ‘알림’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일] 第552條 定期ノ給付ヲ目的トスル贈與ハ贈與者又ハ受贈者ノ死亡ニ因リテ其効力ヲ失フ

[류] 제560조 (사망으로 인한 定期贈與의 失效)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김] 제560조 **【정기V증여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실효】** 정기적인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을 잃는다.

**【순】**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에 따른 효력상실] 정기적인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증여받을 사람이 사망하면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일] 第553條 負擔附贈與ニ付テハ本節ノ規定ノ外双務契約ニ關スル規定ヲ適用ス

[류] 제561조 (부담이 있는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김] 제561조 【부담부 ∨ 증여】 상대방의 부담이 있는 증여(또는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 ∨ 외에 쌍무 ∨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순】 제561조 [부담있는 증여]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 ∨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554條 贈与者ノ死亡ニ因リテ効力ヲ生スヘキ贈与ハ遺贈ニ關スル規定ニ從フ

[류] 제562조 (死因贈與)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562조 【사인 ∨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562조 [사인증여(死因贈與)]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 ‘사인증여’와 ‘유증’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제 3 절 매 매(賣買)

#### 제 1 관 총 칙(總則)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555條 賣買ハ当事者ノ一方カ或財産權ヲ相手方ニ移轉スルコトヲ約シ相手方カ之ニ其代金ヲ拂フ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 ‘약정’은 ‘약속’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일] 第556條 ①賣買ノ一方ノ予約ハ相手方カ賣買ヲ完結スル意思ヲ表示シタル時ヨリ賣買ノ効力ヲ生ス

第556條 ②前項ノ意思表示ニ付キ期間ヲ定メサリシトキハ予約者ハ相当ノ期間ヲ定メ其期間内ニ賣買ヲ完結スルヤ否ヤヲ確答スヘキ旨ヲ相手方ニ催告スルコトヲ得若シ相手方カ其期間内ニ確答ヲ爲ササルトキハ予約ハ其効力ヲ失フ

[류] 제564조 (매매의 一方豫約)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의 완결여부에 관한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김] 제564조 【매매의 일방 예약(一方豫約)】 ①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앞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예약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앞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순]**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一方豫約)]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예약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의 완결여부에 관한 확답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557條 ①買主カ賣主ニ手附ヲ交付シタルトキハ当事者ノ一方カ契約ノ履行ニ著手スルマテハ買主ハ其手附ヲ拋棄シ賣主ハ其倍額ヲ償還シテ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②第545條第3項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之ヲ適用セス

[류] 제565조 (解約金)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한쪽이 계약∨당시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였

을 때에는 당사자 V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하여 매매 V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앞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565조 [해약금(解約金)] ①매매의 당사자 한쪽이 계약 V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V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건네주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건넨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두 배의 금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일] 第558條 賣買契約ニ關スル費用ハ当事者双方平分シテ之ヲ負擔ス

[류]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김] 제566조 【매매 V 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 V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양쪽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순]**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양쪽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559條 本節ノ規定ハ賣買以外ノ有償契約ニ之ヲ準用ス 但其契約ノ性質カ之ヲ許ササ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567조 (有償계약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567조 【유상∨계약에 준용함】 이 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 ∨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그 계약에 준용하지 않는다.

【순】 제567조 [유상계약에 준용] 이 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2 관 매매의 효력(賣買의 效力)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김]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순】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일] 第560條 他人ノ權利ヲ以テ賣買ノ目的ト爲シタルトキハ賣主ハ其權利ヲ取得シテ之ヲ買主ニ移轉スル義務ヲ負フ

[류] 제569조 (다른 사람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김]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순】** 제569조 **[다른 사람의 권리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561條 前條ノ場合ニ於テ賣主カ其賣却シタル權利ヲ取得シテ之ヲ買主ニ移轉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買主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但契約ノ當時其權利ノ賣主ニ屬セサルコトヲ知リタルトキハ損害賠償ノ請求ヲ爲スコトヲ得ス

[류] 제570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9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김] 제570조 **【앞과 같은---매도인의 담보 V 책임】** 앞 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570조 [다른 사람의 권리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9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 第562條 ①賣主カ契約ノ當時其賣却シタル權利ノ自己ニ屬セサルコトヲ知ラサリシ場合ニ於テ其權利ヲ取得シテ之ヲ買主ニ移轉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賣主ハ損害ヲ賠償シテ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買主カ契約ノ當時其買受ケタル權利ノ賣主ニ屬セサルコトヲ知リタルトキハ賣主ハ買主ニ對シ單ニ其賣却シタル權利ヲ移轉スルコト能ハサル旨ヲ通知シテ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571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와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김] 제571조 **【앞과 같음---선의의 매도인의 담보V책임】** ①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는 ‘않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순】** 제571조 **【다른 사람의 권리매매와 선의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 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563條 ①賣買ノ目的タル權利ノ一部カ他人ニ屬スルニ因リ賣主カ之ヲ買主ニ移轉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買主ハ其足ラサル部分ノ割合ニ應シテ代金ノ減額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殘存スル部分ノミナレハ買主カ之ヲ買受ケサルヘカリシトキハ善意ノ買主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③代金減額ノ請求又ハ契約ノ解除ハ善意ノ買主カ損害賠償ノ請求ヲ爲スコトヲ妨ケス

[류]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남은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밖에 매수할 수 없었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선의의 매수인은 그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나 계약해제 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함에 따라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남은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 선의의 매수인은 그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 第564條 前條ニ定メタル權利ハ買主カ善意ナリシトキハ事實ヲ知リタル時ヨリ惡意ナリシトキハ契約ノ時ヨリ1年内ニ之ヲ行使スルコトヲ要ス

[류] 제573조 (제572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제572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김] 제573조 **【제57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제572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순】** 제573조 [제57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72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일] 第565條 數量ヲ指示シテ賣買シタル物カ不足ナル場合及ヒ物ノ一部カ契約ノ當時既ニ滅失シタル場合ニ於テ買主カ其不足又ハ滅失ヲ知ラサルシトキハ前2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된다.

[김]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 제573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것이 부족하거나 멸실된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준용한다.

【**순**】 제574조 [수량부족 및 일부∨멸실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와 제573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 第566條 ①賣買ノ目的物カ地上權、永小作權、地役權、留置權又ハ質權ノ目的タル場合ニ於テ買主カ之ヲ知ラサリシトキハ之カ爲メニ契約ヲ爲シタル目的ヲ達スルコト能ハサル場合ニ限り買主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其他ノ場合ニ於テハ損害賠償ノ請求ノミヲ爲スコトヲ得

②前項ノ規定ハ賣買ノ目的タル不動産ノ爲メニ存セリト称セシ地役權カ存セサリシトキ及ヒ其不動産ニ付キ登記シタル賃貸借アリ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③前2項ノ場合ニ於テ契約ノ解除又ハ損害賠償ノ請求ハ買主カ事實ヲ知りタル時ヨリ1年内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575조 (제한물권등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 준용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김] 제575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흠결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순] 제575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575조 (제한물권√등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등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 또는 입시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재산출연으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또는 ‘잃었을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재산 출연으로 그 소유권을 보존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576조 [저당권 및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자로 그 소유권을 보존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576조 [저당권 및 전세권의 행사∨등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 또는 임시등기에 따른 본등기로써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앞 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및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과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568條 ①强制競賣ノ場合ニ於テハ買受人ハ前7條ノ規定ニ依リ債務者ニ對シテ契約ノ解除ヲ爲シ又ハ代金ノ減額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債務者カ無資力ナルトキハ買受人ハ代金ノ配当ヲ受ケタル債權者ニ對シテ其代金ノ全部又ハ一部ノ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③前2項ノ場合ニ於テ債務者カ物又ハ權利ノ欠缺ヲ知リテ之ヲ申出テス又ハ債權者カ之ヲ知リテ競賣ヲ請求シタルトキハ買受人ハ其過失者ニ對シテ損害賠償ノ請求ヲ爲スコトヲ得

[류]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제5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을 알고 알리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競落人)은 제570조부터 제5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금 능력이 없을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알리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 낙찰자(落札者)는 제570조부터 제5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금능력이 없을 때에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을 알고도 알리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하였을 때에 낙찰자는 그 흠을 알았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 ‘경락인’은 ‘낙찰자’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됨.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 第569條 ①債權ノ賣主カ債務者ノ資力ヲ担保シタルトキハ契約ノ當時ニ於ケル資力ヲ担保シタルモノト推定ス

②弁済期ニ至ラサル債權ノ賣主カ債務者ノ將來ノ資力ヲ担保シタルトキハ弁済ノ期日ニ於ケル資力ヲ担保シタルモノト推定ス

[류]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변제기(辨濟期)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579조 【채권V매매와 매도인의 담보V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하였을 때에는 매매V계약 당시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금 능력을 담보하였을 때에는 변제기의 자금 능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하였을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辨濟期)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하였을 때에는 변제기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第570條 賣買ノ目的物ニ隱レタル瑕疵アリタルトキハ第566條ノ規定ヲ準用ス但強制競賣ノ場合ハ此限ニ在ラス

**[류]**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대신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감액청구, 보수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자신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②앞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대신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감액청구·보수청구 또는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감액청구, 보수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581조 【종류 ∨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 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앞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582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0조 및 제581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김] 제582조 **【제580조,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0조, 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순]** 제582조 [제580조와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0조, 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571條 第533條ノ規定ハ第563條乃至第566條及ヒ前條ノ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김]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 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와 제580조와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제580조와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일] 第572條 賣主ハ前12條ニ定メタル担保ノ責任ヲ負ハサル旨ヲ特約シタルトキト雖モ其知りテ告ケサリシ事實及ヒ自ラ第三者ノ爲メニ設定シ又ハ之ニ讓渡シタル權利ニ付テハ其責ヲ免ルルコトヲ得ス

**【류】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제569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김】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賣渡人)은 제569조부터 제5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순】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特約)]** 매도인은 제569조부터 제5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 第573條 賣買ノ目的物ノ引渡ニ付キ期限アルトキハ代金ノ支拂ニ付テモ亦同一ノ期限ヲ附シタルモノト推定ス

[류] 제585조 (同一期限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585조 【동일V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한쪽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V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585조 [동일기한(同一期限)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한쪽에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 第574條 賣買ノ目的物ノ引渡ト同時ニ代金ヲ拂フヘキトキハ其引渡ノ場所ニ於テ之ヲ拂フコトヲ要ス

[류]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김] 제586조 【대금V지급V장소】 매매하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V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순】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575條 ①未タ引渡ササル賣買ノ目的物カ果實ヲ生シタルトキハ其果實ハ賣主ニ屬ス

②買主ハ引渡ノ日ヨリ代金ノ利息ヲ拂フ義務ヲ負フ 但代金ノ支拂ニ付キ期限アルトキハ其期限ノ到來スルマテハ利息ヲ拂フコトヲ要セス

[류] 제587조 (果實의 귀속, 代金の 이자) 매매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587조 【이득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이득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買受人)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587조 [이익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이익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576條 賣買ノ目的ニ付キ權利ヲ主張スル者アリテ買主カ其買受ケタル權利ノ全部又ハ一部ヲ失フ虞アルトキハ買主ハ其危險ノ限度ニ應シ代金ノ全部又ハ一部ノ支拂ヲ拒ムコトヲ得但賣主カ相当ノ担保ヲ供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588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588조 【권리 ∨ 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 지급 ∨ 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

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588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 매수인은 그 위험의 범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 ‘권리주장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풀어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됨.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578條 前2條ノ場合ニ於テ賣主ハ買主ニ對シテ代金ノ供託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제588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대금공탁청구권)】 앞∨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대금공탁청구권)] 제588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관 환매(還買)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일] 第579條 不動産ノ賣主ハ賣買契約ト同時ニ爲シタル買戻ノ特約ニ依リ買主カ拂ヒタル代金及ヒ契約ノ費用ヲ返還シテ其賣買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但当事者カ別段ノ意思ヲ表示セサリシトキハ不動産ノ果實ト代金ノ利息トハ之ヲ相殺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590조 (還買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保留)한 때에는 그 받은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김]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또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그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앞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이득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맞계산한 것으로 본다.

【순】 제590조 [환매(還買)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매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이익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해】 ‘환매’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保留’는 ‘가지는’으로 풀어쓰거나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일] 第580條 ①買戻ノ期間ハ10年ヲ超ユルコトヲ得ス 若シ之ヨリ長キ期間ヲ定メタルトキハ之ヲ10年ニ短縮ス

- ②買戻ニ付キ期間ヲ定メタルトキハ後日之ヲ伸長スルコトヲ得ス
- ③買戻ニ付キ期間ヲ定メサリシトキハ5年内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을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김]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넘는 경우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 ②환매∨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순】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넘는 경우,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 ②환매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일] 第581條 ①賣買契約ト同時ニ買戻ノ特約ヲ登記シタルトキハ買戻ハ第三者ニ對シテモ其効力ヲ生ス

[류]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保留)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김] 제592조 【환매 ∨ 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였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순**】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일] 第582條 賣主ノ債權者カ第423條ノ規定ニ依リ賣主ニ代ハリテ買戻ヲ爲サント欲スルトキハ買主ハ裁判所ニ於テ選定シタル鑑定人ノ評價ニ從ヒ不動産ノ現時ノ価額ヨリ賣主カ返還スヘキ金額ヲ控除シタル殘額ニ達スルマテ賣主ノ債務ヲ弁濟シ尙ホ余剩アルトキハ之ヲ賣主ニ返還シテ買戻權ヲ消滅セシムルコトヲ得

[류] 제593조 (환매권의 代位行使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김]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 ∨ 행사(代位行使)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代位)하여 환매하고자 할 때에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뺀 잔액

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순]**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할 때에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해]** ‘공제’, ‘잔액’, ‘잉여액’ 등이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풀어쓰는 것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일] 第583條 ①賣主ハ期間内ニ代金及ヒ契約ノ費用ヲ提供スルニ非サレハ買戻ヲ爲スコトヲ得ス

②買主又ハ轉得者カ不動産ニ付キ費用ヲ出タシタルトキハ賣主ハ第196條ノ規定ニ從ヒ之ヲ償還スルコトヲ要ス但有益費ニ付テハ裁判所ハ賣主ノ請求ニ因リ之ニ相当ノ期限ヲ許与スルコトヲ得

[류]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도인은 매수인이나 전득자(轉得者)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김]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轉得者)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有益費)에 대하여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순]**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는 법원의 매도인의 청구에 따라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584條 不動産ノ共有者ノ一人カ買戻ノ特約ヲ以テ其持分ヲ賣却シタル後其不動産ノ分割又ハ競賣アリタルトキハ賣主ハ買主カ受ケタル若クハ受クヘキ部分又ハ代金ニ付キ買戻ヲ爲スコトヲ得 但賣主ニ通知セスシテ爲シタル分割及ヒ競賣ハ之ヲ以テ賣主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595조 (共有持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保留)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 중의 한 명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몫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을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부분이나 대금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또는 ‘받았거나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환매할 권리를 가지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을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4 절 교 환(交換)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586條 ①交換ハ当事者カ互ニ金錢ノ所有權ニ非サル財産權ヲ移轉スル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양쪽이 금전 ∨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양쪽이 금전 ∨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586條 ②当事者ノ一方カ他ノ權利ト共ニ金錢ノ所有權ヲ移轉スルコトヲ約シタルトキハ其金錢ニ付テハ賣買ノ代金ニ關スル規定ヲ準用ス

[류] 제597조 (금전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제596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597조 **【금전을 보충 ∨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 한쪽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또는 ‘앞 ∨ 조의 재산권’)을 ∨ 이전하고 금전을 보충 ∨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 ∨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597조 [금전을 보충지급하는 경우] 당사자 한쪽이 제596조의 재산권 ∨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전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 절 소비대차(消費貸借)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587條 消費貸借ハ当事者ノ一方カ種類、品等及ヒ數量ノ同シキ物ヲ以テ返還ヲ爲スコトヲ約シテ相手方ヨリ金錢其他ノ物ヲ受取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598조 (消費貸借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그밖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598조 **[소비 대차의 의의]** 소비 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금전, 그밖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일] 第589條 消費貸借ノ予約ハ爾後当事者ノ一方カ破産ノ宣告ヲ受ケタルトキハ其効力ヲ失フ

[류]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失効) 대주(貸主)가 목적물을 차주(借主)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김] 제599조 【파산과 소비 대차의 失効(失効)】 빌려 준 사람이 목적물을 빌린 사람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파산 $\vee$ 선고를 받았을 때에 소비 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순】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효력상실] 빌려 준 사람이 목적물을 빌린 사람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해】 ‘貸主’와 ‘借主’가 법문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으로 풀어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借主)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借主)가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貸主)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김] 제600조 【이자 $\vee$ 계산의 효력 발생 시기】 이자가 있는 소비 대차는 빌린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빌린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빌려 준 사람이 이행을 제공한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순】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는 빌린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빌린 사람이 자기

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연할 경우에는 빌려 준 사람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없음

[류] 제601조 (無利子消費貸借와 해제권)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601조 【무이자V소비 대차와 해제권】 이자가 없는 소비 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601조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해**】 ‘무이자’는 법문내용과의 통일을 위하여 풀어쓰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일] 第590條 ①利息附ノ消費貸借ニ於テ物ニ隱レタル瑕疵アリタルトキハ貸主ハ瑕疵ナキ物ヲ以テ之ニ代フルコトヲ要ス但損害賠償ノ請求ヲ妨ケス

②無利息ノ消費貸借ニ於テハ借主ハ瑕疵アル物ノ価額ヲ返還スルコトヲ得但貸主カ其瑕疵ヲ知りテ之ヲ借主ニ告ケサリシトキハ前項ノ規定ヲ準用ス

[류] 제602조 (貸主의 담보책임) ①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借主)는 하자가 있는 물건의 값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貸主)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借主)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제1항과 같다.

[검] 제602조 【빌려 준 사람의 담보책임】 ① 이자가 있는 소비 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자가 없는 소비 대차의 경우에는 빌린 사람은 하자가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빌려 준 사람이 그 하자를 알고 빌린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앞항과 같다.

【**순**】 제602조 [빌려 준 사람의 담보책임] ①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빌린 사람은 하자가 있는 물건의 가격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빌려 준 사람이 그 하자를 알고 빌린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603조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일] 第591條 ① 当事者カ返還ノ時期ヲ定メサリシトキハ貸主ハ相当ノ期間ヲ定メテ返還ノ催告ヲ爲スコトヲ得

② 借主ハ何時ニテモ返還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03조 (반환시기) ① 차주(借主)는 약정시기에 차용물(借用物)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貸主)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借主)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김] 제603조 【반환∨시기】 ① 빌린 사람은 약정∨시기에 빌린 물건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빌려 준 사람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재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빌린 물건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순】 제603조 [반환시기] ① 빌린 사람은 약정시기에 빌린 물건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에 빌려 준 사람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해】 ‘차용물’은 ‘빌린 물건’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592條 借主カ第587條ノ規定ニ依リテ返還ヲ爲スコト能ハサルニ至リタルトキハ其時ニ於ケル物ノ価額ヲ償還スルコトヲ要ス但第402條第2項ノ場合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04조 (반환불가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借主)가 차용물(借用物)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市價)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604조 【반환∨불가능에 따른 시가∨상환】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와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604조 [반환불가능에 따른 시가상환(市價償還)] 빌린 사람이 빌린물건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와 제377조V제2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일] 第588條 消費貸借ニ因ラスシテ金錢其他ノ物ヲ給付スル義務ヲ負フ者アル場合ニ於テ當事者カ其物ヲ以テ消費貸借ノ目的ト爲スコトヲ約シタルトキハ消費貸借ハ之ニ因リテ成立シタルモノト看做ス

[류] 제605조 (準消費貸借)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그밖의 대체물(代替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김] 제605조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 당사자 양쪽이 소비 대차에 따르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을 때에는 소비 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순**】 제605조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 당사자 양쪽이 소비대차에 따르지 않고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을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일] -없음

[류] 제606조 (代物貸借)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借主)가 금전에 대신하여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값을 차용액(借用額)으로 한다.

[김] 제606조 【대물 대차(代物貸借)】 금전∨대차의 경우에 빌린 사람이 금전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인도할 때의 가액을 빌린 금액으로 한다.

【순】 제606조 [대물대차(代物貸借)] 금전대차의 경우에 빌린 사람이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인도할 때의 가격을 빌린 금액으로 한다.

【해】 ‘대물대차’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차용액’은 ‘빌린 금액’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607조 (代物返還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에 대신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값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김]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에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할 당시의 그 재산 가액이 빌린 금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순】 제607조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 빌린 물건의 반환은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격이 빌린 금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해】 ‘대물반환’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약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일] -없음

[류] 제608조 (借主에 불리한 약정의 금지) 제606조의 규정에 위반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그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

[김] 제608조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약정 금지】** 제606조, 제607조의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순】** 제608조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약정의 금지] 제606조와 제607조의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해】** ‘불이익한’은 법문용어와 통일적으로 ‘불리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하한’은 ‘어떠한’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제 6 절 사용대차(使用貸借)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593條 使用貸借ハ当事者ノ一方カ無償ニテ使用及ヒ收益ヲ爲シタル後返還ヲ爲スコトヲ約シテ相手方ヨリ或物ヲ受取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609조 (使用貸借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無償)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609조 【사용 대차의 의의】 사용 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사용하고 수익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사용·수익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594條 ①借主ハ契約又ハ其目的物ノ性質ニ因リテ定マリタル用方ニ從ヒ其物ノ使用及ヒ收益ヲ爲スコトヲ要ス

②借主ハ貸主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第三者ヲシテ借用物ノ使用又ハ收益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ス

③借主カ前2項ノ規定ニ反スル使用又ハ收益ヲ爲シタルトキハ貸主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10조 (借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借主)는 목적물을 계약 또는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借主)는 대주(貸主)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借主)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주(貸主)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10조 【빌린 사람의 사용권, 수익권(收益權)】 ①빌린 사람은 계약이나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수익하여야 한다.

② 빌린 사람은 빌려 준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빌린 사람이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빌려 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10조 [빌린 사람의 사용·수익권] ① 빌린 사람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사용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② 빌린 사람은 빌려 준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빌린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빌린 사람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빌려 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595條 ①借主ハ借用物ノ通常ノ必要費ヲ負擔ス

②此他ノ費用ニ付テハ第583條第2項ノ規定ヲ準用ス

[류]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 차주(借主)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 빌린 사람은 빌린 물건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그 밖의 비용은 제594조 V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11조 [비용부담] ① 빌린 사람은 빌린 물건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그 밖의 비용은 제594조 V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일] 第596條 第551條ノ規定ハ使用貸借ニ之ヲ準用ス

[류] 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된다.

[김] 제612조 【준용 ∨ 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 대차에 준용한다.

【순】 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와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597條 ①借主ハ契約ニ定メタル時期ニ於テ借用物ノ返還ヲ爲スコトヲ要ス

第597條 ②当事者カ返還ノ時期ヲ定メサリシトキハ借主ハ契約ニ定メタル目的ニ從ヒ使用及ヒ收益ヲ終ハリタル時ニ於テ返還ヲ爲スコトヲ要ス但其以前ト雖モ使用及ヒ收益ヲ爲スニ足ルヘキ期間ヲ經過シタルトキハ貸主ハ直チニ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613조 (借用물의 반환시기) ①차주(借主)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時期)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13조 【빌린 물건의 반환 ∨ 시기】 ①빌린 사람은 약정 ∨ 시기에 빌린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과 수익이 종료되었을 때(또는 ‘-을 종료했을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과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빌려 준 사람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13조 [빌린 물건의 반환시기] ①빌린 사람은 약정한 시기에 빌린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時期)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빌린 사람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되었을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빌려 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599條 使用貸借ハ借主ノ死亡ニ因リテ其効力ヲ失フ

[류] 제614조 (借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貸主)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14조 **【빌린 사람의 사망, 파산과 해지】**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 빌려 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14조 **【빌린 사람의 사망·파산과 해지】**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 빌려 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일] 第598條 借主ハ借用物ヲ原狀ニ復シテ之ニ附屬セシメタル物ヲ收去スルコトヲ得

[류] 제615조 (借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김] 제615조 **【빌린 사람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빌린 물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순】** 제615조 **【빌린 사람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일] -없음

[류] 제616조 (共同借主의 連帶義務)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김] 제616조 【공동으로 빌린 사람의 연대V의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빌렸을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진다.

【**순**】 제616조 [공동으로 빌린 사람의 연대의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빌렸을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해**】 ‘공동차주’는 복합어로서 풀어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풀어쓰도록 한다.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일] 第600條 契約ノ本旨ニ反スル使用又ハ收益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ノ賠償及ヒ借主カ出タシタル費用ノ償還ハ貸主カ返還ヲ受ケタル時ヨリ1年内ニ之ヲ請求スルコトヲ要ス

[류]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된 사용, 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借主)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貸主)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김] 제617조 【손해 배상, 비용V상환V청구의 기간】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나는(또는 ‘~을 위반한’) 사용이나 수익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빌려 준 사람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V내에 빌린 사람에게 하여야 하며, 빌린 사람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는 빌린 사람이 물건을 반환한 날부터 6개월V내에 빌려 준사람에게 하여야 한다.

**[순]** 제617조 [손해배상과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된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빌린 사람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빌려 준 사람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절 임대차(賃貸借)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601條 賃貸借ハ当事者ノ一方カ相手方ニ或物ノ使用及ヒ收益ヲ爲サシムルコトヲ約シ相手方カ之ニ其賃金ヲ拂フ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임대료(賃貸料)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 ‘차임’은 ‘임대료’ 혹은 ‘임차료’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됨.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일] 第602條 處分ノ能力又ハ權限ヲ有セサル者カ賃貸借ヲ爲ス場合ニ於テハ其賃貸借ハ左ノ期間ヲ超ユルコトヲ得ス

1. 樹木ノ栽植又ハ伐採ヲ目的トスル山林ノ賃貸借ハ10年
2. 其他ノ土地ノ賃貸借ハ5年
3. 建物ノ賃貸借ハ3年
4. 動産ノ賃貸借ハ6个月

[류]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소금채취 또는 석조, 석회조, 벽돌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그밖의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개월

[김] 제619조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소금 채취, 건축(돌, 석회, 벽돌 등으로 된 구조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그 밖의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개월

[순] 제619조 [처분능력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소금채취 또는 돌, 석회, 벽돌 및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그 밖의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개월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일] 第603條 前條ノ期間ハ之ヲ更新スルコトヲ得但其期間滿了前土地ニ付テハ 1年内建物ニ付テハ 3个月内動産ニ付テハ 1个月内ニ其更新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19조의 기간은 갱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3개월, 동산에 대하여는 1개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김]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앞∨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는 1년,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은 3개월, 동산은 1개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순】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更新)] 제619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토지는 1년,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은 3개월, 동산은 1개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일] -제1항 없음

第605條 不動産ノ賃貸借ハ之ヲ登記シタルトキハ爾後其不動産ニ付キ物權ヲ取得シタル者ニ對シテモ其効力ヲ生ス

[류]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김]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순]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일] -없음

[류] 제622조 (건물등기가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멸실 또는 부식된 때에는 제1항의 효력을 잃는다.

[김] 제622조 【건물∨등기가∨있는 차지권(借地權)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을 때에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멸실되거나 너무 낡아서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앞항의 효력을 잃는다.

**[순]** 제622조 [건물등기가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실되거나 낡아서 부서진 때에는 제1항의 효력을 잃는다.

**[해]** ‘借地權’은 ‘토지임차권’으로, ‘후폐’는 ‘낡아서 부서진’으로 풀어쓰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 第606條 ①賃貸人ハ賃貸物ノ使用及ヒ收益ニ必要ナル修繕ヲ爲ス義務ヲ負フ

[류]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의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김] 제623조 【임대인(賃貸人)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收益)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순]**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일] 第606條 ②賃貸人カ賃貸物ノ保有ニ必要ナル行爲ヲ爲サント欲スルトキハ賃借人ハ之ヲ拒ムコトヲ得ス

[류]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認容義務)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김]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순】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인용의무(認容義務)]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607條 賃貸人カ賃借人ノ意思ニ反シテ保存行爲ヲ爲サント欲スル場合ニ於テ之カ爲メ賃借人カ賃借ヲ爲シタル目的ヲ達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賃借人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위반한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위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어긋나는(또는 ‘-를 거스르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어긋나게(또는 ‘-를 거슬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를 거슬린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를 거슬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일] 第608條 ①賃借人カ賃借物ニ付キ賃貸人ノ負擔ニ屬スル必要費ヲ出  
タシタルトキハ賃貸人ニ對シテ直チニ其償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賃借人カ有益費ヲ出タシタルトキハ賃貸人ハ賃貸借終了ノ時ニ於テ第196  
條第2項ノ規定ニ從ヒ其償還ヲ爲スコトヲ要ス但裁判所ハ賃貸人ノ請求ニ  
因リ之ニ相当ノ期限ヲ許与スルコトヲ得

[류]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김]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비(必要費)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에  
그 금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상환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순]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  
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에  
그 금액의 증가가 남아있는 때에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  
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적당  
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611條 ①賃借物ノ一部カ賃借人ノ過失ニ因ラスシテ滅失シタルトキハ賃借人ハ其滅失シタル部分ノ割合ニ応シテ借賃ノ減額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殘存スル部分ノミニテハ賃借人カ借賃ヲ爲シタル目的ヲ達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賃借人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27조 (一部滅失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멸실 그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借賃)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27조 [일부멸실∨등에 따른 감액청구 및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에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남아 있는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628조 (借賃増減請求權)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公課負擔)의 증감 그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借賃)이 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628조 【차임∨조정∨청구권(借賃増減請求權)】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이나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장래(將來)의 차임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628조 [임대료∨조정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 부담의 변동,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임대료가 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임대료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612條 ①賃借人ハ貸賃人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其權利ヲ讓渡シ又ハ賃借物ヲ轉貸スルコトヲ得ス

②賃借人カ前項ノ規定ニ反シ第三者ヲシテ賃借物ノ使用又ハ收益ヲ爲サシメタルトキハ賃賃人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轉貸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轉貸)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앞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轉貸)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 ‘전대’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문에서 사용될 때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됨.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613條 ①賃借人カ適法ニ賃借物ヲ轉貸シタルトキハ轉借人ハ賃貸人ニ對シテ直接ニ義務ヲ負フ此場合ニ於テハ借賃ノ前拂ヲ以テ賃貸人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②前項ノ規定ハ賃貸人カ賃借人ニ對シテ其權利ヲ行使スルコトヲ妨ケス

[류] 제630조 (轉貸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轉借人)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轉貸人)에게 차임(借賃)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제630조 【전대(轉貸)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였을 때에 전차인(轉借人)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V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제630조 [전대(轉貸)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을 때에 다시 임대받은 사람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다시 임대받은 사람은 다시 임대한 사람에게 지급한 임대료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 ‘전대’, ‘전차인’, ‘전대인’ 등의 용어를 풀어쓰는 것이 매우 법문을 복잡하게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절하고 쉬운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일] -없음

[류] 제631조 (轉借人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轉借人)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검]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끝냈을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순】 제631조 [전차인(轉借人)의 권리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했을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없음

[류] 제632조 (임차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29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검] 제632조 【임차V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632조 [임차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일부  
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33조 (차입지급의 시기)** 차입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  
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일] 第614條 借賃ハ動産、建物及ヒ宅地ニ付テハ毎月末ニ其他ノ土地ニ  
付テハ毎年末ニ之ヲ拂フコトヲ要ス 但收穫季節アルモノニ付テハ其季節  
後遲滯ナク之ヲ拂フコトヲ要ス

**[류]** 제633조 (借賃支給의 時期) 차입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垡地)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그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바로 지급하여  
야 한다.

**[김]** 제633조 **【차입 지급의 시기】** 차입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  
여는 매월∨말에, 그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에 있는 것은 수확∨후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순]** 제633조 [임대료∨지급의 시기] 임대료는 동산·건물 및 대지는  
매월∨말에, 그 밖의 토지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  
기가 있는 것은 그 수확∨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일] 第615條 賃借物カ修繕ヲ要シ又ハ賃借物ニ付キ權利ヲ主張スル者ア  
ルトキハ賃借人ハ遲滯ナク之ヲ賃貸人ニ通知スルコトヲ要ス 但賃貸人カ  
既ニ之ヲ知レ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바로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해야 할 상태이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임차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임차인은 바로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일] 第617條 ①当事者カ賃貸借ノ期間ヲ定メサリシトキハ各当事者ハ何時ニテモ解約ノ申入ヲ爲スコトヲ得 此場合ニ於テハ賃貸借ハ解約申入ノ後左ノ期間ヲ經過シタルニ因リテ終了ス

1. 土地ニ付テハ 1年
2. 建物ニ付テハ 3个月
3. 貸席及ヒ動産ニ付テハ 1日

[류] 제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김] 제635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앞항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2. 동산은 5일

【**순**】 제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건물·그 밖의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2. 동산은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618條 当事者カ賃貸借ノ期間ヲ定メタルモ其一方又ハ各自カ其期間内ニ解約ヲ爲ス權利ヲ留保シタルトキハ前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636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保留)한 때에는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36조 【기간을 약정한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였을 때에는 앞∨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36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②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621條 賃借人カ破産ノ宣告ヲ受ケタルトキハ賃貸借ニ期間ノ定アルトキト雖モ賃貸人又ハ破産管財人ハ第617條ノ規定ニ依リテ解約ノ申入ヲ爲スコトヲ得 此場合ニ於テハ各当事者ハ相手方ニ對シ解約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ノ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류]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김]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였을 때에라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재산관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약정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38조 (轉借人에 대한 해지통고의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轉貸)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차인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38조 [전차인(轉借人)에 대한 해지 통고] ①임대차∨약정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앞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轉借人)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약정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 (목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일] 第619條 ①賃貸借ノ期間滿了ノ後賃借人カ賃借物ノ使用又ハ收益ヲ繼續スル場合ニ於テ賃貸人カ之ヲ知リテ異議ヲ述ヘサルトキハ前賃貸借ト同一ノ條件ヲ以テ更ニ賃貸借ヲ爲シタルモノト推定ス但各当事者ハ第617條ノ規定ニ依リテ解約ノ申入ヲ爲スコトヲ得

②前賃貸借ニ付キ当事者カ担保ヲ供シタルトキハ其担保ハ期間ノ滿了ニ因リテ消滅ス但敷金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39조 (默示의 更新) ①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前賃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임대차(前賃貸借)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된다.

[김]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적절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이전의 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된다.

【순】 제639조 [묵시(默示)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前)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전임대차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끝나면 소멸한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640조 (借賃延滯와 해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期)의 차임액에 도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40조 [임대료∨연체와 해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료∨연체금액이 2기(期)의 임대료 금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 (등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41조 (借賃延滯와 해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소금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제6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41조 **【앞과 같음】**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앞∨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41조 [임대료∨연체와 해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소금채취·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제6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의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제641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그밖의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에게 하는 통지】 앞∨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의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제641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43조 (임차인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소금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나무 그밖의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수목, 그 밖의 지상∨시설이 현존하였을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소금채취·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 건물·수목·그 밖의 지상시설이 남아있을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44조 (轉借人の 임대청구권, 買受請求權) ①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소금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轉貸)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轉貸借)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나무 그밖의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44조 【전차인(轉借人)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이나 그 밖의 작물의 소유나 식목,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와 전대차(轉貸借)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그 밖의 지상∨시설이 현존하였을 때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전의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①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소금채취·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끝나고 건물·수목·그 밖의 지상시설이 남아있을 때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제283조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45조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645조 【지상권(地上權)의 목적 토지를 임차한 사람의 임대Ⅴ청구권, 매수Ⅴ청구권】 앞Ⅴ조의 규정은 지상권자(地上權者)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645조 [지상권Ⅴ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6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일] -없음

[류] 제646조 (임차인의 附屬物買受請求權) ①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김]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V매수V청구권】 ①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물을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도 앞항과 같다.

[순]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V매수청구권] ①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도 제1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일] -없음

[류] 제647조 (轉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①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轉貸)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轉貸借)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김] 제647조 【전차인(轉借人)의 부속물V매수V청구권】 ①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물을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전대차(轉貸借)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에게서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앞항과 같다.

**[순]**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임대인에게서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도 제1항과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의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 第313條 ①土地ノ賃貸人ノ先取特權ハ賃借地又ハ其利用ノ爲メニスル建物ニ備附ケタル動産、其土地ノ利用ニ供シタル動産及ヒ賃借人ノ占有ニ在ル其土地ノ果實ノ上ニ存在ス

[류] 제648조 (賃借地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法定質權)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 제648조 【임차지(賃借地)의 부속물, 이득∨등에 대한 법정∨질권(法定質權)】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써, 임차인이 임차지에 부속시켰거나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던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거나 임차지에서 생긴 이득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순]** 제648조 [임차토지의 부속물과 이익]등에 대한 법정질권(法定質權)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 임차토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리에 제공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이익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 -없음

[류] 제649조 (賃借地上의 건물에 대한 法定抵當權)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借賃債權)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 제649조 【임차지 위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借賃)채권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순]** 제649조 [임차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지난 마지막 2년의 임대료채권으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 第313條 ②建物ノ賃貸人ノ先取特權ハ賃借人カ其建物ニ備附ケタル動産ノ上ニ存在ス

[류] 제650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法定質權)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속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써 그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부속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순】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 그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속시킨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일] 第604條 ①賃貸借ノ存續期間ハ20年ヲ超ユルコトヲ得ス 若シ之ヨリ長キ期間ヲ以テ賃貸借ヲ爲シタルトキハ其期間ハ之ヲ20年ニ短縮ス  
②前項ノ期間ハ之ヲ更新スルコトヲ得 但更新ノ時ヨリ20年ヲ超ユルコトヲ得ス

[류]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소금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은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

②제1항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김]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돌, 석회, 벽돌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소금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에는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앞항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순]**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돌, 석회, 벽돌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소금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에는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일] -없음

[류]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轉借人)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김]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순]**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제628조·제631조·제635조·제638조·제640조·제641조·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 -없음

[류]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조부터 제648조까지, 제650조 및 제652조의 규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轉貸借)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 제653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부터 제648조까지와 제650조와 제652조의 규정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나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순】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제638조·제640조·제646조부터 제648조까지·제650조 및 제652조의 규정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일] 第616條 第594條第1項、第597條第1項及ヒ第598條ノ規定ハ賃貸借ニ之ヲ準用ス

第622條 第600條ノ規定ハ賃貸借ニ之ヲ準用ス

[류]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된다.

[김] 제654조 【준용 규정】 제610조 ∨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

【순】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 ∨ 제1항·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

제 8 절 고 용(雇傭)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623條 雇傭ハ当事者ノ一方カ相手方ニ對シテ勞務ニ服スルコトヲ約シ相手方カ之ニ其報酬ヲ与フル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 ‘勞務’는 ‘노동’ 혹은 ‘근로’로, ‘報酬’는 ‘임금’ 혹은 ‘급료’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개] 제655조의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노무제공에 관하여 노무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다.

[류] 제655조의2 (使用者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노무제공에 관하여 노무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다.

[순] 제655조의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安全配慮義務)] 사용자는 노무제공에 관하여 노무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일] 第624條 ①勞務者ハ其約シタル勞務ヲ終ハリタル後ニ非サレハ報酬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②期間ヲ以テ定メタル報酬ハ其期間ノ經過シタル後之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가 종료된 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김]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나 보수액의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순] 제656조 [보수금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금액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관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에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625條 ①使用者ハ勞務者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其權利ヲ第三者ニ讓渡スコトヲ得ス

②勞務者ハ使用者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第三者ヲシテ自己ニ代ハリテ勞務ニ服セシムルコトヲ得ス

③勞務者カ前項ノ規定ニ反シ第三者ヲシテ勞務ニ服セシメタルトキハ使用者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57조 (권리의무의 專屬性)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신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일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57조 【권리와 의무의 전속성(專屬性)】 ①사용자(使用者)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또는 ‘노무에 종사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한쪽이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57조 [권리와 의무의 전속성(專屬性)]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한쪽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노무자에게 그런 기능이 없다면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에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을 때에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 第626條 ①雇傭ノ期間カ5年ヲ超過シ又ハ当事者ノ一方若クハ第三者ノ終身間屆續スヘキトキハ当事者ノ一方ハ5年ヲ經過シタル後何時ニテモ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但此期間ハ商工業見習者ノ雇傭ニ付テハ之ヲ10年トス

②前項ノ規定ニ依リテ契約ノ解除ヲ爲サント欲スルトキハ3个月前ニ其予告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659조 (3년을 경과한 고용과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終身)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김]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한쪽이나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순]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한쪽 또는 제3자의 종신(終身)까지로 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 第627條 ①当事者カ雇傭ノ期間ヲ定メサリシトキハ各当事者ハ何時ニテモ解約ノ申入ヲ爲ス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雇傭ハ解約申入ノ後2週間ヲ經過シタルニ因リテ終了ス

第627條 ②期間ヲ以テ報酬ヲ定メタル場合ニ於テハ解約ノ申入ハ次期以後ニ對シテ之ヲ爲スコトヲ得 但其申入ハ当期ノ前半ニ於テ之ヲ爲スコトヲ要ス

- [류] 제660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報酬)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期)를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김] 제660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써 보수를 정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그 기간∨후에 한 기간을 더 경과한 직후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순**】 제660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해당기간∨후의 1기간을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628條 当事者カ雇傭ノ期間ヲ定メタルトキト雖モ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ルトキハ各当事者ハ直チニ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但其事由カ当事者ノ一方ノ過失ニ因リテ生シタルトキハ相手方ニ對シテ損害賠償ノ責ニ任ス

- [류]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권)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일] 第629條 ①雇傭ノ期間滿了ノ後勞務者カ引續キ其勞務ニ服スル場合ニ於テ使用者カ之ヲ知りテ異議ヲ述ヘサルトキハ前雇傭ト同一ノ條件ヲ以テ更ニ雇傭ヲ爲シタルモノト推定ス但各当事者ハ第627條ノ規定ニ依リテ解約ノ申入ヲ爲スコトヲ得

②前雇傭ニ付キ当事者カ担保ヲ供シタルトキハ其担保ハ期間ノ滿了ニ因リテ消滅ス但身元保証金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전(前)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前)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김]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이전의 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된다.

【**순**】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끝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前)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前)고용으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끝남으로써 소멸한다.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631條 使用者カ破産ノ宣告ヲ受ケタルトキハ雇傭ニ期間ノ定アルトキト雖モ勞務者又ハ破産管財人ハ第627條ノ規定ニ依リテ解約ノ申入ヲ爲スコトヲ得 此場合ニ於テハ各当事者ハ相手方ニ對シ解約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ノ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류]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고용기간을 약정한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김]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 기간을 약정한 때에라도 노무자나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663조 [사용자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을 약정한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재산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 9 절 도 급(都給)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632條 請負ハ当事者ノ一方カ或仕事ヲ完成スルコトヲ約シ相手方カ其仕事ノ結果ニ對シテ之ニ報酬ヲ与フル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664조 (都給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664조 【도급(都給)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664조 [도급(都給)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633條 報酬ハ仕事ノ目的物ノ引渡ト同時ニ之ヲ与フルコトヲ要ス  
但物ノ引渡ヲ要セサルトキハ第624條第1項ノ規定ヲ準用ス

[류]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한다.

②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김] 제665조 【보수의 지급 V 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V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V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는 제656조 V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른다.

②보수의 지급시기에 약정이나 관습이 없을 경우에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666조 (受給人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 공사(工事)의 수급인은 제665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666조 【수급인(受給人)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앞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666조 [수급인(受給人)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제665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634條 ① 仕事ノ目的物ニ瑕疵アルトキハ注文者ハ請負人ニ對シ相当ノ期限ヲ定メテ其瑕疵ノ修補ヲ請求スルコトヲ得但瑕疵カ重要ナラサル場合ニ於テ其修補カ過分ノ費用ヲ要ス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第634條 ② 注文者ハ瑕疵ノ修補ニ代ヘ又ハ其修補ト共ニ損害賠償ノ請求ヲ爲ス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第533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667조 (受給人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補修)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도급인은 보수감액청구 또는 하자보수청구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瑕疵)가 있을 때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보수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도급인은 하자 보수를 대신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앞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補修)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도급인은 보수감액청구 또는 하자보수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635條 仕事ノ目的物ニ瑕疵アリテ之カ爲メニ契約ヲ爲シタル目的ヲ達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注文者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但建物其他土地ノ工作物ニ付テ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68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삭제>

[김] 제668조 【앞과 같음---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순】 제668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은 그렇지 않다.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636條 前2條ノ規定ハ仕事ノ目的物ノ瑕疵カ注文者ヨリ供シタル材料ノ性質又ハ注文者ノ与ヘタル指図ニ因リテ生シタルトキハ之ヲ適用セス 但請負人カ其材料又ハ指図ノ不適當ナルコトヲ知リテ之ヲ告ケサリシ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69조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로 인한 경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면책) 제667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로 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669조 【앞과 같음---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67조,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

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재료가 부적절하거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수급인이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제667조, 제6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순]** 제669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따른 경우의 면책] 제667조와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않음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일] 第637條 ①前3條ニ定メタル瑕疵修補又ハ損害賠償ノ請求及ヒ契約ノ解除ハ仕事ノ目的物ヲ引渡シタル時ヨリ1年内ニ之ヲ爲スコトヲ要ス

②仕事ノ目的物ノ引渡ヲ要セサル場合ニ於テハ前項ノ期間ハ仕事終了ノ時ヨリ之ヲ起算ス

**[류]**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제66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補修),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김]**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제667조부터 제6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 배상의 청구와 계약의 해제는(또는 ‘~의 규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항의 기간은 일을 종료한 날(또는 ‘일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순]**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제667조부터 제6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일을 종료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일]** 第638條 ①土地ノ工作物ノ請負人ハ其工作物又ハ地盤ノ瑕疵ニ付テハ引渡ノ後5年間其担保ノ責ニ任ス但此期間ハ石造、土造、煉瓦造又ハ金屬屬造ノ工作物ニ付テハ之ヲ10年トス

②工作物カ前項ノ瑕疵ニ因リテ滅失又ハ毀損シタルトキハ注文者ハ其滅失又ハ毀損ノ時ヨリ1年内ニ第634條ノ權利ヲ行使スルコトヲ要ス

**[류]** 제671조 (토지, 건물등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地盤工事)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한 후 5년동안 담보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벽돌조, 금속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김]**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별 규정】

①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 동안 담보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돌, 석회, 벽돌,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일 때에  
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앞항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도급인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vee$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순】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그 밖의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  
하여 인도 $\vee$ 후 5년 $\vee$ 동안 담보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돌·  
석회·벽돌·금속·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료로 조성된 것일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도급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vee$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  
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일] 第640條 請負人ハ第634條及ヒ第635條ニ定メタル担保ノ責任ヲ負ハ  
サル旨ヲ特約シタルトキト雖モ其知リテ告ケサリシ事實ニ付テハ其責ヲ  
免ルルコトヲ得ス

[류]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  
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김] 제672조 **【담보 $\vee$ 책임 $\vee$ 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  
의 담보 $\vee$ 책임이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순】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와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  
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 第641條 請負人カ仕事ヲ完成セサル間ハ注文者ハ何時ニテモ損害ヲ賠償シテ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73조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김] 제673조 **【도급인의 완성 전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순】** 제673조 **[도급인의 완성 전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642條 ①注文者カ破産ノ宣告ヲ受ケタルトキハ請負人又ハ破産管財人ハ契約ノ解除ヲ爲スコトヲ得此場合ニ於テハ請負人ハ其既ニ爲シタル仕事ノ報酬及ヒ其報酬中ニ包含セサル費用ニ付キ財団ノ配當ニ加入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ハ各當事者ハ相手方ニ對シ解約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ノ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류]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補修)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검]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수급인 등의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  
 신고를 받았을 때에 수급인이나 파산 재산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報酬)와 보  
 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파산∨재단의 배당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 수급인 또는 파산재산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수급인은 일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개] 제10절 여 행(旅行)

【**해**】 개정안은 ‘여행’이라는 절을 신설하여 제67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여 숙식 또는 관광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류]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여 숙식 또는 관광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그 대금(代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  
 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여 숙식 또는 관광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 제674조의3 (여행개시전의 해제) 여행자는 여행개시전에는 언제  
 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류] 제674조의3 (旅行開始 前의 해제)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674조의3 [여행시작∨전의 해제] 여행자는 여행시작∨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류]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 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류] 제674조의5 (代金の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순】 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실행된 여행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추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추완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추완청구를 할 수 없다.

②여행자는 감액청구, 추완청구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류]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실행된 여행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후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추후보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추후보완을 청구 할 수 없다.

②여행자는 감액청구, 추후보완청구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실행된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에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후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후보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사후보완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여행자는 감액청구·사후보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 제674조의7 (등전-여행자의 해지권)** ①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미 실행된 여행이 여행자에게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여행주최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원래의 계약이 귀환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귀환운송의 추가비용은 여행주최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을 해지한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류] 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代金請求權)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미 실행된 여행이 여행자에게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③여행주최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원래의 계약이 귀환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귀환운송의 추가비용은 여행주최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을 해지한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미 실행된 여행이 여행자에게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③여행주최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원래의 계약이 귀환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을 할 의무가 있다. 귀환운송의 추가비용은 여행주최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을 해지한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에 의한 권리는 계약으로 정한 여행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류]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에 의한 권리는 계약에서 정한 여행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순]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계약으로 정한 여행이 끝난 날부터 3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 제674조의9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여행주최자는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류] 제674조의9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여행주최자는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순]** 제674조의9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여행주최자는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의 담보책임이 없다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0절 현상광고(懸賞廣告)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529條 或行爲ヲ爲シタル者ニ一定ノ報酬ヲ与フヘキ旨ヲ廣告シタル者ハ其行爲ヲ爲シタル者ニ對シテ其報酬ヲ与フル義務ヲ負フ

[류] 제675조 (懸賞廣告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報酬)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사람이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675조 [현상광고(懸賞廣告)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사람이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일] 第531條 ①廣告ニ定メタル行爲ヲ爲シタル者數人アルトキハ最初ニ其行爲ヲ爲シタル者ノミ報酬ヲ受クル權利ヲ有ス

②數人カ同時ニ右ノ行爲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ハ各平等ノ割合ヲ以テ報酬ヲ受クル權利ヲ有ス 但報酬カ其性質上分割ニ不便ナルトキ又ハ廣告ニ於テ一人ノミ之ヲ受クヘキモノトシタルトキハ抽籤ヲ以テ之ヲ受クヘキ者ヲ定ム

[류] 제676조 (報酬受領權者) ①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사람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보수(報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김]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한 명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순】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한 사람만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77조 (廣告不知의 행위) 제676조의 규정은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677조 【광고∨부지(廣告不知)의 행위】 앞∨조의 규정은 광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677조 [광고부지(廣告不知)의 행위] 제676조의 규정은 광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해**】 ‘광고부지’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한 판정은 광고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532條 ①廣告ニ定メタル行爲ヲ爲シタル者數人アル場合ニ於テ其優等者ノミニ報酬ヲ与フヘキトキハ其廣告ハ応募ノ期間ヲ定メタルトキニ限り其効力ヲ有ス

②前項ノ場合ニ於テ応募者中何人ノ行爲カ優等ナルカハ廣告中ニ定メタル者之ヲ判定ス 若シ廣告中ニ判定者ヲ定メサリシトキハ廣告者之ヲ判定ス

-제3항 없음

③応募者ハ前項ノ判定ニ對シテ異議ヲ述フルコトヲ得ス

④ 數人ノ行爲カ同等ト判定セラレタルトキハ前條第2項ノ規定ヲ準用ス

[류] 제678조 (優秀縣賞廣告) ①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우수한 사람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서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사람이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응모자는 제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여러 사람의 행위가 동등(同等)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만(또는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앞항의 경우에 우수하다는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사람이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응모자는 제2항, 제3항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응모자 중 몇 사람의 행위가 동등하게 판정된 경우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순】 제678조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 ①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제1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사람이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③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④응모자는 제2항과 제3항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⑤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676조 V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일] 第530條 ③廣告者カ其指定シタル行爲ヲ爲スヘキ期間ヲ定メタルトキハ其取消權ヲ拋棄シタルモノト推定ス

①前條ノ場合ニ於テ廣告者ハ其指定シタル行爲ヲ完了スル者ナキ間ハ前ノ廣告ト同一ノ方法ニ依リテ其廣告ヲ取消スコトヲ得但其廣告中ニ取消ヲ爲ササル旨ヲ表示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前項ニ定メタル方法ニ依リテ取消ヲ爲スコト能ハサル場合ニ於テハ他ノ方法ニ依リテ之ヲ爲スコトヲ得但其取消ハ之ヲ知リタル者ニ對シテノミ其効力ヲ有ス

- [류]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서 지정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前)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김]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에 대한 완료∨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서 행위에 대한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앞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순**】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前)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

### 제11절 위임(委任)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643條 委任ハ當事者ノ一方カ法律行爲ヲ爲スコトヲ相手方ニ委託シ相手方カ之ヲ承諾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第656條 本節ノ規定ハ法律行爲ニ非サル事務ノ委託ニ之ヲ準用ス

[류]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일] 第644條 受任者ハ委任ノ本旨ニ從ヒ善良ナル管理者ノ注意ヲ以テ委任事務ヲ處理スル義務ヲ負フ

[류] 제681조 (受任인의 善管義務)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김] 제681조 【수임인(受任人)의 선관V의무(善管義務)】 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V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순**】 제681조 [수임인(受任人)의 선관의무(善管義務)]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없음

[류] 제682조 (復任權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신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682조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없  
이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제삼자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앞항의 규정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682조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일] 第645條 受任者ハ委任者ノ請求アルトキハ何時ニテモ委任事務處理ノ狀況ヲ報告シ又委任終了ノ後ハ遲滯ナク其顛末ヲ報告スルコトヲ要ス

[류] 제683조 (수임인의 報告義務)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바로 그 전말(顛末)을 보고하여야 한다.

[김]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순]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경과(經過)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 ‘전말’은 ‘경과’ 혹은 ‘과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저절하다고 생각됨.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일] 第646條 ①受任者ハ委任事務ヲ處理スルニ當リテ受取リタル金錢其他ノ物ヲ委任者ニ引渡スコトヲ要ス其收取シタル果實亦同シ

②受任者カ委任者ノ爲メニ自己ノ名ヲ以テ取得シタル權利ハ之ヲ委任者ニ移轉スルコトヲ要ス

[류]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그밖의 물건 및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김]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 등의 인도, 이전 ∨ 의무】 ①수임인은 위임 ∨ 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거두어들인 이 득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순】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 등의 인도와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647條 受任者カ委任者ニ引渡スヘキ金額又ハ其利益ノ爲メニ用ユヘキ金額ヲ自己ノ爲メニ消費シタルトキハ其消費シタル日以後ノ利息ヲ拂フコトヲ要ス 尙ホ損害アリタルトキハ其賠償ノ責ニ任ス

[류]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V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일] 第648條 ①受任者ハ特約アルニ非サレハ委任者ニ對シテ報酬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②受任者カ報酬ヲ受クヘキ場合ニ於テハ委任履行ノ後ニ非サレハ之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但期間ヲ以テ報酬ヲ定メタルトキハ第624條第2項ノ規定ヲ準用ス

③委任カ受任者ノ責ニ歸スヘカラサル事由ニ因リ其履行ノ半途ニ於テ終了シタルトキハ受任者ハ其既ニ爲シタル履行ノ割合ニ応シテ報酬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686조 (수임인의 報酬請求權)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報酬)∨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순】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일] 第649條 委任事務ヲ處理スルニ付キ費用ヲ要スルトキハ委任者ハ受任者ノ請求ニ因リ其前拂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687조 (수임인의 費用先給請求權)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드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김] 제687조 【비용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V 청구권】 위임 V 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또는 ‘수임인이 청구하면’)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순】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費用先給請求權)]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650條 ①受任者カ委任事務ヲ處理スルニ必要ト認ムヘキ費用ヲ出タシタルトキハ委任者ニ對シテ其費用及ヒ支出ノ日以後ニ於ケル其利息ノ償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受任者カ委任事務ヲ處理スルニ必要ト認ムヘキ債務ヲ負擔シタルトキハ委任者ヲシテ自己ニ代ハリテ其弁濟ヲ爲サシメ又其債務カ弁濟期ニ在ラサルトキハ相当ノ担保ヲ供セシムルコトヲ得

③受任者カ委任事務ヲ處理スル爲メ自己ニ過失ナクシテ損害ヲ受ケタルトキハ委任者ニ對シテ其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위임인에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過失) 없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위임인에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651條 ①委任ハ各当事者ニ於テ何時ニテモ之ヲ解除スルコトヲ得

②当事者ノ一方カ相手方ノ爲メニ不利ナル時期ニ於テ委任ヲ解除シタルトキハ其損害ヲ賠償スルコトヲ要ス但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リ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89조 (위임의 相互解止의 자유) ①각 당사자는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689조 【위임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相互解止)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일] 第653條 委任ハ委任者又ハ受任者ノ死亡又ハ破産ニ因リテ終了ス 受任者カ後見開始ノ審判ヲ受ケタルトキ亦同シ

[류]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김]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말미암아 종료된다. 수임인이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또는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순】 제690조 [사망·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

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 第654條 委任終了ノ場合ニ於テ急迫ノ事情アルトキハ受任者、其相續人又ハ法定代理人ハ委任者、其相續人又ハ法定代理人カ委任事務ヲ處理スルコトヲ得ルニ至ルマテ必要ナル處分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이 종료된 경우이라도 매우 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임인, 위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 위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순]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매우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위임인과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과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 법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문장을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655條 委任終了ノ事由ハ其委任者ニ出テタルト受任者ニ出テタルトヲ問ハス之ヲ相手方ニ通知シ又ハ相手方カ之ヲ知リタルトキニ非サレハ之ヲ以テ其相手方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가 아니면 그 사유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개] 제13절 중개(仲介)

【해】 개정안은 제13절에 ‘중개’의 절을 신설하였음.

[개] 제692조의2 (중개의 의의)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류] 제692조의2 (仲介의 의의)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周旋)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692조의2 [중개의 의의] 중개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周旋)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 제692조의3 (중개료청구권등) ①중개에 관하여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그 소개 또는 주선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류] 제692조의3 (중개료청구권 등) ①중개에 관하여 보수(報酬)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그 소개 또는 주선(周旋)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하여 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692조의3 [중개료∨청구권∨등] ①중개에 관하여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 중개인은 그 소개 또는 주선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만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 제692조의4 (보수청구권의 감액 및 상실) ①중개에 관하여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한 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계약에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류] 제692조의4 (報酬請求權의 감액 및 상실) ①중개에 관하여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많은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한 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그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순]** 제692조의4 [보수청구권의 감액 및 상실] ①중개에 관하여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가격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②중개인이 계약에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그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 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보수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 제692조의5 (준용규정) 제681조 내지 제683조 및 제689조 내지 제692조의 규정은 중개에 준용한다.

[류] 제692조의5 (준용규정) 제681조부터 제683조까지 및 제689조부터 제692조까지의 규정은 중개에 준용된다.

[순] 제692조의5 [준용규정] 제681조부터 제683조까지와 제689조부터 제692조까지의 규정은 중개에 준용한다.

### 제12절 임 치(任置)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일] 第657條 寄託ハ当事者ノ一方カ相手方ノ爲メニ保管ヲ爲スコトヲ約シテ或物ヲ受取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693조 (任置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 $\vee$ 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순]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vee$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해] ‘임치’는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예: ‘보관위탁’ 혹은 ‘위탁’ 및 ‘기탁’)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일] 第658條 ①受寄者ハ寄託者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受寄物ヲ使用シ又ハ第三者ヲシテ之ヲ保管セシムルコトヲ得ス

[류]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김]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순】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일] 第659條 無報酬ニテ寄託ヲ受ケタル者ハ受寄物ノ保管ニ付キ自己ノ財産ニ於ケルト同一ノ注意ヲ爲ス責ニ任ス

[류]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사람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김]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한다.

【순】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사람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똑같은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일] 第660條 寄託物ニ付キ權利ヲ主張スル第三者カ受寄者ニ對シテ訴ヲ提起シ又ハ差押ヲ爲シタルトキハ受寄者ハ遲滯ナク其事實ヲ寄託者ニ通知スルコトヲ要ス

[류]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바로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김]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게 소(訴)를 제기하거나 임치물을 압류하였을 때에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순】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하였을 때에 수치인은 바로 임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661條 寄託者ハ寄託物ノ性質又ハ瑕疵ヨリ生シタル損害ヲ受寄者ニ賠償スルコトヲ要ス 但寄託者カ過失ナクシテ其性質若クハ瑕疵ヲ知ラサリシトキ又ハ受寄者カ之ヲ知リ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말미암은 임치인의 손해 배상∨의무】 임치인은 그 물건의 성질이나 하자로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이나 하자를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및 하자에 따른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662條 当事者カ寄託物返還ノ時期ヲ定メタルトキト雖モ寄託者ハ何時ニテモ其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第663條 ②返還時期ノ定アルトキハ受寄者ハ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ルニ非サレハ其期限前ニ返還ヲ爲スコトヲ得ス

[류] 제698조 (기간을 약정한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98조 【기간을 약정한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98조 [기간을 약정한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 第663條 ①当事者カ寄託物返還ノ時期ヲ定メサリシトキハ受寄者ハ何時ニテモ其返還ヲ爲スコトヲ得

[류] 제699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 제699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 제699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일] 第664條 寄託物ノ返還ハ其保管ヲ爲スヘキ場所ニ於テ之ヲ爲スコトヲ要ス 但受寄者カ正当ノ事由ニ因リテ其物ヲ轉置シタルトキハ其現在ノ場所ニ於テ之ヲ返還スルコトヲ得

[류]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보관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 물건을 전치(轉置)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김]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 물건을 옮겨 두었을 때에는 현재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순】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 물건을 옮겼을 때에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해】 ‘轉置’는 ‘옮김’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일] 第665條 第646條乃至第649條及ヒ第650條第1項、第2項ノ規定ハ寄託ニ之ヲ準用ス

[류] 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 제684 부터 제687조까지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된다.

[김] 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부터 제687조까지와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순】 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제684조부터 제687조까지 및 제688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666條 受寄者カ契約ニ依リ受寄物ヲ消費スルコトヲ得ル場合ニ於テハ消費貸借ニ關スル規定ヲ準用ス但契約ニ返還ノ時期ヲ定メサリシトキハ寄託者ハ何時ニテモ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702조 (消費任置)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702조 【소비∨임치(消費任置)】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 대차(消費貸借)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702조 [소비임치(消費任置)]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절 조 합(組合)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일] 第667條 ①組合契約ハ各当事者カ出資ヲ爲シテ共同ノ事業ヲ營ム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②出資ハ勞務ヲ以テ其目的ト爲スコトヲ得

[류]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相互出資)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출자(出資)는 금전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김]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두 명∨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앞항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로 할 수 있다.

- [순]**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출자(相互出資)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일] 第668條 各組合員ノ出資其他ノ組合財産ハ總組合員ノ共有ニ屬ス

[류]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出資) 그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김] 제704조 【조합 ∨ 재산의 합유(合有)】 조합원의 출자, 그 밖의 조합 ∨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순]**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669條 金錢ヲ以テ出資ノ目的ト爲シタル場合ニ於テ組合員カ其出資ヲ爲スコトヲ怠リタルトキハ其利息ヲ拂フ外尙ホ損害ノ賠償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705조 (金錢出資遲滯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이자(延滯利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705조 【금전 ∨ 출자 ∨ 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 ∨ 시기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연체 ∨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705조 [금전출자지연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일] 第670條 ①組合ノ業務執行ハ組合員ノ過半數ヲ以テ之ヲ決ス

②組合契約ヲ以テ業務ノ執行ヲ委任シタル者數人アルトキハ其過半數ヲ以テ之ヲ決ス

③組合ノ常務ハ前2項ノ規定ニ拘ハラス各組合員又ハ各業務執行者之ヲ專行スルコトヲ得但其終了前ニ他ノ組合員又ハ業務執行者カ異議ヲ述ヘ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 [류]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異義)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김]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조합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앞항의 규정에 업매이지 않고 각 조합원이나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가 완료

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이나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순】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sup>이상</sup>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바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671條 組合ノ業務ヲ執行スル組合員ニハ第644條乃至第650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707조 **【준용<sup>∨</sup>규정**] 조합<sup>∨</sup>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일] 第672條 ①組合契約ヲ以テ 1人又ハ數人ノ組合員ニ業務ノ執行ヲ委任シタルトキハ其組合員ハ正當ノ事由アルニ非サレハ辭任ヲ爲スコトヲ得ス又解任セララルコトナシ

②正當ノ事由ニ因リテ解任ヲ爲スニハ他ノ組合員ノ一致アルコトヲ要ス

[류]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辭任,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一致)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김]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또는 ‘전원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순】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과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만장일치(滿場一致)의 동의를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 -없음

[류]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일] 第673條 各組合員ハ組合ノ業務ヲ執行スル權利ヲ有セサルトキト雖モ其業務及ヒ組合財産ノ狀況ヲ検査スルコトヲ得

[류]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김]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순】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일] 第674條 ①当事者カ損益分配ノ割合ヲ定メサリシトキハ其割合ハ各組合員ノ出資ノ価額ニ応シテ之ヲ定ム

②利益又ハ損失ニ付テノミ分配ノ割合ヲ定メタルトキハ其割合ハ利益及ヒ損失ニ共通ナルモノト推定ス

[류]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出資價額)에 비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한다.

②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하였을 때에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순]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하였을 때에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 第675條 組合ノ債權者ハ其債權發生ノ當時組合員ノ損失分担ノ割合ヲ知ラサリシトキハ各組合員ニ對シ均一部分ニ付キ其權利ヲ行フコトヲ得

[류]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나눈 비율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똑같이 나누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일] -없음

[류] 제713조 (無資力組合員의 채무와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김] 제713조 【값을 능력이 없는 조합원의 채무와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빚 값을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값을 수 없는 부분을(또는 ‘~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값을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값을 책임이 있다.

【순】 제713조 [자금능력이 없는 조합원의 채무와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일] -없음

[류]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에 받을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김]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인 장래에 이익∨배당과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순】 제714조 [지분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에 받을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일] 第677條 組合ノ債務者ハ其債務ト組合員ニ對スル債權トヲ相殺スルコトヲ得ス

[류]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相計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김]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맞계산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맞계산하지 못한다.

【순】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 (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일] 第678條 ①組合契約ヲ以テ組合ノ存續期間ヲ定メサリシトキ又ハ或組合員ノ終身間組合ノ存續スヘキコトヲ定メタルトキハ各組合員ハ何時

ニテモ脱退ヲ爲スコトヲ得但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ル場合ヲ除ク外組合ノ爲メ不利ナル時期ニ於テ之ヲ爲スコトヲ得ス

②組合ノ存續期間ヲ定メタルトキト雖モ各組合員ハ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ルトキハ脱退ヲ爲スコトヲ得

[류] 제716조 (任意脱退) ①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終身)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는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김] 제716조 【임의V탈퇴】 ①조합의 존속V기간을 조합 계약으로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조합을 존속시킬 것을 정하였을 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V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라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순] 제716조 [임의탈퇴(任意脱退)]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하였을 때에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일] 第679條 前條ニ掲ケタル場合ノ外組合員ハ左ノ事由ニ因リテ脱退ス

1. 死亡
2. 破産
3. 後見開始ノ審判ヲ受ケタルコト
4. 除名

[류] 제717조 (非任意脱退)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除名)

[김] 제717조 【비임의(非任意) 탈퇴】 앞∨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순】 제717조 [비(非)임의탈퇴] 제716조의 경우∨이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除名)

**제718조 (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 第680條 組合員ノ除名ハ正当ノ事由アル場合ニ限り他ノ組合員ノ一致ヲ以テ之ヲ爲スコトヲ得但除名シタル組合員ニ其旨ヲ通知スルニ非サレハ之ヲ以テ其組合員ニ對抗スルコトヲ得ス

[류] 제718조 (除名)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

②제1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 제718조 【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또는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만장일치로써 결정한다.

②앞항의 제명 V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순】 제718조 [제명(除名)]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조합원의 만장일치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②제1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일] 第681條 ①脱退シタル組合員ト他ノ組合員トノ間ノ計算ハ脱退ノ當時ニ於ケル組合財産ノ狀況ニ從ヒ之ヲ爲スコトヲ要ス

②脱退シタル組合員ノ持分ハ其出資ノ種類如何ヲ問ハス金錢ヲ以テ之ヲ拂戻スコトヲ得

③脱退ノ當時ニ於テ未タ結了セサル事項ニ付テハ其結了後ニ計算ヲ爲スコトヲ得

- [류]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持分の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지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出資)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 [김]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서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완결한 후에 계산할 수 있다.

- 【순】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당시 조합의 재산상태에 따라야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한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일] 第683條 已ムコトヲ得サル事由アルトキハ各組合員ハ組合ノ解散ヲ請求スルコトヲ得

[류]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또는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일] 第685條 ①組合カ解散シタルトキハ清算ハ總組合員共同ニテ又ハ其選任シタル者ニ於テ之ヲ爲ス

②清算人ノ選任ハ總組合員ノ過半數ヲ以テ之ヲ決ス

[류] 제721조 (清算人) ①조합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의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사람이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제1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김] 제721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 사무를 집행하거나 그들이 선임한 사람이 청산 사무를 집행한다.

②앞항의 청산인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순】 제721조 [청산인(清算人)] ①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 청산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사람이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제1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686條 清算人數人アルトキハ第670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687條 組合契約ヲ以テ組合員中ヨリ清算人ヲ選任シタルトキハ第672條ノ規定ヲ準用ス

[류]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辭任,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 중에서 청산인을 정하였을 때(또는 ‘정한 경우’)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과 해임] 조합원 ∨ 중에서 청산인을 정하였을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일] 第688條 ①清算人ノ職務及ヒ權限ニ付テハ第78條ノ規定ヲ準用ス

②殘余財産ハ各組合員ノ出資ノ額ニ應シテ之ヲ分割ス

[류]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남은 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김]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 ∨ 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 ∨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 ∨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순】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제14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689條 終身定期金契約ハ当事者ノ一方カ自己、相手方又ハ第三者ノ死亡ニ至ルマテ定期ニ金錢其他ノ物ヲ相手方又ハ第三者ニ給付スル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725조 (終身定期金契約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終身)까지 정기로 금전 그밖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終身)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정기로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725조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자기·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일] 第690條 終身定期金ハ日割ヲ以テ之ヲ計算ス

[류]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日數)로 계산한다.

[김]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日數)로 계산한다.

[순]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日數)로 계산한다.

[해] ‘日數’는 ‘날짜’ 혹은 ‘날짜 수’ 및 ‘날 수’로 순화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 第691條 ①定期金債務者カ定期金ノ元本ヲ受ケタル場合ニ於テ其定期金ノ給付ヲ怠リ又ハ其他ノ義務ヲ履行セサルトキハ相手方ハ元本ノ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但既ニ受取リタル定期金ノ中ヨリ其元本ノ利息ヲ控除シタル殘額ヲ債務者ニ返還スルコトヲ要ス

②前項ノ規定ハ損害賠償ノ請求ヲ妨ケス

[류]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금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기금∨채권자가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금의 이자를 뺀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앞항의 규정은 손해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금을 받은 경우,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정기금채권자는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원금의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692條 第533條ノ規定ハ前條ノ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727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728조 【해제와 동시 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앞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727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 第693條 ①死亡カ定期金債務者ノ責ニ歸スヘキ事由ニ因リテ生シタルトキハ裁判所ハ債權者又ハ其相續人ノ請求ニ因リ相当ノ期間債權ノ存續スルコトヲ宣告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規定ハ第691條ニ定メタル權利ノ行使ヲ妨ケス

[류]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적당한 기간동안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 제729조 【채무자 $\vee$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사망과 채권 $\vee$ 존속 $\vee$ 선고】

①제725조에 따라 종신 $\vee$ 정기금의 지급이 끝나는 시기를 정기금 채무자, 정기금 채권자, 제3자 중 한 명의 사망 시점까지로 정하였을 때, 계약에 명시된 해당자의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에 법원은 정기금 $\vee$ 채권자나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그에 적절한 기간 동안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앞항의 경우에도 정기금 채권자나 그 상속인은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순]** 제729조 [채무자 $\vee$ 책임사유에 따른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인 경우에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적당한 기간 동안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정기금 채권자나 그 상속인은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일] 第694條 本節ノ規定ハ終身定期金ノ遺贈ニ之ヲ準用ス

[류]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이 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된다.

[김] 제730조 【유증에 따른 종신 $\vee$ 정기금】 이 절의 규정은 유증에 따른 종신 $\vee$ 정기금 $\vee$ 채권에 준용한다.

**[순]** 제730조 [유증(遺贈)에 따른 종신정기금] 이 절의 규정은 유증에 따른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 제15절 화해(和解)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 第695條 和解ハ当事者カ互ニ讓歩ヲ爲シテ其間ニ存スル爭ヲ止ムルコトヲ約スルニ因リテ其効力ヲ生ス

[류]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김]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vee$ 양보하여 당사자 $\vee$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순]**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 ‘終止’는 ‘끝냄’ 혹은 ‘종료’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일] 第696條 当事者ノ一方カ和解ニ依リテ爭ノ目的タル權利ヲ有スルモノト認メラレ又ハ相手方カ之ヲ有セサルモノト認メラレタル場合ニ於テ其者カ從來此權利ヲ有セサリシ確証又ハ相手方カ之ヲ有セシ確証出テタルトキハ其權利ハ和解ニ因リテ其者ニ移轉シ又ハ消滅シタルモノトス

**[류]** 제732조 (화해의創設的效力)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김]**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 효력】** 화해 ∨ 계약에서는 당사자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순]**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創設的) ∨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해]** ‘創設’은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없음

**[류]**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화해의 대상인 분쟁 자체에 관한 것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 3 장 사무관리(事務管理)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일] 第697條 ①義務ナクシテ他人ノ爲メニ事務ノ管理ヲ始メタル者ハ其事務ノ性質ニ從ヒ最モ本人ノ利益ニ適スヘキ方法ニ依リテ其管理ヲ爲スコトヲ要ス

②管理者カ本人ノ意思ヲ知リタルトキ又ハ之ヲ推知スルコトヲ得ヘキトキハ其意思ニ從ヒテ管理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김] 제734조 【사무 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또는 ‘-을 좇아’) 타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또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제1항의 사무 관리자에게 사무를 맡긴 타인을 가리킴)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순】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일] 第698條 管理者カ本人ノ身体、名譽又ハ財産ニ對スル急迫ノ危害ヲ免レシムル爲メニ其事務ノ管理ヲ爲シタルトキハ惡意又ハ重大ナル過失アルニ非サレハ之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ヲ賠償スル責ニ任セス

[류]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김] 제735조 【긴급∨사무 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매우 위험한 사정을 피하도록 그 사무를 관리하였을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순】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신체·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매우 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였을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 ‘위해’는 ‘위험’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이라 생각됨.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699條 管理者ハ其管理ヲ始メタルコトヲ遲滯ナク本人ニ通知スルコトヲ要ス 但本人カ既ニ之ヲ知レ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바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700條 管理者ハ本人、其相續人又ハ法定代理人カ管理ヲ爲スコトヲ得ルニ至ルマテ其管理ヲ繼續スルコトヲ要ス但其管理ノ繼續カ本人ノ意思ニ反シ又ハ本人ノ爲メニ不利ナルコト明カナ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검】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거나(또는 ‘-를 거스르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일] 第701條 第645條乃至第647條ノ規定ハ事務管理ニ之ヲ準用ス

**【류】 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된다.

[김] 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순】 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 第702條 ① 管理者カ本人ノ爲メニ有益ナル費用ヲ出タルトキハ本人ニ對シテ其償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  
② 管理者カ本人ノ爲メニ有益ナル債務ヲ負擔シタルトキハ第650條第2項ノ規定ヲ準用ス  
③ 管理者カ本人ノ意思ニ反シテ管理ヲ爲シタルトキハ本人カ現ニ利益ヲ受クル限度ニ於テノミ前2項ノ規定ヲ適用ス

[류]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또는 ‘-를 거슬러’) 관리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제688조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740조 (관리자의 無過失損害報償請求權)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 ∨ 손해 ∨ 보상 ∨ 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하면서 과실 ∨ 없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순】**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 ∨ 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하면서 과실 ∨ 없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남아있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4 장 부당이득(不當利得)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 第703條 律上ノ原因ナクシテ他人ノ財産又ハ勞務ニ因リ利益ヲ受ケ  
之カ爲メニ他人ニ損失ヲ及ホシタル者ハ其利益ノ存スル限度ニ於テ之ヲ  
返還スル義務ヲ負フ

[류]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김] 제741조 【부당 $\vee$ 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vee$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또는 ‘끼친’) 사  
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순】 제741조 [부당이득(不當利得)의 내용] 법률상 원인 $\vee$ 없이 다른 사  
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第705條 債務ノ弁済トシテ給付ヲ爲シタル者カ其當時債務ノ存在セサ  
ルコトヲ知リタルトキハ其給付シタルモノノ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

[류] 제742조 (非債辨濟)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  
구하지 못한다.

[김] 제742조 【채무 없이 한 변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제  
하였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742조 [비채변제(非債辨濟)]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하였을 때  
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 ‘非債辨濟’는 ‘채무 없는 변제’ 혹은 ‘無債辨濟’로 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 第706條 債務者カ弁濟期ニ在ラサル債務ノ弁濟トシテ給付ヲ爲シタルトキハ其給付シタルモノノ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但債務者カ錯誤ニ因リテ其給付ヲ爲シタルトキハ債權者ハ之ニ因リテ得タル利益ヲ返還スルコトヲ要ス

[류] 제743조 (期限前의 변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김]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순】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 -없음

[류] 제744조 (道義觀念에 적합한 非債辨濟)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김] 제744조 【도의∨관념(道義觀念)에 적합한, 채무 없이 한 변제】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순】 제744조 [도리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리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 ‘도의관념’은 ‘도덕관념’ 혹은 ‘도리’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 第707條 ①債務者ニ非サル者カ錯誤ニ因リテ債務ノ弁濟ヲ爲シタル場合ニ於テ債權者カ善意ニテ證書ヲ毀滅シ、担保ヲ拋棄シ又ハ時効ニ因リテ其債權ヲ失ヒタルトキハ弁濟者ハ返還ノ請求ヲ爲スコトヲ得ス

②前項ノ規定ハ弁濟者ヨリ債務者ニ對スル求償權ノ行使ヲ妨ケス

[류] 제745조 (다른 사람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여 없었거나 담보를 포기하였거나, 시효완성으로 그 채권을 잃었을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745조 【타인의 채무 변제】 ①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금을 받고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여 없었거나 담보를 포기하였거나 소멸 시효가 완료되어 그 채권을 잃었을 때에는 변제자가 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앞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745조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 ①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없었거나, 담보를 포기하였거나, 시효로 그 채권을 잃었을 때에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708條 不法ノ原因ノ爲メ給付ヲ爲シタル者ハ其給付シタルモノノ返還ヲ請求スルコトヲ得ス但不法ノ原因カ受益者ニ付テノミ存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746조 (不法原因給與)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적인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746조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적인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 ‘불법원인급여’는 법률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일] -없음

[류] 제747조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값의 반환, 轉得者の 책임) ①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값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讓受)한 악의(惡意)의 제3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책임이 있다.

[김] 제747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와 가액 $\vee$ 반환(價額返還), 전득자(轉得者)의 책임】 ①수익자가 자기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에게서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讓受)한 약의의 제삼자는 앞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책임이 있다.

【**순**】 제747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와 가격반환 및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에게서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약의의 제3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약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 第704條 惡意ノ受益者ハ其受ケタル利益ニ利息ヲ附シテ之ヲ返還スルコトヲ要ス尙ホ損害アリタルトキハ其賠償ノ責ニ任ス

[류]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善意)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이 있다.  
②약의(惡意)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김]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 $\vee$ 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앞 $\vee$ 조의 책임이 있다.  
②약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순**】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이 남아있는 범위에서 제747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일] -없음

[류]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惡意)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善意)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訴)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惡意)의 수익자로 본다.

[김]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얻은 후 법률상 이익을 볼 원인이(또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였을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순】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얻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였을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제 5 장 불법행위(不法行爲)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 第709條 故意又ハ過失ニ因リテ他人ノ權利ヲ侵害シタル者ハ之ニ因リテ生シタル損害ヲ賠償スル責ニ任ス

[류]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 제750조 【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또는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순】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일] 第710條 他人ノ身体、自由又ハ名譽ヲ害シタル場合ト財産權ヲ害シタル場合トヲ問ハス前條ノ規定ニ依リテ損害賠償ノ責ニ任スル者ハ財産以外ノ損害ニ對シテモ其賠償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입힌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삭제>

[김] 제751조 【재산 ∨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앞항의 손해 배상을 정기금 ∨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순】 제751조 [재산 ∨ 이외의 손해배상] ①다른 사람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일] 第711條 他人ノ生命ヲ害シタル者ハ被害者ノ父母、配偶者及ヒ子ニ對シテハ其財産權ヲ害セラレサリシ場合ニ於テモ損害ノ賠償ヲ爲スコトヲ要ス

[류]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김] 제752조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상으로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순】 제752조 [생명침해에 따른 위자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일] 第712條 未成年者カ他人ニ損害ヲ加ヘタル場合ニ於テ其行爲ノ責任ヲ弁識スルニ足ルヘキ知能ヲ具ヘサリシトキハ其行爲ニ付キ賠償ノ責ニ任セス

[류]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김]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또는 ‘끼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하여 알(또는 ‘분별하여알’) 능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순】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해】** ‘변식할 지능’은 ‘판단할 능력’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713條 精神上ノ障害ニ因リ自己ノ行爲ノ責任ヲ弁識スル能力ヲ欠ク状態ニ在ル間ニ他人ニ損害ヲ加ヘタル者ハ賠償ノ責ニ任セス但故意又ハ過失ニ因リテ一時其状態ヲ招キ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754조 (心神喪失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754조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또는 ‘끼친’) 사람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754조 [정신이상자의 책임능력]** 정신이상∨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정신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일] 第714條 ①前2條ノ規定ニ依リ無能力者ニ責任ナキ場合ニ於テ之ヲ監督スヘキ法定ノ義務アル者ハ其無能力者カ第三者ニ加ヘタル損害ヲ賠償スル責ニ任ス但監督義務者カ其義務ヲ怠ラサリン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監督義務者ニ代ハリテ無能力者ヲ監督スル者モ亦前項ノ責ニ任ス

[류]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제753조 및 제7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미성년자에게 변제할 자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책임무능력자 또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사람도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이 있다.

[김]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①제753조, 제754조의 규정에 따라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무능력자가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또는 ‘않았을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도 앞항의 책임이 있다.

【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①제753조와 제754조의 규정에 따라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안: ②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미성년자에게 변제할 자금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 第715條 ①或事業ノ爲メニ他人ヲ使用スル者ハ被用者カ其事業ノ執行ニ付キ第三者ニ加ヘタル損害ヲ賠償スル責ニ任ス 但使用者カ被用者ノ選任及ヒ其事業ノ監督ニ付キ相当ノ注意ヲ爲シタルトキ又ハ相当ノ注意ヲ爲スモ損害カ生スヘカリシトキハ此限ニ在ラス

- ②使用者ニ代ハリテ事業ヲ監督スル者モ亦前項ノ責ニ任ス
- ③前2項ノ規定ハ使用者又ハ監督者ヨリ被用者ニ對スル求償權ノ行使ヲ妨ケス

[류]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다른 사람을 사용(使用)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被傭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사용자에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③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756조 【사용자(使用者)의 배상V책임】 ①타인을 시켜서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고용자가 그 사무V집행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V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었을 때 또는 적절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앞항의 책임이 있다.
- ③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고용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으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

에 적당한 주의를 하었을 때 또는 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보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第716條 注文者ハ請負人カ其仕事ニ付キ第三者ニ加ヘタル損害ヲ賠償スル責ニ任セス但注文又ハ指図ニ付キ注文者ニ過失アリ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류]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김]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순】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 第717條 ①土地ノ工作物ノ設置又ハ保存ニ瑕疵アルニ因リテ他人ニ損害ヲ生シタルトキハ其工作物ノ占有者ハ被害者ニ對シテ損害賠償ノ責ニ任ス但占有者カ損害ノ發生ヲ防止スルニ必要ナル注意ヲ爲シタルトキハ其損害ハ所有者之ヲ賠償スルコトヲ要ス

②前項ノ規定ハ竹木ノ栽植又ハ支持ニ瑕疵アル場合ニ之ヲ準用ス

③前2項ノ場合ニ於テ他ニ損害ノ原因ニ付キ其責ニ任スヘキ者アルトキハ占有者又ハ所有者ハ之ニ對シテ求償權ヲ行使スルコトヲ得

[류]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나무를 심거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제758조 【공작물 V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공작물 V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또는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앞항의 규정은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또는 ‘손해가 나게 한 사람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순] 제758조 [공작물 V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작물 V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일] 第718條 ①動物ノ占有者ハ其動物カ他人ニ加ヘタル損害ヲ賠償スル責ニ任ス但動物ノ種類及ヒ性質ニ從ヒ相当ノ注意ヲ以テ其保管ヲ爲シ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占有者ニ代ハリテ動物ヲ保管スル者モ亦前項ノ責ニ任ス

[류]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점유자에 대신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김]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적절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앞항의 책임이 있다.

[순]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공동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일] 第719條 ①數人カ共同ノ不法行爲ニ因リテ他人ニ損害ヲ加ヘタルトキハ各自連帶ニテ其賠償ノ責ニ任ス共同行爲者中ノ孰レカ其損害ヲ加ヘタルカヲ知ルコト能ハサルトキ亦同シ

②教唆者及ヒ幫助者ハ之ヲ共同行爲者ト看做ス

- [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입힌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③교사(教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은 공동행위자로 본다.

- [김]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공동으로 행동하거나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누가(또는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③불법 행위를 부추긴 사람(또는 ‘부추겨 결행하게 한 사람’)이나 도운 사람(또는 ‘거둔 사람’)은 불법 행위의 공동∨행위자로 본다.

- 【순】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입힌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③교사(教唆)나 방조(幫助)한 사람은 공동행위자로 본다.

【해】 ‘교사자’와 ‘방조자’에 대한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일] 第720條 ①他人ノ不法行爲ニ對シ自己又ハ第三者ノ權利ヲ防衛スル爲メ已ムコトヲ得シテ加害行爲ヲ爲シタル者ハ損害賠償ノ責ブ任セス但被害者ヨリ不法行爲ヲ爲シタル者ニ對スル損害賠償ノ請求ヲ妨ケス

②前項ノ規定ハ他人ノ物ヨリ生シタル急迫ノ危難ヲ避クル爲メ其物ヲ毀損シ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류]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준용된다.

[김] 제761조 【정당∨방위(正當防衛), 긴급∨피난(緊急避難)】 ①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앞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危難)을 피하여야 할 상황에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준용한다.

【순】 제761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①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매우 급한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일힌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일] 第721條 胎兒ハ損害賠償ノ請求權ニ付テハ既ニ生マレタルモノト看倣ス

[류]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김] 제762조 【손해 배상 ∨ 청구권을 가지는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또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손해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가질 상황이라면 태아에게도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순**】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일] 第722條 ①第417條ノ規定ハ不法行爲ニ因ル損害ノ賠償ニ之ヲ準用ス

②被害者ニ過失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損害賠償ノ額ヲ定ムルニ付キ之ヲ斟酌スルコトヲ得

[류]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된다.

[김] 제763조 【준용 ∨ 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 배상에 준용한다.

【**순**】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 제394조 · 제396조 ·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일] 第723條 他人ノ名譽ヲ毀損シタル者ニ對シテハ裁判所ハ被害者ノ請求ニ因リ損害賠償ニ代ヘ又ハ損害賠償ト共ニ名譽ヲ回復スルニ適當ナル處分ヲ命スルコトヲ得

[류]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분으로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법원이(또는 ‘~훼손한 사람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손해 배상을 대신하여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순】 제764조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규정]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일] -없음

[류] 제765조 (배상액의 輕減請求)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輕減)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김]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이 장의 규정에 따른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적인 것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앞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순]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이 장의 규정에 따른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가 아니고, 그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일] 第723條 不法行爲ニ因ル損害賠償ノ請求權ハ被害者又ハ其法定代理人カ損害及ヒ加害者ヲ知リタル時ヨリ3年間之ヲ行ハサルトキハ時ニ因リテ消滅ス不法行爲ノ時ヨリ20年ヲ過シタルトキ亦同シ

[류]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김] 제766조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①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도 앞항과 같다.

【**순**】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